



2015

재·보궐선거(10. 28) 공직선거 업무편람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9.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담당공무원 교육계획

□ 교육 개요

- 일 시 : '15. 9.24(목) 14:00~18:00
- 대 상 :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전산담당공무원(240명)
※ 시·도 2명, 구·시·군 2명, 읍·면·동 2명씩 참석
- 장 소 : 대전시청 대강당(3층)

□ 주요 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요령

□ 세부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록 및 안내	
14:00~14:05 (5')	◦ 국민의례	
14:05~14:55 (50')	◦ 법정선거사무처리 요령	선거의회과
14:55~15:10 (15')	◦ 휴 식	
15:10~17:10 (120')	◦ 선거인명부작성 프로그램 운용요령	오픈SNS강사
17:10~17:20 (10')	◦ 휴 식	
17:20~18:00 (40')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운용요령	팝 소프트 강사
18:00	◦ 교육종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 총 24개 선거구

구 분	사도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92)	실 시 사 유		사유 확정일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광역 의원 (9)	기초자치 단체장 (1)	경 남	고 성 군	14 (고성읍, 삼신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민면, 회화면, 미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 학 열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5. 29
	부 산	서 울	영 등 포 제 3	5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도 문 열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24
		경 기	기 장 군 제 1	1 (기장읍)	박 인 대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5. 13.
			부산진구제1	6 (부전제1동, 범전동, 연자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박 석 동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24
	인 천	광 명 시 제 1	5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이 준 희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4. 22.	
		의 정 부 제 2	3 (의정부1동, 호원1동, 호원2동)	조 남 혁 (새정치민주연합)	• 사 망 '15. 7. 28	
		의 정 부 제 3	3 (신곡1동, 신곡2동, 장암동)	김 영 민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5. 28	
	전 남	서 구 제 2	3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	구 재 용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6. 18	
		부 평 구 제 5	4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장 현 근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7. 1	
	합 평 군 제 2	6 (합평군, 학교면, 대동면, 미산면, 해보면, 월야면)	노 종 석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6. 11		
기초 의원 (14)	부 산	서 울	양 천 가	2 (목2동, 목3동)	박 태 문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24
		서 구 다	4 (아미동, 초장동, 총무동, 남부면1동)	엄 주 정 (무 소 속)	• 당선무효 '15. 5. 8.	
		해운대구다	3 (좌1동, 좌2동, 좌4동)	박 육 영 (새정치민주연합)	• 당연퇴직 '15. 5. 28.	
		사 상 구 다	2 (폐점동, 감천동)	김 경 언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15	
	인 천	남 구 다	3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김 종 환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4. 21.	
		부 평 구 나	3 (부평1동, 부평2동, 일산동)	이 도 재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15	
	울 산	중 구 나	2 (병영1동, 병영2동)	김 선 수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5	
	경 기	김 포 시 나	2 (김포동, 장기동)	권 오 준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1	
	강 원	홍 천 군 다	4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	백 금 산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4. 17.	
	충 북	증 평 군 가	1 (증평읍)	지 영 섭 (새누리당)	• 당선무효 '15. 6. 11	
	전 남	목 포 시 라	4 (목원동, 만호동, 유달동, 동명동)	김 영 수 (무 소 속)	• 사 망 '15. 4. 14.	
		신 안 군 나	3 (압해읍, 지은면, 안태면)	조 영 훈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6. 24	
	경 북	울 진 군 다	6 (평해읍, 고남면, 완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이 세 전 (무소속)	• 사 직 '15. 7. 20	
	경 남	사 천 시 라	3 (불용읍, 동서금동, 향촌동)	조 익 래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무효 '15. 5. 26	

Contents

목차



I. 공직선거법 개요

제 1 장 총 칙

1. 목적(법 § 1)	3
2. 선거인의 정의(법 § 3)	3
3. 인구의 기준(법 § 4)	3
4. 선거사무 협조(법 § 5)	4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 6)	4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 6의 2)	5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 9, 법 § 85①)	5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 10)	6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법 § 15)	7
2. 피선거권(법 § 16)	8
3. 연령산정 기준(법 § 17)	8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①)	9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 19)	15
6. 국내거소신고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절차	15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 33)	18
2. 선거일(법 § 34)	18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 35, § 197, § 203)	19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21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25
3. 국내거소신고자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방지방안	30
4.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 39)	32
5.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 37)	32
6.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34
7. 전출 · 전입자 조치(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35
8. 국외이주자 조치	35
9. 선거권이 회복된 자의 처리	36
10.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의 처리	36
11.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37
12. 명부의 효력	37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 거소투표신고 기간 · 방법 · 내용 · 대상(법 § 38, 규칙 § 11)	38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43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44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44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46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47

제 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누락자 구제

1. 명부 열람(법 § 40, 규칙 § 13)	54
2. 이의신청과 결정(법 § 41, 규칙 § 13)	56
3. 불복신청과 결정(법 § 42)	56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 43, 규칙 § 15)	57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 14)	59
2.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 44, 규칙 § 16)	61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 45, 규칙 § 17)	65
2.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 46, 규칙 § 18)	66
3. 세대주명단 작성 · 교부(법 § 60조의3, § 111)	69

제 9 장 투 표

1. 선거방법(법 § 146)	72
2. 투표소의 설치(법 § 147, § 148)	72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 147⑨)	73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 153)	74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 154)	74
6. 투표시간(법 § 155)	75
7. 투표의 제한(법 § 156)	75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 157, 규칙 § 82②)	76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 158, § 158의2)	77
10. 투표참관(법 § 161, § 213)	78
11. 사전투표참관(법 § 162, § 213)	79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79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166)	79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	80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 · 봉인(법 § 168, § 169)	81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 171)	81

제 10 장 개 표

1. 개표관리(법 § 172)	82
2. 개표소(법 § 173)	82
3. 개표사무원(법 § 174)	82
4. 투표함의 개함(법 § 177)	83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83

II.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1. 선거업무 처리 절차	87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88
3. 주민오류자료 조회	88
4. 외국인선거인 등록	92
5.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97
6. 선거인파일 작성	100
7.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116
8. 선거인명부 출력	118
9. 참조	121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122
1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126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128
1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130
14.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132
15. 선관위용파일작성	133
16. 후보자용파일작성	134
17. 이중등재자 조회	135
18. 선거인명부열람	136

19. 동시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141
20.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143
21. 우편발송물주소조회	145
22. 투표안내문	148
23. 주의사항	149
24. 참고사항	149

III. 결격사유조회시스템

1.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154
2. 선거권없는 자 관리	154
3. 주요 확인사항	160

IV.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1. '14.1.17 주요 개정사항	169
2. '14.2.13 주요 개정사항	170
3. '14.5.14 주요 개정사항	173
4. '15.8.13 주요 개정사항	173

V. 주요 선거사무 일정

-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 사무 일정 179
-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세부 일정 181

I

공직선거법 개요





제1장 총 칙

1. 목적(법 § 1)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위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

2. 선거인의 정의(법 § 3)

-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3. 인구의 기준(법 § 4)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함
-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규칙 §2①, §118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법 제60조의2)

- 시·도지사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15.6.30)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15.7.17)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15.8.16)
- ※ 상기 사항 모두 기준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구·시·군의 장은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규칙 §2②)
 - 인구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함



[별지 제1호 서식] (규칙 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09.2.19>

인구수 등 통보서

(년 월 일 현재)

읍·면·동명	투표구명	인구수	세대수	19세 이상의 주민수	비고

- 주 : 1. 하나의 구·시·군안에 2 이상의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가 2이상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 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명”란 앞에 시·도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 의원선거구 순으로 “선거구명”란을 마련하고 선거구별로 각각 “소계”란을 둈다.
2. 하나의 읍·면·동안에 2개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가 있거나 2이상의 투표구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명별 또는 선거구별로 “소계”란을 둔다.
3. “인구수·세대수·19세 이상의 주민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4. 선거사무 협조(법 § 5)

-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5.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 6)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함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 §2 10의2호)
 - 「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함
- ☞ 「근로기준법」(법 §10, §110)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법 §10 공민권행사의 보장)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110 벌칙)

-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촉진대책 수립·시행 가능(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 교통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 제공
-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6.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법 § 6의 2)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
(2014.2.13. 신설)
-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261③)

7.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법 § 9, 법 § 85①)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검사(군검찰관 포함)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포함)은 「법」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14.2.13 신설)



8.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법 § 10)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가능함
 -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손·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법 § 15)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 19세 이상의 국민(외국인 제외)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은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법 §37①)

- 대통령 :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 선거일 전 22일
 -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함(법 §202②)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996년 10월 29일 이전 출생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거주자, 거주 불명자,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15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의 경우 : 2015.7.7.까지 등재)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2012.10.5.까지 취득한 자)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2. 피선거권(법 § 16)

○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

☞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 변경(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 포함)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봄

3. 연령산정 기준(법 § 17)

○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함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함(「민법」 §158 연령의 기산점)



4.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 ①)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②중에서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분은 위헌판결(14.1.28)로 투표 가능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의 해석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금치산자

- 대상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용어 정리

- **금치산(禁治產)** 선고를 받은 자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함
 - ☞ '13.7.1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 개정 민법 시행('13.7.1)전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에서 인용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성년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봄
 - ※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10조).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선거권 없음



개정민법('13.7.1시행)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지자 또는 한정지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지자 또는 한정지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지자 또는 한정지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지자” 또는 “한정지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일반범죄

-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②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의 의미
☞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함

* 용어 정리

-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물수를 규정하고 있음
- **금고란**, 자유형(自由刑, 개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으로서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름



-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 ☞ ①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자, ② 가석방 중인 자가 이에 해당

* 용어 정리

- **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형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수용 중인 자를 말함
cf) 수형자가 아닌 미결 구금자는 선거권이 있음
 - * **미결구금자**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함
- **가석방**이란, 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중 교도소 안의 규칙을 잘 따르고 죄를 뉘우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죄수들 중에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를 말함.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형법」제76조제1항) 가석방 중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이 없음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 ① 집행유예 중이거나, ②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거나,
③ 형 집행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
- 이 중에서 집행유예자들은 투표 가능

* 용어 정리

- ☞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의 형을 선고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후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형법」제62조)
cf)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형법」제59조)
- ☞ **형의 시효의 완성이**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함. 즉,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형법」제77조, 제78조)
- ☞ **기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로**,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형법 제1조제3항)
 -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의 경우(「사면법」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선거범 등

- 대상 : 일정 선거관련 범죄의 전과자(선거범과 「정치자금법」·「형법」·「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용어 정리

- ☞ **형이 확정되는 시기**는, 재판이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함
- 대법원 판결과 같이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의 경우, ② 상소기간 등의 도과(선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상소하지 않거나), ④ 불복신청의 포기·취하, ⑤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등에 의해 확정됨

-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함

- ③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 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자

- ⑥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⑦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형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일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면 실효된 형에 따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이 실효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선거권이 제한됨



* 용어 정리

- **형의 실효와 복권**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전과사실로 인해 여러 자격제한이나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과사실을 말소시키고 자격을 회복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이 두고 있는 제도임
-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 다만,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됨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3. 벌금은 2년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법원의 판결,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

- 대상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상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선거권 정지) ③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말함

* 「형 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 「형 법」

[단순위헌, 2012헌마409 · 510, 2013헌마167(병합), 2014.1.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2012헌마409 · 510, 2013헌마167(병합), 2014.1.28.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44조 (자격정지)

-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의미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 「치료감호법」

제47조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 치료감호는 형벌은 아니지만, 범죄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보안처분으로써 「형법」제1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하는 보안처분을 말함



5.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 19)

-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회의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3.12.30.)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신설 2014.2.13.>

6. 국내거소신고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절차

〈 제외 절차 개요 〉



- ① 선거지역(국내거소신고자) : 선거권이 없는 자(법 § 18① 1·2·3·4호 해당자) 제외
-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자의 등록기준지별로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요청(①)
 - 등록기준지 · 행정자치부 통보를 근거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소신고자의 경우 거소신고지와 최종 주민등록지가 동일 하다면 거소신고지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



[2] 등록기준지* : 법 § 18① 1·2·3·4호에 해당하는 자 조사

- 등록기준지는 선거권 없는 자 조사 결과를 거소신고지에 통보(②)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역.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되었으며 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해

[3] 행정자치부 : 법 §18① 3호 해당자 조사(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해당)

- 행정자치부는 대검찰청에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요청(가)
○ 대검찰청에서 받은 명단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거소신고지에 통보(다)

< 단계별 지자체 업무처리 방법 >

■ 1단계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거소신고지에서는 등록기준지(구·시·읍·면)별로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요청(9.23)
- 추가 전입자는 등록기준지에 추가 의뢰하여 확인(9.24~10.6)

■ 2단계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구·시·읍·면)는 거소신고지에서 요청받은 명단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구, 신원정보관리시스템) 대조 작업(수형인명표·금치산선고문 대조작업 병행)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9.24~10.6)
 - 대부분의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은 ‘결격사유조회시스템(구, 신원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가능
 - 주민번호가 없는 자는 ‘결격사유조회시스템(구, 신원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형인명표·금치산선고문을 대조 확인
- 등록기준지는 조사한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을 해당 거소신고지로 통보(9.24~10.6)

■ 3단계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거소신고지는 등록기준지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 통보(~10.6)
- 읍·면·동에서는 명부작성기준일에 명부가 자동 생성되도록 조치(10.6)



참 고

일정별 주요 조치할 사항

일 정	추진 기관	조 치 사 항
9.23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거소신고자 명단 추출, 등록기준지별로 분류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별로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요청
9.24~10.6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등록기준지	· 추가 전입자에 대해 선거권 없는 자 조사 요청
9.24~10.6	· 등록기준지	· 선거권이 없는 자 조사
~10.5	· 등록기준지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선거권 없는 자 조사결과 등 통보
9.25~10.6	· 행정자치부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18①3호 해당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통보(시스템)
10.6	· 선거지역(거소신고지)	·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부 작성프로그램에 입력
10.6	· 선거지역(읍면동)	· 선거인명부 작성



제 3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 33)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 : 23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 : 14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5(목) ~10.28(수), 14일

○ 선거운동기간(법 §59)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5(목) ~ 10.27(화), 13일

2. 선거일(법 § 34)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대통령 선거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함

☞ 「선거일 전 3일」과 「선거일 3일 전」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28)의 경우

- 선거일 전 3일 :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일에 해당하는 일(10.25)
- 선거일 3일 전 :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일에 해당하는 일의 전일(10.24)



3.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법 § 35, § 197, § 203)

선 거 별	선거실시기한	공 고 권 자	공 고 기 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 재선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	선거일전 50일까지
지역구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실시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에 실시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			
•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폐지 ·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야 함	선거일전 30일까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

* 개정('15.8.13)된 공선법 시행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종전의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여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28) 실시 대상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 날
- 1월 1일
- 설날 전 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 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법 §35 ⑤)

-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법 제195조(재선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봄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법 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연기된 선거는 법 제196조(선거의 연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 재투표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 4 장 선거인명부 작성

1. 명부 관련 용어의 운용기준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를 미리 정확하게 가려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구·시·군의 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직권으로 작성하는 공부를 말함(법 §37)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여 거소 투표신고한 자를 등재한 공부를 말함(법 §38)
- “국민”이라 함은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중 국적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되고, 해외영주권 취득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 있으면 국민에 해당됨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란 사실상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임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및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됨

-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및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일시”는 해당일의 24시를 기준으로 함
-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대상자”는 구·시·군의 장이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함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란 영내기거를 의무로 하는 자와 영외 거주가 허용된 장병도 포함하는 사실상 영내에 거주하는 장병을 지칭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휠체어에 의하여 거동하는 자도 포함함
- “외딴 섬”이란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없는 섬을 지칭함
- “거소투표신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단위기관·시설의 장을 말함
 - 군부대 : 직인을 가지고 있는 중대장 이상의 부대의 장

☞ 다만, 직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본대로부터 독립되어 설치된 부대의 장을 포함함

- 경찰관서 : 지구대 이상의 경찰관서의 장
- 병원·요양소 : 그 시설의 장
- 신체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자 : 거소지 또는 주소지의 통·리·반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없이 거소신고 가능)
- “관계인”이라 함은 신청인과 선거인이 다른 경우 당해 선거인을 말함
-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거인명부 등의 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을 뜻함
- “전산자료 복사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를 디스켓에 복사한 것을 말함
- “위장전입자”라 함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제외함)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혀위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함



거주불명 등록제도

□ 제도 개요

○ 도입이유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보장 기반조성 필요

○ 처리요령 : 주민신고 또는 직권조치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관련 Q&A

1. 「거주불명 등록제」란?

-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2.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 임시주소로 주민등록되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불명 등록자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말소자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거주불명 등록되었더라도 「주민등록자」에 해당하므로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느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설정하는지?

-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가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했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합니다.
- 신고된 최종 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공고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정정으로 처리) 합니다.



4. 신청에 의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른 읍·면·동 주소로 이관할 수 있는지?

- 마지막 주소지인 행정상 관리주소에서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로 주소를 이전할 수는 있으나, 다른 행정구역으로 주소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주소 이관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부칙 제2조의 재등록은 이전신청을 의미

5.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건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해당주소의 재산권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말소자가 1년 경과기간 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주소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상 관리주소의 이전이 아닙니다.

6. 거주불명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주소를 갖지 못해 누릴 수 없었던 선거권,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기본권 관련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7.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로 말소제도는 폐지되는지?

- 거주불명 등록제는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사망말소, 이중등록말소, 국적상실말소 등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8.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대신 거주불명 등록하면 주민등록법상 「공법상주소」와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부여되는 「행정상 관리주소」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주소에 불과하고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상 관리주소가 공법상 주소가 아니므로 '공시송달'이 가능하는 등 기본권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말소와 동일합니다.

9. 주민등록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도입되면 장기로 거주불명 등록하여 적용할 우려는 없는지?

- 거주불명 등록제는 기본권보장 이외에는 기존 말소제도와 동일하므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이 표시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악용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선거인명부 작성(법 § 37)

○ 작성권자

-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선거일 전 22일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 (화) ~ 10.10(토)

○ 등재대상자

- 선거일 전 22일 현재 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

☞ '09.10.2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작성방법(법 §37, 규칙 §10)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포함)를 투표구별로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
-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 사항 기재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가능
- 투표구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선거권자를 각각 구분·작성

☞ 주민등록자 → 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 선거권자

* '15.1.22부터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나 선거인 명부 등재순서는 현행 유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추진개요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우리나라 경제력이 높아지고 재외국민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불편해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을 위하여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법령을 개정함('15.1.22 시행)

-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 가능
-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 작성단위 : 투표구별 2통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0.6) 1통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마감일(10.10) 2통(열람용 1통, 구시군 선관위 송부 1통)

☞ 거소투표신고인 정보를 반영하여 출력

- 명부송부(법 §37, 규칙 §10)

- 구·시·군의 장은 작성 후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1통과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송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1(일)

벌 칙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①)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②)



[별지 제2호서식의(가)] <개정 2014.1.17>

명부의 표지(규칙 제10조제2항 · 제11조제4항 · 제120조제1항관련)

년 월 일 실시 ○○선거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정 : 년 월 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제○투표구분(○책중○권)

○○구·시·군의 장 [인]

※ 1권인 투표구 : 1책 중 1권

2권으로 분철된 투표구 : 2책 중 1권 또는 2책 중 2권



[별지 제2호서식의(나)] (선거인명부)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등재번호 ①	주 소 ②	세대주 ③	성 별 ④	생년월일 ⑤	성 명 ⑥	투표용지수령인⑦		비 고 ⑧
						(가)	(나)	

주 :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구역안의 주소의 건물번호순 또는 통·리·반 또는 선거인의 성명의 가·나·다순이나 생년월일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②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는다.
-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 ④ 성명란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⑤ 투표용지수령인란 중 “(가)”란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하며(동시선거를 포함한다), “(나)”란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
- ⑥ 비고란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구·시·군의 장은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 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외국인선거권자는 “외국인”으로 적는다.
 - 다.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에 오른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표시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나.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팔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 라.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제하고, 오기의 발견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줄로 삭제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 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 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재외선거인명부등재자·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등재자·오기된 자를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다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이하 “사.”에서 같다.
 - 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소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시 윗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체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쪽의 대체부분에 구·시·군의 장의 직인을 날인 한다.
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 순으로 빈 줄 등을 두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을 적는다. 다만, 동시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의(라)] (규칙 제10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 ○ 구·시·군의 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 ○ 장소와 ○ ○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 ○ 구·시·군의 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 ○ 구·시·군의 장 [인]

주 : 1.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1)항 및 (3)항의 예에 따라 기재한다.

2. (3)항은 명부의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시 끝부분에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가)] (규칙 제10조제6항 관련) 〈개정 2011.11.3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비율(%)	세대수	비고
		남	여	계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인구수·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세대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국내거소신고자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방지방안

○ 배경

-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가 선거권 부여를 위한 기준 공부가 되었음('09.2.12)
- 일부 국내거소신고자와 국민은 주민등록표와 국내거소신고표에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선거인명부 이중등재가 우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경우

- ❖ 일반여권을 가진 영주권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 자치단체가 외교부, 법무부로부터 국외이주자 통보를 받았으나 주민등록시스템에서 해당자에 대해 말소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국외이주자 주민등록자료 일제정비 기실시('15년, 대상 1,505건 정비)
- ❖ 국내거소신고자의 영주귀국 시 국내거소신고정보 정리 불이행 (국내거소신고증 미반납, 영주귀국 증명서류 미제출 등)상태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등

○ 이중등재 방지방안

【기본 원칙】

- '15.1.22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의해 기존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

【사례별 방지 방안】

- 국내거소신고자 중 '해외이주포기신고 후 주민등록한 자'
 - 주민등록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
- 국내거소신고자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말소 이력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이력이 모두 없는 자
 - 해외이주말소 이력 또는 주민등록 재등록 이력만 있는 자
 -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재등록한 자
 - 해외이주신고를 취소한 자



○ 세부 절차

【선거인명부 작성 전】

- 법무부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을 기준(9.26)하여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전체명단 및 최근 3개월간 거소변동이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공(9.29)
- 행정자치부는 선거시스템으로 이중등재 가능성이 있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을 추출하여 선거지역 등에 제공(9.29~10.2)
- 선거지역에서는 선거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중등재 가능자에 대한 조사·확인을 통해 이중등재 방지(10.2~10.6)

【선거인명부 작성 후】

- 법무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까지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전체명단 및 최근 3개월간 거소변동이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공(10.8)
- 행정자치부는 선거시스템으로 이중등재 가능성이 있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을 추출하여 선거지역 등에 제공(10.8~10.10)
- 선거지역에서는 선거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이중등재 가능자에 대한 조사·확인을 통해 선거일까지 선거인명부 이중등재 방지(10.8~10.28)

○ 주의 및 협조 사항

【선거인명부 작성 전】

- 국내거소신고표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추가 조사된 경우
 - 명부작성기준일 전까지 법무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국내거소신고표에 입력되도록 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에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중 해외이주 포기 후 주민등록한 자, 국적상실자, 사망자 등을 발견한 경우
 - 명부작성기준일 전까지 법무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해당자의 국내거소신고표가 정리되도록 조치

【선거인명부 작성 후】

- 선거인명부 작성 후 이중등재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 하여 정정



- 정정시, 국내거소신고지와 주민등록기간의 계속적인 긴밀한 확인을 통해 명부 정정에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정정시, 신청인 및 관계인(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거소신고지 등)과 관할선관위 등에 통지
 - 이중등재 방지를 위해 명부에서 제외되는 선거인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및 투표구 확인 등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대한 안내

4.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등(법 § 39)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 임면권자 : 구·시·군의 장
- 임면통보 : 임면권자가 자체 없이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임면 연월일 등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통보
- 해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명부작성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직근 상급선관위와 협의하여 해임

○ 선거인명부작성 감독

- 선거인명부작성의 감독 :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읍·면·동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 공무원 교체 요구 : 관할 구·시·군선관위 및 직근 상급선관위
 - 명부작성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구·시·군 선관위 및 읍·면·동 선관위의 지시·명령·시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 명부작성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5. 선거인명부작성의 전산처리(법 § 37)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사전준비

- 단말기 및 프린터 일제점검 실시



- 주민전산 입력자료 중 행정구역 및 명칭 변경시 사전 정비 입력
- 투표구별 명부작성시 선거인 파일은 통/반을 선택 입력하여 작성
- 예비선거인명부 출력 및 확인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1(목) 18:30 이후 예정

- 예비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이전에 1부를 출력하여 전산처리 상태 등을 사전 확인
- 예비선거인명부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할 것

○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전·출입자 등 모든 변동사항을 수정·입력
- 변동사항 수정·입력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과 후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을 작성(익일 작성 불가)

☞ 선거인명부 파일 작성

❖ 작성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 현재 법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실시 지역은 해당 외국인* 포함)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등재자 : 19세 이상 거주자(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주민등록거주자, 거주불명등록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 제외자 : 19세 미만자, 말소자, 이민출국·해외이주말소자, 국적상실자, 법 제18조 해당자

❖ 작성시기 : 선거일 전 22일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18:30 이후

- 선거인명부 전산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명부를 기간 내 출력 완료

☞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해당 외국인(지방선거) 순으로 작성

유의사항

- ❖ 출력된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선거권자, 선거권이 회복된 자에 한하여 추가등재 가능
 - *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누락된 군인 등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거소투표신고를 할 경우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미등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선거인명부 전산작성 시 유의사항

- 세대주가 선거권이 없어 당해 세대원 또는 동거인이 타 세대원으로 혼돈되는 것을 방지

☞ 세대원 중 먼저 등재된 선거권자의 세대주란에 “세”자 명기

- 명부 출력 중에 프린터의 장애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

☞ 중단된 페이지의 등재번호부터 출력 가능

6. 선거인명부의 수기 작성

○ 수기 작성 판단 및 사전 준비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전산 출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시·군은 수기로 작성
- 투표구 단위로 명부작성 담당자의 지정 등 사전준비 철저

○ 수기 작성시 유의사항

- 선거인명부의 등재누락 방지

-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표·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누락여부 확인 철저

- 관내 특수시설(기숙사, 병원, 학숙소,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주민등록표 등과 작성된 명부의 대조·확인 철저

-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파악 기재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리의 장과 그 통·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

-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외국인 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



7. 전출 · 전입자 조치(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국내체류 외국인도 이를 준용함)

○ 전입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선거인명부도 신거주지에서 등재되어야 함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이 명부작성기준일에 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음
- 전출지 읍·면·동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등재된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절차 등에 따라 수정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 전입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관리하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중 등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8. 국외이주자 조치

- 이민을 위한 국외이주 신고자가 국외로 출국한 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행정자치부 경유)한 이민출국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 처리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현지이주자는 일시적인 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갔다가 현지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외교부(재외공관장 등)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 외교부(재외공관장 등)에서 통보(행정자치부 경유)한 현지이주자 통보서가 읍·면·동에 접수되면 그 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외국민 등록처리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9. 선거권이 회복된자의 처리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된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권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선거권이 회복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는 이를 즉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에는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규정의 처리 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10.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자의 처리

- 주민등록말소자는 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그 이전에 재등록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되어야 선거인명부에 등재 가능하고, 명부작성기준일이 지난 후 재등록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되어 당연히 선거권이 부여되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10.6)에 말소된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할 수 없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 명백한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자가 그 말소행위가 원인 무효되어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때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이 직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 중에 발견된 때에는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규정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발견된 때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함



11.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처리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한 날이 선거주지의 전입일이므로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
- 그러나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국외거소투표신고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혀위의 신고를 한 자 등 소위 위장 전입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247)
- 따라서, 선거인명부작성 후에도 신규전입자의 거주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위장 전입자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 필요

참 고 사 항

- ❖ 사위등재, 위장전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47①)
- ❖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가목)

12. 명부의 효력

- 형식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부(公簿)임
-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수시명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거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창설하는 효력(형성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면 투표를 할 수 없음
(법 §156)
(다만, 법 제41조·제42조·제43조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지참하면 투표 가능)
ex)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후라도 국적상실 되면 투표할 수 없음



제 5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 거소투표신고 기간 · 방법 · 내용 · 대상(법 §38, 규칙 §11)

-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 10.10(토) 18시까지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및 읍·면·동에 신고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

☞ 등기우편(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부담) 또는 인편신고 가능, 구두신고는 불가

- 신고내용 : 거소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고 '거소'란에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실제 거소지'를 적음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 필요
-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 다만, 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④ 단서)

- ③-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자 거소투표신고 관련

☞ 구·시·군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9.26(토)까지

※ 안내문은 거소투표신고서의 빙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

☞ 등록장애인중 거동불능자 판정기준(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지체 (하지, 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평형)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2급 이상	3급 이상	2급 이상	5급 이상	4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이상	2급	2급	2급 이상	2급 이상	1급	

※ 위 “기준표”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도 거소투표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할 수 있음

④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회도·하우도·
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
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⑤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지정 · 공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9.26(토)까지

⑥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확인을 요하지 않음

○ 등기우편요금

-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부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별지 제3호서식의(가)] (규칙 제11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거 소 투 표 신 고 서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고사유란의 해당 사유에 ○표를 하고, 1·2·3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소투표 신고사유	확인자	확인란
1.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부대장· 경찰관서장	· 장의 직명(성명) ①
2.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 교도소·구치소의 장	· 장의 직명(성명) ①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	· 장의 직명(성명) ①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6.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인 _____ 년 월 일
①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
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 병원·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과 거소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 등에 사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세입자는 “○○○택”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
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7. 이 서식은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라)] (규칙 제11조제2항 관련)〈개정 2014.1.17〉

거 소 투 표 신 고 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용)

귀하께서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년 월 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일(년 월 일) 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주민등록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거 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본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①

_____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 1. 이 서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2.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3.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그 기관·시설 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머무는 곳의 상세주소와 참고항목까지 (세입자는 “○ ○ ○ 택”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 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15.10.28.(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5.10.6. ~ 10.10.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 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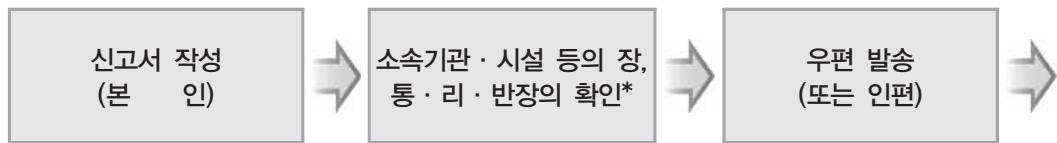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자택· 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⑥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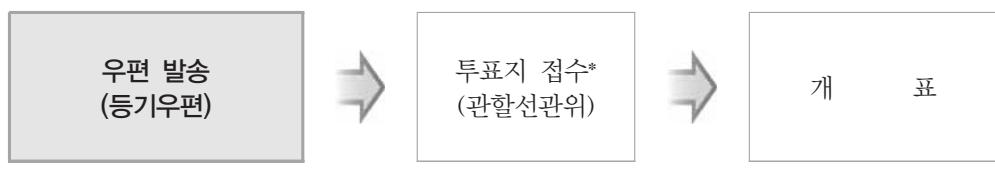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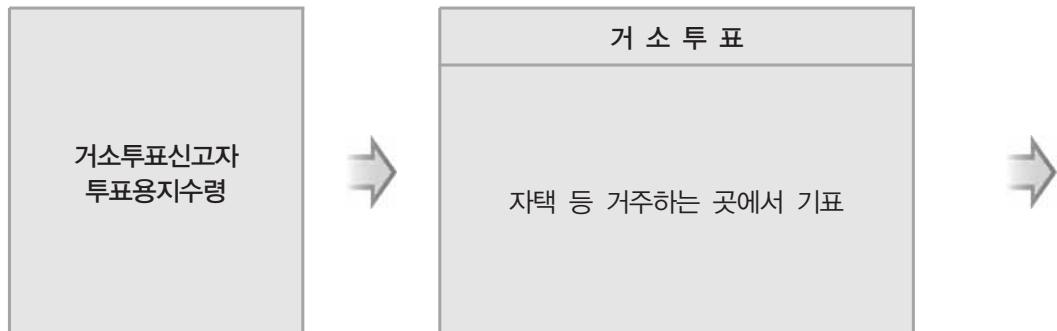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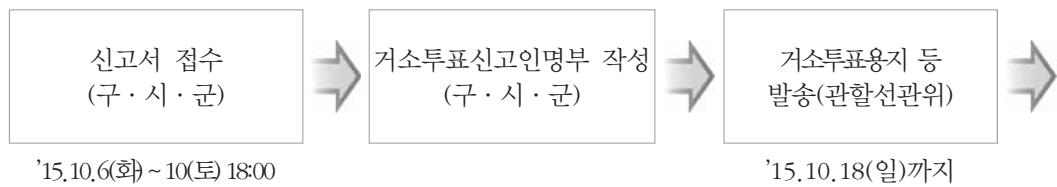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5년 10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5년 10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 소속기관·시설의 장, 통·리·반장의 확인 : 등록장애인 중 거동불능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으며, 사전에 거동불능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장애인도 거동 불능 사유가 생긴 때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 선거일(10.28) 20:00까지



3. 거소투표신고서 교부

○ 거소투표신고서 교부시 안내 철저

-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주소·거소·성명의 기재요령과 거소란에는 반드시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

☞ 가급적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되,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 통·리·반·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호수 등 상세 주소까지 적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는 '15.10.10(토) 18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에 도착되도록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안내

○ 거소투표신고서 대량 수요처 사전점검

- 거소투표신고서는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지 말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많은 지역 또는 시설(병원, 요양소 등)을 사전에 파악, 과부족이 없도록 차등 배부

○ 거소투표신고서의 민원창구 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민원창구에는 반드시 변경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신고개시일 7일 전까지 사전에 비치하여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의 편의 도모

4.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접수기간 : 신고기간과 동일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10.10(토) 18시까지

○ 접수방법

- 우체국 또는 구·시·군의 장은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를 배달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 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경우
 -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 없이 송부
 - 이 경우 당해 구·시·군의 장은 모사전송으로 도달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하되, 거소투표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
 - 모사전송된 거소투표 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함



유의사항

- ❖ 거소투표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후에 접수되는 거소투표신고서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자체없이 송부하여야 함
- ❖ 모사 전송시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원본과 틀림없음”을 기재한 후 전송자의 사인을 날인하여 송부하고, 그 원본은 즉시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며, 모사 전송한 사본은 발송한 기관에서 당해 선거의 임기만료일까지 별도 보관

- 신고서 접수시 신고요건 미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접수부에 기재
-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란에 표시된 해당번호를 기재(요건 미비자는 사유 기재)
-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모아 두었다가 접수부에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요건 미비자는 그 사유를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의 「거소투표신고 사유(비고)」란에 기재한 후 본인에게 자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고 투표소에 직접 나와서 투표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이 지난 후 도착되는 신고서라도 수취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일단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거소투표신고사유(비고)」란에 명기하고, 신고인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불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도록 통보·안내함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5일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기재사항 누락 및 요건 미비자로 처리되어 통보되었을 경우 재작성 신고할 기간이 없으므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작성방법을 사전 주지시키기 바람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자가 본인인지 의사, 필체 등을 통해 허위·대리 거소투표신고 여부 철저 확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 구·시·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규칙 §11④ 단서)

☞ 거소투표신고서 여백에 그 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 법령에 따라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부대장의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확인자의 직위가 중대장, 대대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아닌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봄
- 거소투표신고서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본인임을 구·시·군의 장이 확인한 때에는 보완등재 할 수 있음
- 거소투표신고 요건이 구비된 신고라면 신고서에 반드시 본인의 자필이나 우편에 의한 신고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서로 보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간이 마감된 후 신고서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반환이 불가하여 거소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관위의 의결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가 되었을지라도 지체없이 당해 선거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주민등록지(국내 거소신고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거소투표 용지 미발송·반송자 명단을 지체없이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거소투표 투표용지 미발송자와 반송자의 선거인명부 해당 『비고』란에 “미발송”, “반송”이라 기재하고 당해인이 선거일 투표시 인정 처리

5.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 거소투표신고기간 내에 철회 요구시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부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에서 삭제하여 삭제하고 각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한 후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자”라 명기된 사항을 삭제하고 그 여백에 “철회”라고 기재한 후 연월일과 구·시·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함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철회요구시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는 때에는 투표할 수 있음을 통지·안내함

[별지 제3호서식의(나)](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개정 2014.1.17>

거소 · 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

접수번호	성명	주소	거소 · 선상투표신고 사유 (비고)
접수일자	생년월일 · 성별	거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주 : 1. 이 접수부에는 거소 · 선상투표신고서의 해당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2. 신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하여 거소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비고란에 적는다.
3. “거소 · 선상투표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유란에 표시된 해당 번호 또는 내용을 적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그 거소가 병원 · 요양소인 경우에는 “2”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으로 적는다.

6.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및 확정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작성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6(화) ~10.10(토)

- 작성권자 : 구 · 시 · 군의 장

- 작성부수 : 투표구별로 2통(구 · 시 · 군용, 관할 구 · 시 · 군위원회 송부용 각 1통)



- 기재방법

-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재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자는 즉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신고인”으로 기재

○ 명부작성시 유의사항

-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는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순에 따라 작성함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순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편철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작성되면 이중등재 여부, 결격자등재 여부, 정당한 신고자의 누락 여부, 거소·성명·우편번호 오기 여부 등을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함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수정할 수 없음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사망자, 결격자로 확인된 때라도 확정된 거소투표 신고인 수를 변경 처리하지 아니함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및 송부(법 §44, 규칙 §16)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일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1(일)

- 확정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 송부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그 확정상황을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 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가 거소투표신고자인 때와 사망자, 결격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함



[별지 제2호서식의(다)](규칙 제11조제5항 관련)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등재 번호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성 명	주 소	비 고
	(거소투표) · (선상투표) 접수일시	생년월일, 성별	거소(우편번호)	

-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는다.
2. “거소”란에는 거소투표신고서의 거소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선상투표신고서는 선박의 명칭란 및 팩시밀리 번호란에 적혀 있는 내용을 적는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비고란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 선거권자”로 적는다.
4.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과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주3.에 따라 적은 내용 아래에 팔호를 하여 그 안에 적는다.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 잘못 적힌 사람에 대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는다.
6.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의 순서는 선거인명부등재번호순에 따른다.
7. 그 밖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방법은 선거인명부 작성방법에 준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접수·처리 등의 잘못된 사례에 대한 예방·대처방안

항 목	물 의 사 례	예방·대처방안
요건미비 신고자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이 미비된 신고서를 방치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처리미숙으로 신고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사례◦ 접수부에 접수 처리하지 않고 신고한 본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보해 주지 않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소투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등재한 후◦ 신고요건 구비여부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구비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바로 등재◦ 신고요건이 미비된 자는 그 접수부 “비고”란에 신고요건 미비사항 요지를 기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없는 사유와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해야 함을 본인에게 통보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거소투표 신고인” 기재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 신고인”이라고 명기하지 않아 선거인명부상의 거소투표신고인수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상의 신고인수가 상이하여 거소투표신고자를 조작 등재하였다라는 오해 발생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즉시 반드시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하여 “거소투표신고자” 기재 여부 확인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마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소투표신고 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도착되는 거소투표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 신고기간 경과 후 도착되는 신고서가 신고기간내에 발송우체국의 소인이 된 것이라 하여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이 지난 거소투표신고서라 하더라도 일단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에 모두 기재한 후 신고기간 경과 후 접수되었음을 “비고”란에 명기함◦ 신고한 본인에게는 신고요건 미비로 거소투표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통지함◦ 우체국소인이 신고기간 내에 찍혀진 것이라 하여 모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명부에 등재할 수 있음



항 목	물 의 사 례	예방 · 대처방안
거소투표 대리신고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 · 면 · 동직원, 통 · 리 · 반장 등이 자기 관내 선거권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례 ◦ 장애인수용시설에 집단 거주하는 정신 지체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대리신고한 사례 ◦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 신고서 여러 매가 접수되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확정후 대리신고 사실이 발견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투표신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거소투표신고자 본인의 성명과 신고자의 성명이 다르거나, 거소투표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타인의 서명 또는 인영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신고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함 ◦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거소투표신고서가 여러 매 접수될 때는 대리신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본인 의사를 전화 확인하여야 함
거소투표신고의 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가 사정에 의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의 거소투표 신고를 철회 요구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투표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철회 요구가 불가하며 투표를 하여야 함을 안내. ◦ 다만, 거소투표용지발송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거소투표 신고서의 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투표신고서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순으로 편철하지 않은 사례 ◦ 거소투표신고서를 투표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의하여 읍 · 면 · 동 전체로 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투표신고서의 하단 중앙여백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기재하고 투표구별,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 순위별로 편철하도록 함
군인의 거소투표 신고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부대장의 직인이 아닌 사인이 날인 되었다는 이유로 부적격한 거소 투표신고로 처리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이 날인 되더라도 유효한 거소투표신고서로 처리함
착오입력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동명이인 등)을 등재한 사례 ◦ 거소투표신고인의 주소, 우편번호 등을 착오 전산입력하여 투표용지가 반송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소투표신고서에 의한 전산입력 철저 ◦ 전산입력 후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출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와 철저히 대조 · 확인(오기 입력 사항 발생시 수정 입력)



사전투표 관련 안내사항

▣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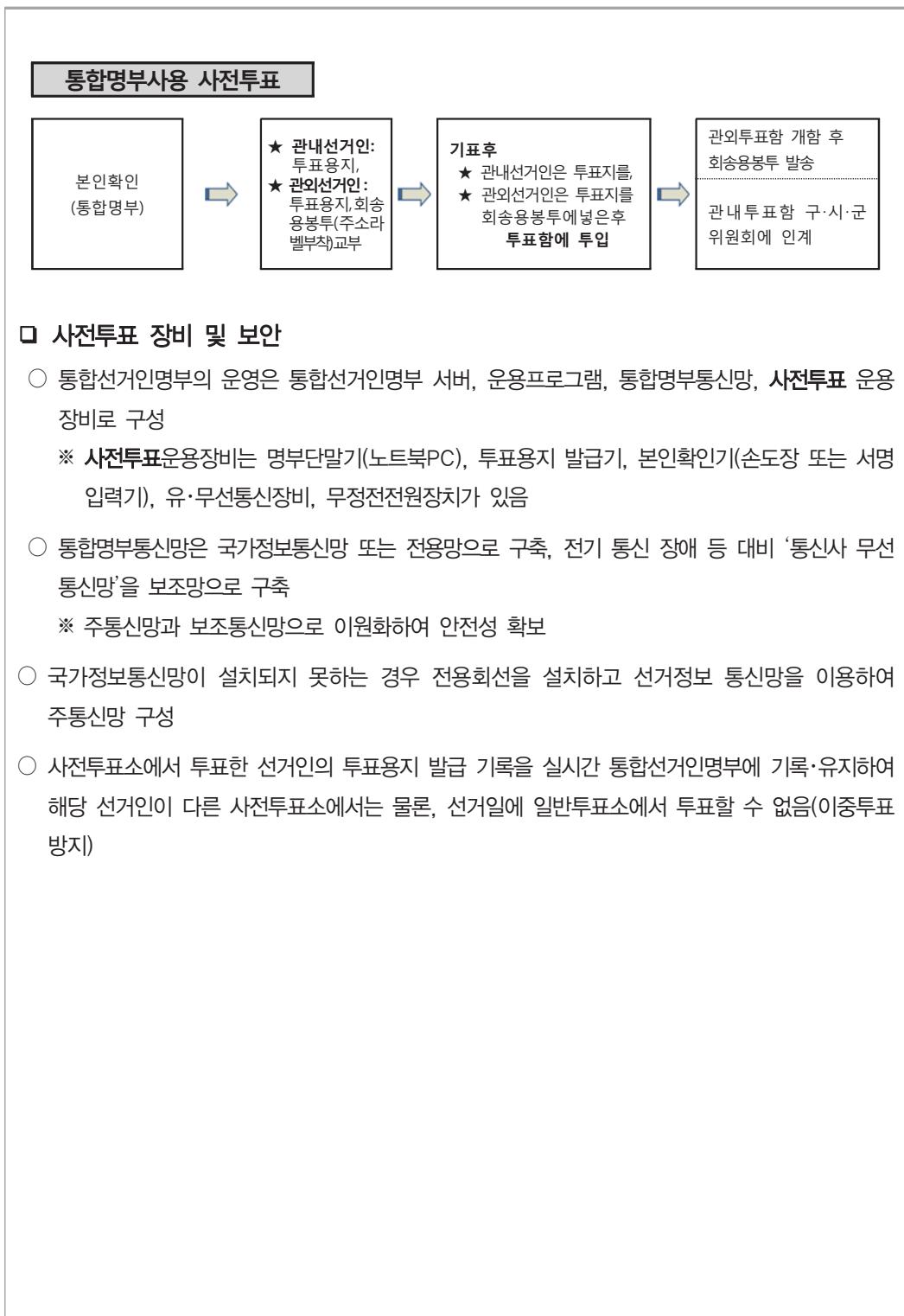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장)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중앙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사용

▣ 사전투표소 대상 및 범위

- 대상선거 : 모든 공직선거
- 대상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
- 설치단위 :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개소
※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 가능
- 기간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06:00~18:00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10.23(금), 10.24(토)임.

▣ 사전투표 절차 및 방법

-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본인확인기 신분증명서 스캔→선거인조회(명부단말기)
- 명부등재 확인되면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고, 회송용 봉투에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투표 용지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
 - ☞ 관내선거인 : 투표용지 발급하여 교부
 - ☞ 관외선거인 : 출력된 주소라벨을 회송용봉투에 부착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1매)를 교부함
-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





제 6 장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누락자 구제

1. 명부 열람(법 § 40, 규칙 § 13)

-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1(일) ~ 10.13(화)

- 열람시간 :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다만, 인터넷 열람은 상시 열람 가능
- 열람장소 :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장소·기간·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열람방법 공고 : 열람개시일 전 3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8(목)

- 공고를 요하는 사항을 공고하지 않으면 선거의 무효사유가 될 수도 있음
- 공고 후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음
- 인터넷 열람과 관련 구·시·군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
 -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 방법을 안내
- 선거인명부 열람 계도
 - 열람의 일시·장소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유권자가 열람하도록 계도
- 명부 열람시 관계공무원 등 참여
 - 구·시·군의 장은 명부 열람 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선거인 명부 오류 등 방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8>

공고 제 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인

1. 선거인명부 열람

가. 열람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공휴일에 불구함)
년	월	일까지		

나.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없음)

다. 열람장소

장소명	소재지	비 고

라.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마. 인터넷 열람방법

2. 선거인명부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 확인

가. 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확인시간 제한없음)
년	월	일까지		

나. 확인대상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다. 인터넷 확인 홈페이지 주소

라. 인터넷 확인방법

주 : “인터넷 열람(확인)방법”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확인)시 접속방법 등을 기재 합니다.



2. 이의신청과 결정(법 § 41, 규칙 § 13)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3일간)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1(일) ~ 10.13(화)

- 신청권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심사결정

- 심사·결정기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심사·결정권자 : 구·시·군의 장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통지

- 이의신청의 친절·신속한 처리

- 이의신청의 접수 및 공정한 처리
 - 구술·서면 신청에 불구하고 접수 즉시 확인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석에서 심사·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심사·결정기간 1일)
 - 심사·결정의 잘못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 요구사례가 없도록 신중 처리
 - 열람 장소에는 용지와 필기구 비치
 - 인터넷 열람시의 이의신청 처리
 - 인터넷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를 우선 회신(인터넷에 리플 및 전화 등)

3. 불복신청과 결정(법 § 42)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신청권자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 신청방법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심사 · 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 · 시 ·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 · 시 · 군의 장에게 통지

4. 명부누락자의 구제(법 § 43, 규칙 § 15)

○ 누락자의 명부등재 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4(수) ~10.15(목)

○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 누락된 선거권자 또는 구 · 시 · 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사유 : 구 · 시 · 군의 장의 착오 등으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 심사 · 결정

- 기 간 :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결정권자 :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
-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즉시 관계 구 · 시 · 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 :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 · 시 · 군의 장에게 통지

유의사항

- ❖ 선거인명부 작성 후 발생된 누락자에 대해서는 구·시·군의 장이 임의로 선거인명부에 등재 시킬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신청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별지 제8호서식] (규칙 제15조 관련) <개정 2009.2.19>

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			투표구명	등재신청사유	비고
성명	생년월일 · 성별	주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구·시·군의장 인
 선거권자 ○ ○ ○ 인

- 주 :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는다.
2. 주소 · 연령에 관한 소명자료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밀한다)을, 금치산 또는 수형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 등을 말한다.
3. 선거인명부등재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그 명단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제 7 장 선거인명부의 수정 및 확정

1. 선거인명부의 수정(규칙 § 14)

○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경우

- 명부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시 구·시·군의 장이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 명부 누락자 구제신청 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고 그 사실이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된 때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 선거인명부 수정방법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 수정할 사항이 있더라도 명부작성 만료일까지는 여하한 형태의 수정(삭선처리, 글자의 수정, 『비고』란에 사유기재 및 작성권자의 사인날인 등)처리는 없어야 함
 -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도 함께 등재

☞ 선거인명부의 수정처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명부의 열람 개시일부터 가능함

선거인명부 확정 전

-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또는 법 제43조(명부 누락자의 구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시·군의 장의 사인 날인



-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 발생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인명부 수정상황통보서」를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통보
 -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선거인명부확정과 별개로 수정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마다 구·시·군선관위로 통보

선거인명부 확정 후

-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발견한 때에는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경우 그때마다 지체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시·군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비고』란에 사유 기재
- 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나)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
 - ① 선거인명부 확정 후부터 사전투표기간 만료일(10.24)까지 : 그때마다 구·시·군 선관위에 통보하고, 구·시·군 선관위는 통합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② 사전투표기간 만료일(10.25)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구·시·군 및 읍·면·동 선관위에 통보하고, 읍·면·동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한 사람의 정보가 반영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반송된 거소투표 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송부한 후에 구·시·군의 장 또는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



2.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법 § 44, 규칙 § 16)

- 명부확정 시기

- 선거인명부 : 선거일 전 12일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6(금)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 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1(일)

- 명부의 효력 : 당해 선거에 한함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나) · (다)에 의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도 함께 송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시·군의 장에게서 제출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지체없이 송부

- 구·시·군의 장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자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명부 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구·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10.17~10.28)



[별지 제7호서식의(나)] (규칙 제14조제4항 관련) <개정 2014.1.17>

확정된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오기사항등의 통보서

투표구명	등재번호	성명	오기사항등	비고

주 : 1. “오기사항등”란에는 오기 · 선거권이 없는 자 · 사망자등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다(예 :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음, ○년 ○월 ○일 사망함등).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9호서식의(나)]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투표 구명	①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 에 의한	④ 이의 · 불복신청등 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 수	⑥ 거소 ·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⑦ 세대수	비 고
		감	증		감						
	남										
	여										
	계										
	남										
	여										
	계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 · 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사망자 ·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 ·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 명부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 ·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⑦까지의 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나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 · 첨부한다.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

투표구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 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 주 : 1.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불복신청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2.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던 자가 “세대주”인 때에는 비고란에 “세”라고 기재한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각각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 적는다.

[별지 제2호] (규칙 제10조제1항 관련)

선거인명부확정내역

투표 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②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				③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국내 거소투표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국내 거소투표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국내 거소투표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②란은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부재자신고를 하여 국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과 국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은 동시선거에 있어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 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2. “인구수 · 선거인수 · 확정된 (거소투표) · (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제 8 장 선거인명부의 재작성 및 사본교부

1. 명부의 재작성(법 § 45, 규칙 § 17)

○ 재작성 사유

-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다만,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송부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재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

○ 재작성 방법

- 일반적인 경우
 - 법 §37(명부작성) 내지 §45(명부의 재작성)의 규정에 따라 재작성 하되, 선거인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전산화일에 의하여 출력 작성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작성기간·열람기간·열람장소·이의신청 및 심사결정·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규칙 §17①)
 - 구·시·군선관위가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17②)



2.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교부(법 §46, 규칙 §18)

- 교부권자 : 구·시·군의 장
- 신청권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비례대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은 제외

- 신청방법 : 구·시·군의 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함
- 신청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5(목)까지

- 교부수량 : 후보자별 1통(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 작성비용 : 교부신청자가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며,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시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0(토)까지

- 서식 :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 포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본의 양도 · 대여금지

-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256③2호다목)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별지 제10호서식의(가)] (표지) <개정 2014.1.17>

(선거인) · (거소투표신고인)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1. 이 사본은 「공직선거법」 제44조에 따른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이중등재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자가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든지 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구 · 시 · 군

○ ○ 읍 · 면 · 동 제 ○ 투표구분

○ ○ 구 · 시 · 군의 장 인

주 :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나)] (끝부분) <개정 2014.1.17>

이 사본은 ○ ○ 읍 · 면 · 동 제 ○ 투표구의 작성된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와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 ○ 구 · 시 · 군의 장 인

주 : 1.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교부시에 사본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전산자료 복사본에는 “인”을 생략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다)] <개정 2014.1.17>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교부신청서

투표구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사본작성비용 원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 ○ ○	□
	선거사무장	○ ○ ○	□
	선거연락소장	○ ○ ○	□

○○구·시·군의 장 귀하

- 주 : 1. 신청인은 신청대상투표구명과 명부의 종류(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 투표신고인명부) 및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라)] <개정 2014.1.17>

공시 제 호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 인명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3. 세대주명단 작성 · 교부(법 § 60조의3, § 111)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법 §60조의3)

- 교부목적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을 발송
- 교부신청범위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
- 신청주체 :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법 §60조의2)

-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 선거일 전 120일부터('15.6.30)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15.7.17)
 - 군의원 및 장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15.8.16)
- ※ 상기 사항 모두 기준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 선거기간(법 §33)

- 대통령선거 : 23일 /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선거 : 14일

- 교부신청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3(토)까지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법 §49①)

- 대통령선거 : 선거일 전 24일
-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일전 20일

○ 의정활동보고 관련(법 §111)

- 교부목적 : 의정활동 보고를 위한 보고서 발송

☞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발송할 수 없음(인터넷 게재만 가능)

- 신청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원

- 교부신청 :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교부 : 신청 시 자체없이



○ 세대주명단 작성 · 교부(규칙 §26조의2, §49 등)

- 신청서식 : 별지 제15호의 4서식의 (가)

☞ 신청대상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

- 교부의무자 : 구·시·군의 장

- 작성 · 교부

- 신청한 발송대상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주소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교부
-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산자료복사본 교부로 갈음 할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 장치를 할 수 있음

- 작성비용 공시

- 구·시·군의 장이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해 공시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규칙 제26조의2제11항 · 제49조제2항 관련) <개정 2009.2.19>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 ○ 선거 ○ ○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국 회 의 원	○ ○ ○	인
신청인	○ ○ 의 회 의원	○ ○ ○ 인
예비후보자	○ ○ ○	인

○ ○ 구 · 시 · 군의 장 귀하

-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 · 연령별 · 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의 2] (규칙 제26조의2 제13항, 제49조3항 관련) <신설 2005.8.4>

공시 제○ ○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 ○ 구 · 시 · 군의 장	인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제 9 장 투 표

1. 선거방법(법 § 146)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함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투표소의 설치(법 § 147, § 148)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8(일)까지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투·개표 장소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261④)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

-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 '15.10.19(월)까지



3.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법 § 146조의2, § 147⑨)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법 §146의2, 규칙 §67)

- 대상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1인씩 위촉
- 역할 : 해당 투표구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감독
- 해촉 사유
 -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구·시·군위원회 또는 읍·면·동위원회의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표사무원(법 §147⑨)

-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가 위촉하고 선거일전 3일까지 성명을 공고

☞ 투표사무원 공고 : '15.10.25(일)까지

- 대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

☞ 다만, 일반직공무원 중 공안직군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외의 특정직 및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함

- 각급 학교의 교직원
-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해태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261⑧2호바목)



4. 투표안내문의 발송(법 § 153)

-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대상(방법) :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우편발송)
- 기재내용 : 세대별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선거공보 동봉)
- 기한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18(일)까지

- 우편요금 :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제65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시각장애인)는 점자형 투표안내문 동봉

5.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법 § 154)

-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발송대상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
- 시기 : 선거일전 10일까지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18(일)까지

- 발송·참관
 -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발송하되, 정당추천위원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봄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함
 - 책자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
 -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
 - 발송·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
 - 우체국장은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함



6. 투표시간(법 § 155)

- 투표시간(재·보궐선거의 경우) :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28(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거소투표자의 경우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가 도착되어야 함

7. 투표의 제한(법 § 156)

- 투표할 수 없는 자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 거소투표자의 투표
 - 거소투표자는 거소투표를 하여야 함
 - 다만, 허위신고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거소 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자,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소 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8.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법 §157, 규칙 §82②)

-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

☞ 신분증명서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 갈 수 없음



9. 사전투표, 거소투표(법 § 158, § 158의2)

사전투표

- 대상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나(거소투표자 제외)
- 투표기간 : '15.10.23~10.24(2일간)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제시물 : 신분증명서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함.
- 사전투표의 우편발송
 - 발송자 : 사전투표관리관 등
 - 시기 : 사전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다음에 따라 처리
 - 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
 - ②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첫째날은 사전투표소에 보관하고 해당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 종료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인계

거소투표

- 소속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용지 도착 즉시,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배부하고 거소투표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투표장소 : 자택, 군부대, 병원·요양소,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 거소
 - *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 후 투표 가능
- 투표절차
 - ① 관할 구·시·군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



②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도록 안내

※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10. 투표참관(법 § 161, § 213)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
 - 신고자 : 정당 · 후보자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 · 방법 : 선거일 전 2일까지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투표참관인의 지정 : 투표소마다 8인
-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 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 제18조제1항2호 후단 위헌판결로 일반법 중 집행유예자는 이번 선거부터 가능

 -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투표참관
 -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 · 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읍 ·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11. 사전투표참관(법 § 162, § 213)

- 사전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신고자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신고인수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
 - 신고시기·방법 : 선거일 전 7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기타 투표참관에 관한 사항은 법 §161 준용

12.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법 § 163)

-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그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 ※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 불가
- 사전투표소의 출입제한에 대해서 법 §163 준용

13.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법 § 164 ~ § 166)

-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구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
 - ※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흉기·폭발물을 지닐 수 없음



14. 투표의 비밀보장(법 § 167)

○ 질문 및 진술요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음

○ 텔레비전방송국 등의 예외적인 질문허용

- 대상 :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사
- 목적 : 선거의 결과 예상
-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음(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함
- 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소에서 공개한 투표지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나)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

[별지 제50호서식의(나)](규칙 제92조 관련) <개정 2014.1.17>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

이 봉투에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에 규정된 공개된 투표지가 들어 있음(선거명 : ○ ○ 선거, ○ ○ 선거)

□ ○ 읍·면·동 제○ 투표소 투표관리관	○ ○ ○	□ ①
□ ○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 ○ ○	□ ②

- 주 : 1. 이 서식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기표 후 공개한 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앞면에 첨부하거나 봉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법 218조의18제1항에 따라 국제 특급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여 재외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를 “공개된 투표지 등의 표시”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3항에 규정된 미리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 있음”을 추가로 기재하여 사용한다.



15. 투표록의 작성 및 투표함의 봉쇄 · 봉인(법 § 168, § 169)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 봉인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위의 규정과 같이 각각 봉인
-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16. 투표함 등의 송부 및 인계(법 § 170, § 171)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 투표용지를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
-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



제 10 장 개 표

1. 개표관리(법 § 172)

- 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개표소(법 § 173)

- 공고기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23(금)까지

- 설치기한 : 선거일 전일까지

3. 개표사무원(법 § 174)

- 위촉·공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

☞ '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15.10.25(일)까지

- 대상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직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직원,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은 제외



4. 투표함의 개함(법 § 177)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
-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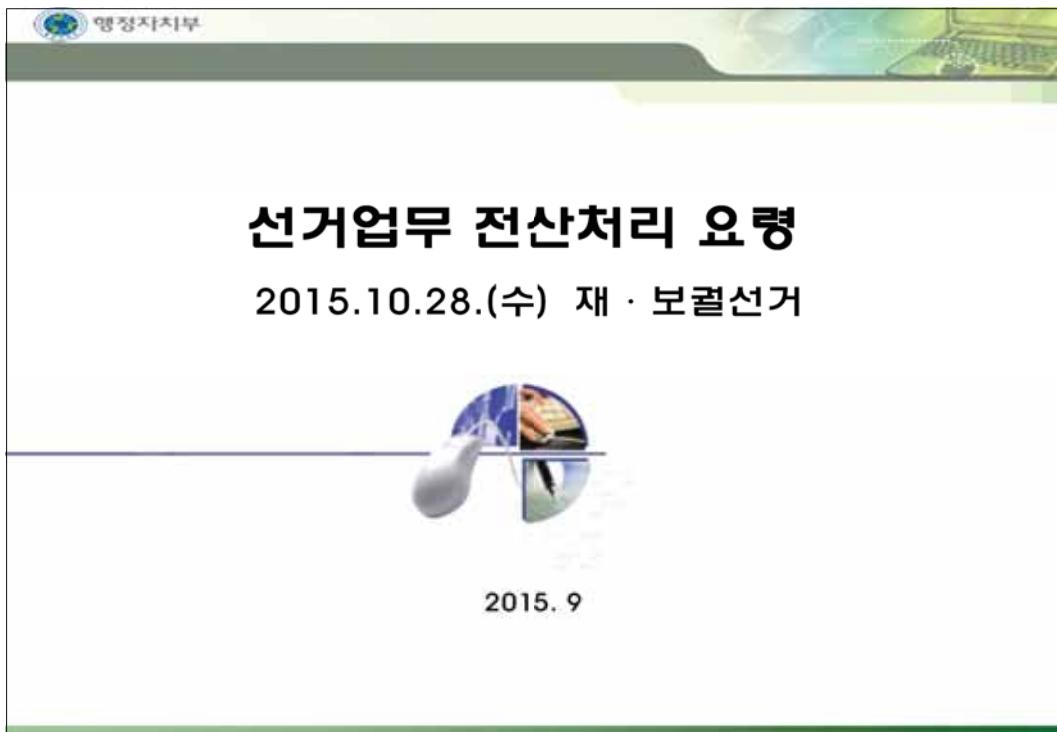
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법 § 183)

- 개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갈 수 있는 자
 -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II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







행정자치부

2. 선거 전산업무 처리일정

일정	시스템명	처리 업무	처리기관
10/6	서군구정보시스템	9355.주민오류자료조회	음면동
		9301.외국인 선거인 등록	
		9310.국내거소선거자등록	
		9311.선거인파일작성	
		9312.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10/6 ~ 10/10	RIUS	9313.선거인명부출역(2부)	서군구(선거담당)
		340.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370.선거인명부기타동보서	
10/10	서군구정보시스템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10/6 명부작성 관료 이후)	음면동
		9322.거소투표신고접수부출역	
		9323.거소투표신고안명부작성	
	서군구정보시스템	9324.거소투표신고안명부작성상황통보서	음면동
		9313.선거인명부출역(1부)	
10/10~	RIUS	360.거소투표신고안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서군구(선거담당)
		380.거소투표신고서접수내역	
		서버작업	
10/10~	서군구정보시스템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작성	서군구(전산담당)
		9331.선관위용파일작성(10/10 거소투표 폐장 이후)	
		9332.후보자용파일작성	
10/11~10/13	서군구정보시스템	9341.선거인명부발령	음면동
		9351.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음면동
	서군구정보시스템	9333.선관위용파일작성(서군구용)	서군구(선거담당)
10/16	RIUS	35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서군구(선거담당)
		370.선거인명부기타동보서	
		380.선거인명부작성내역	
10/16~10/18	서군구정보시스템	서버작업	서군구(전산담당)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명부 작성	
		9352.투표안내문	음면동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법정동별 통번 환원

법정동별 통번[본번 부번/통번/번지호오류] 목록수[문자] | 조회입력[] | 개인[거주]-세대[할소]-개인[할소]-세대[거주]-기타[오류자료]

법정동코드	법정동명	본번	부번	통번
4711110000	종소현동221	1	법정동	2
4711110100	상도동	3		1
4711110100	상도동	27	2	1
4711110400	속도동	21	7	
4711111600	대길동	20	13	1
4711111700	이봉	17	2	
4711125000	구봉로1동	1	1	1
4711125000	구봉로1동	4	5	2
4711125000	구봉로1동	5	법정동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1	1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1	2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1	3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1	80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1	법정동	528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2	1	3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2	2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2	3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2	법정동	634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3	4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3	법정동	216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4	5	2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4	법정동	348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5	5	2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5	6	1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5	법정동	353
4711125021	구봉로2동 구봉로21	6	7	1

* 표를 검증할 때 표정을 차지하는 행은 표를 확인합니다.

검색결과 [0] | 총 출력 | 총 표 | 도움말

○ 법정동별통번에서 조회되는 내역들은 오류자료가 아닌 현재 거주 세대의 통.번.별 현황이다.
 ○ 관리되지 않는 통번에 세대수가 있을 경우 대상세대를 세대별 명부에서 조회하여 "자료관리->직권정리->[5312] 세대현 주소정리" 업무에서 통번을 수정한다.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본번부번/동반/번지호 오류

자료번호: 관내주민오류자료조회[IRISROCI95000W]

반드시 작업을 끝마마다 조회버튼을 실행하여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변경동별 출판 [본번부번/동반/번지호오류[특수문자]] [작성인력호] 개인[거주]-세대[발소]-개인[발소]-세대[거주]-기타-오류자료

세대주민번호	세대주민명	동반	부번	호	번	번지	층
한 품호	봉면오류(가)	나	2	3	951	1	
한 품호	거	부면오류(나)	2	3	951	1	

• 16자/8자/영문/한글 특수문자가 들어 있는 오류자를입니다.
• 자료관리->작성관리->[5312]세대원주조정리 업무에서 수정하십시오.

검색결과 |

조회 |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템을 선택 후 조회업무를 클릭해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직권입력증

자료번호: 관내주민오류자료조회[IRISROCI95000W]

반드시 작업을 끝마마다 조회버튼을 실행하여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변경동별 출판 [본번부번/동반/번지호오류[특수문자]] [직권입력증] 개인[거주]-세대[발소]-개인[발소]-세대[거주]-기타-오류자료

구현번호	설명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수주소
조 종일	구룡포읍 호미리 15-4 (6/)	구룡포읍 구룡포리 (6/)		
김 혼경	구룡포읍 홍제산길 18-2 (...)	구룡포읍 석별리 (10/)	108-101	

• 직권입력증의 자료입니다.
• 직권입력증의 자료는 신거민법부 결의 시 폐지되므로.

◎ 자료발행

검색결과 |

조회 |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템을 선택 후 조회업무를 클릭해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개인[거주]/세대[말소]

자료형태-관내주민오류자료조회(DR90C195000W)

반드시 학번/주민번호/복지호수번호[특수문자] | 직권입력[] 개인[거주]-세대[말소] 개인[말소]-세대[거주] 기타 오류자료

법정동별/동별/본번부번/동별/복지호수번호[특수문자] | 직권입력을 개인[거주]-세대[말소] 개인[말소]-세대[거주] 기타 오류자료

주민번호	성명	개인화증명서상태	개인상태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상태
0000000000000000	김 민경	진입	거주자	00000000-1	김 민경	사망발소
0000000000000000	안 산영	동반면결	거주자	00000000-2	안 산영	사망발소
0000000000000000	이 민자	진입	거주자	00000000-3	이 민자	사망발소

• 결과와 세대의 거주상태가 실망한 경우입니다.
결과 확인 후 맞는 상태를 풀크리에 주민번호형식으로 FAX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3 | 총 3 | 총 3 | 도움말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업무를 클릭해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개인[말소]/세대[거주]

자료형태-관내주민오류자료조회(DR90C195000W)

반드시 학번/주민번호/복지호수번호[특수문자] | 직권입력[] 개인[거주]-세대[말소] 개인[말소]-세대[거주] 기타 오류자료

법정동별/동별/본번부번/동별/복지호수번호[특수문자] | 직권입력을 개인[거주]-세대[말소] 개인[말소]-세대[거주] 기타 오류자료

주민번호	성명	개인화증명서상태	개인상태	세대주주민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상태
0000000000000000	이 죽연	재설정구입소	말소자	44000000-1	김 희구	거주자
0000000000000000	김 희구	재설정구입소	말소자	44000000-1	김 희구	거주자
0000000000000000	한 원우	사망신고발소	사망발소	00000000-1	한 원우	거주자

• 결과와 세대의 거주상태가 실망한 경우입니다.
결과 확인 후 맞는 상태를 풀크리에 주민번호형식으로 FAX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3 | 총 3 | 총 3 | 도움말

○ 반드시 해당 작업영역 탭을 선택 후 조회업무를 클릭해주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3. 주민오류자료 조회 – 기타오류자료

주민번호	성명	오류내용
123456789012345678	김길자	세대없는 개인
123456789012345679	이봉갑	세대없는 개인
123456789012345670	박봉갑	세대주관계 오류
123456789012345671	한상경	세대주관계 오류

* 출력 버튼 후 주민문명정보 FAX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 0 총 4 건

○ 오류유형

- 세대없는 개인: 세대자료가 없는 개인자료로서 일정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에서 조회가 불가능
- 거주상태 누락: 거주자,寓소자 등과 같은 거주상태가 누락된 자료로서 개인상태를 확인 후 출력을에 표기
- 세대주관계 오류: 세대자료와 개인자료의 세대주 관계 오류 자료

행정자치부

3. 기타주소정비 – 자료관리->영부관리->5210.세대별영부

주민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
10-거주자	구룡포읍 구룡포로 709-39 (37) (2층)	2011-06-16 등록
11-선택자	구룡포읍 구룡포로 709-20 (37) (2층) (서울로스터)	2011-03-03 등록
12-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272-20 (108) (마을기숙장)	2011-09-24 등록
13-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111-222 (11/11) (2층)	2012-07-01 등록
14-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111-222 (11/11) (1층) (동네살가 2층)	2012-07-01 등록
15-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1489-1 (59) (읍반다방)	2010-09-28 등록
16-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111-222 (11/11) (1층)	2012-07-01 등록
17-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23-1 (11/11) (2층) (남녀전인 마버사)	2008-09-17 등록
18-선택자	구룡포읍 정일로 404-4 (69) (마을리새학교)	2011-05-08 등록
19-선택자	구룡포읍 구룡포로 23 (2층) (당지방간) (지하갈)	2011-11-07 등록

○ 자료관리->영부관리->5210.세대별영부에서 주택명칭·총·호수(기타주소) 항목에 자료가 있는 대상자를 모두 조회

○ 등록구분이 **거주자**, **국외이주신고자**, **거주별명등록자**,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신고자**, **재외국민출국자**, **재외국인거주별명자**를 각각 조회하여 지번주소 끝번호()안에 표기되어있는 **주택명칭·총·호수**를 전수 확인

○ 기타주소란에 주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가 있는 경우, 수정대상자를 선택하고 **세대현주소경기변환** 버튼을 클릭하여 현주소의 주택명칭·총·호수(기타주소) 자료를 수정



3. 기타주소정비 - 5312. 세대현주소정리

주택명칭 : 총 호수(다가구주택인 경우별만) : 가나다라 한글자

○ 주택명칭·총·호수(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항목에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후 저장버튼 클릭
○ 반드시 화면을 닫고 다음 대상자 정비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조회

국적	국적번호	국적명	국적별등록번호	국적별등록일	국적별등록종류	국적별등록상태	국적별등록지역
1	ERLOW, JR. ER.	1901-11-16	남	1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7-16
2	김미희	1901-11-16	여	2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29-3
3	TALBERT, SUSA.	1901-11-16	남	3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6-11
4	JAMES, BOND	1901-11-16	남	4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7)
5	PARK, CHARLE.	1901-11-16	남	5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39-3
6	CREDEN, BENJ.	1901-11-16	남	6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58-1
7	OMS, SHONJI	1901-11-16	남	7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49-4
8	ENLOW, ESTHE.	1901-11-16	여	8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2-2
9	김진호(부인)	1901-11-16	여	9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8-8
10	1.은	1901-11-16	여	10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240-3
11	JIN, JISU	1901-11-16	여	11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68-8
12	BIZZARD, JUA.	1901-11-16	여	12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29-3
13	LI, YUANHU	1901-11-16	여	13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46-4
14	WIDAWAT, JADEE	1901-11-16	여	14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68-6
15	LI, WANGO, KA.	1901-11-16	여	15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45-5
16	YOO, WI, JEA	1901-11-16	여	16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79-6
17	김이쁜	1901-11-16	여	17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0-1
18	호미스	1901-11-16	여	18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6-2
19	FLOYD	1901-11-16	여	19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7)
20	민경선(부인)	1901-11-16	여	20	1901-11-1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7)
21	TERMINATOR	2009-02-02	남	21	2009-02-02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23 (2)
22	미우강	1971-11-11	여	22	1971-11-11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7)
23	LION	1974-05-06	남	23	1974-05-06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57)
24	1000000000P.	1977-07-01	여	24	1977-07-01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17)
25	1.연수	1988-02-01	남	25	1988-02-01	등록	포항시 남구 구봉로동 국영간 12-

○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외국인선거인등록**한다.
○ 조회하고자 하는 법정동을 선택한다. 모두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동을 선택하지 않는다.
○ 역설파일로 일괄 등록할 경우 주소가 모두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동명을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누락될 수 있다.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추가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ENLW-JR-BH...	이자드래슬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별리 7 (6)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별리 7 (6)

외국인등록 - 외국인개별등록 [HSIROC] (2000) W

추가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이자드래슬] 국적 [미국]
전화번호 [010-2222-3333] 등록일자 [2012-02-06] 만료일자 [2012-02-06] [별경통↔도로(길)명]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23-123 (1)-101-1 [별경통↔도로(길)명]
 [도로명↔지번] [지번명↔도로명]
지번주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1-1 [별경통↔도로(길)명]
별경주소 []
별경우편 []
※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는 필수입력 항목이고, 나이와 성별은 선택항목입니다.

[저장] [] [] []

23	L108	1974-05-0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보리 1 (3/)
24	0333333333P	1977-07-01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보리 1 (1/1)
25	백풀수	1996-02-01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2-

[] [] [] [] [] [] [] [] [] [] [] []

- 신규등록은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된 외국인 대상자는 모두 선거인으로 등재되므로 신중하게 입력한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등록함)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수정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ENLW-JR-BH...	이자드래슬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별리 7 (6)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별리 7 (6)

외국인등록 - 외국인개별등록 [HSIROC] (2000) W

수정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이자드래슬] 국적 [미국]
전화번호 [010-2222-3333] 등록일자 [2012-02-06] 만료일자 [2012-02-06] [별경통↔도로(길)명]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23-123 (1)-101-1 [별경통↔도로(길)명]
 [도로명↔지번] [지번명↔도로명]
지번주소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1-1 [별경통↔도로(길)명]
별경주소 []
별경우편 []
※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주소는 필수입력 항목이고, 나이와 성별은 선택항목입니다.

[] [] [] [] [] [] [] [] [] [] [] []

23	마우리	1974-11-11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보리 1 (3/)
24	L108	1974-05-0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보리 1 (1/1)
25	0333333333P	1977-07-01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양보리 1 (1/1)
26	리차드래슬	2000-09-09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 123-123 (1/1)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2-

[] [] [] [] [] [] [] [] [] [] [] []

- 수정하려는 대상자 선택 후 “수정”버튼을 누른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DB네비게이터를 이용해서 이전자료와 다음자료를 이동하면서 자료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다.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삭제

외국인번호	성명	생년월일	الجنس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JONES JR E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	김아름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3	TALBOT SUS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4	JAMES BONG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5	PARK CHARLE...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6	CHEECK SEUNG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7	OMO SHIKUJ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8	ENLAW ESTHE...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9	김자연(총선)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0	전 흥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1	JIN JISHU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2	BUDZIARD JU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3	LI YUANJI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4	MICHAEL JODO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5	LI KARDO K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6	VOO HI JEAN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7	김아론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8	조이스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19	FLOIND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0	엔디트?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1	TERMINATO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2	미우간	1901-11-16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3	LIOR	1974-06-06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4	000000000P	1977-07-01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5	리차드캐슬	1980-01-01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26	한정수	1986-02-01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00	포항시 남구 1-1

○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외국인리스트에서 선택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 외국인 대상자 중에 19세 미만인 대상자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삭제 처리된다.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1

외국인번호	성명	생년	성별	국적	등록일자	체류지

* 등록법령원 외국인은 주소가 자동입력되지 않으나 저장후 변경등록 선택하지 않고 조회해야 합니다.

[파일열기]

○ “파일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에서 제공된 외국인 선거 대상 엑셀파일을 읽는다.
 ○ 입력하고자 하는 엑셀파일에는 선거인 대상만 포함하는 파일이어야 한다.
 ○ 예상 할령순서 : 인번, 행정기관명, 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적, 등록일자, 체류지, 전화번호, 체류자격, 만료일자, 법정동코드, 도로명코드, 자치이부, 건물번호, 건물부번, 산구분, 번지, 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 데이터형식 : 등록번호: 202020X-XXX-XXXX, 등록일자/만료일자: 2008.12.30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3

외국인등록-외국인일괄등록(IRSBCCI20002W)

일괄등록

번호	병기기관명	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적	등록일자	배부지
1	중화인민공화국	111111111111111111	ENLOW JR ERIC GUNNAR #	남	미	2004.03.04	경상북도 포항시
2	중화인민공화국	222222222222222222	TALBOT SUSANNA JOY	여	미	2005.08.30	경상북도 포항시
3	중화인민공화국	333333333333333333	PARK CHARLES KWON #	남	미	2005.06.16	경상북도 포항시
4	중화인민공화국	444444444444444444	CREED BENJAMIN JAMES H	남	미	2005.10.14	경상북도 포항시
5	중화인민공화국	555555555555555555	ENLOW ESTHER LIONELLE F	여	미	2006.01.24	경상북도 포항시

파일열기 일괄저장 작업취소 종료

○ 액셀파일의 내용과 그리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4

등록일자	등록자	전화번호	등록자격	만료일자	처리결과
2004.03.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우	030-XXXX-XXXX	F-3	2006.02.28	정상처리
2005.08.3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우	030-XXXX-XXXX	F-3	2006.08.14	정상처리
2005.06.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2리	030-XXXX-XXXX	F-1	2007.06.14	정상처리
2005.10.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현리 1	030-XXXX-XXXX	F-3	2006.07.01	정상처리
2006.01.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우	030-XXXX-XXXX	F-3	2006.02.28	정상처리

※ 처리결과가 '정상처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별로 입력한다.

4. 외국인선거인등록 – 외국인일괄등록5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01111	ENLOW JR E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	01111	김미희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3	01111	TALIB SUS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4	01111	JAMES BONS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5	01111	PARK CHARLE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6	01111	DRECH DEJU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7	01111	ORO SHINJI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8	01111	ENLOW ESTHE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9	01111	김자경우은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0	01111	한숙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1	01111	JIN JISHU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2	01111	BIZZARD JU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3	01111	LI YUNYU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4	01111	MICHAEL JODOR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5	01111	LI MARIO K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6	01111	YOO WI JEA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7	01111	라이언	1901-11-1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8	01111	호이스	1901-11-16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19	01111	FLOYD	1901-11-16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0	01111	밸리타...	1901-11-16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1	06020	TERMINATOR	2005-02-02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2	11111	미우라	1911-11-11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3	74050	LION	1974-05-06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4	06000	리차드웨슬	1980-08-08	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25	06020	한종수	1996-02-01	남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로30번길 4 (5/3)

※ 액설파일로 일괄등록 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주소(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등/층/호, 공동주택명, 통번)는 대상자 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 선거인생성시 법정동과 통번에 따라 해당 투표구에 배정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5.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 국내거소신고자 조회

경기(부록)-국내거소신고자등록국민선거번호록[REGQCT136000W]

번호	거소신고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1	165480-5	이준호	1988-04-01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5-2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5-2
2	700402-6	LEE	1979-04-02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4-7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4-7
3	710002-5	나다마	1971-06-02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1-5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1-5
4	732902-6	문소희	1972-09-02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8-7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8-7
5	736302-6	태경만	1973-02-02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6-5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6-5
6	750902-5	김현우	1975-09-02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2-7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2-7
7	760102-5	소자갑	1976-01-02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7-1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17-1
8	861102-5	구운표	1986-11-02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6-4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6-4
9	870401-9	이미연	1987-04-01	남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7-6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7-6
10	880202-6	김간디	1988-02-02	여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9-3	포항시 남구 구봉로 1단지길 9-3

※ 조회선택 [전체선택] [전 검색됨] [수정] [수정] [삭제] [학교과밀집도등록] [학교자정] [등록] [도로명]

- 조회하고자 하는 법정동명을 선택한다. 모두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동명을 선택하지 않는다.
- 역설파일로 일괄 등록한 경우 주소가 모두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동명을 선택하여 조회할 경우 누락될 수 있다.

5.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 국내거소신고자 추가/수정/삭제

경기(부록)-국내거소신고자등록국민선거번호록[REGQCT136001W]

※ 등록되는 국내거소신고 대상국민은 인구수로 추출되므로 모두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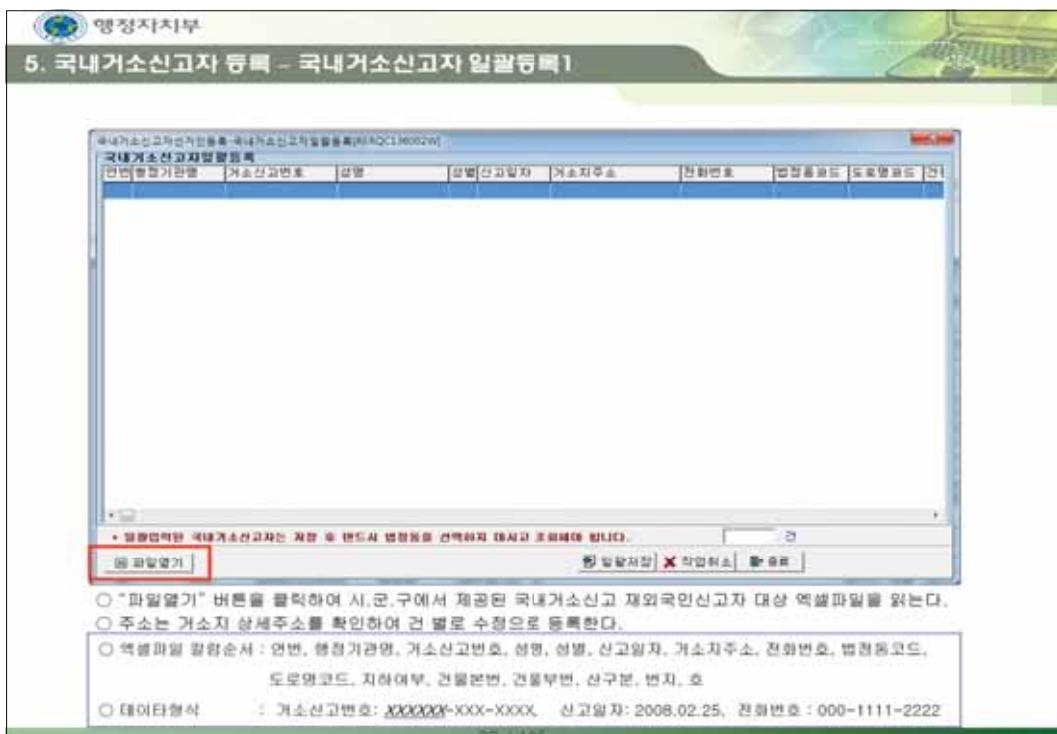
거소신고번호	이름
전화번호	간호대자
도로명주소	선택
지번주소	선택
우편주소	선택
복수주소	선택
기타주소	선택

* 거소신고번호, 거소일자, 이름, 주소는 필수입력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은 선택입력하세요 합니다.

[저장] [취소]

※ 등록 [수정] [삭제]

- 국내거소신고자 인구수 표기를 위해 반드시, 모든 국내거소신고자 대상자를 등록한다. (19세 미만, 선거권 없는 자 등 포함)
- 건 법 입력은 “추가”버튼을 클릭하고 거소신고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5.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 국내거소신고자 일괄등록3

민법 명장기관명	거소신고번호	성명	성별	신고일자	거소자주소	전화번호	집합표지	도로명코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00000000000000	김상복	남	20000101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	4729011500	4729031306	
3 북부동	240604-	전	F	20120305	경상북도 경산시 경문	4729011500	4729031306	
4 전장읍	251115-	설	F	20060102	경상북도 경산시 전장	4729025324		
5 서부동	270304-	김	F	20040102	경상북도 경산시 월산 053-812-8992	4729011000		
6 서부1동	300215-	자	M	20020819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31304	
7 전장읍	300509-	이	M	20020319	경상북도 경산시 전장	4729025330		
8 중부동	300516-	양	M	20030108	경상북도 경산시 중동	4729012700	4729031304	
9 서부1동	310311-	화	M	20000317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473945	
10 서부1동	310711-	김	F	20060428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11 남부동	330814-	이	M	20020123	경상북도 경산시 벽천	4729010900	47290473905	
12 서부동	360407-	김	M	20020314	경상북도 경산시 삼동	4729010900	47290473940	
13 외촌면	370218-	김	F	20000729	경상북도 경산시 외촌	4729010900	4729031023	
14 서부동	370805-	박	M	20000915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31304	
15 서부동	380103-	김	F	20121005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053-813-5387	4729010900	47290473945	
16 서부1동	390612-	김	F	20020619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31304	
17 화암읍	391121-	김	M	20010119	경상북도 경산시 화암 053-857-7479	4729025022		
18 남전면	400807-	이	M	20021119	경상북도 경산시 남전	4729037034		
19 전장읍	400903-	김	F	20021128	경상북도 경산시 전장 053-857-3110	4729025300		
20 서부2동	401223-	송	M	20070827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	4729011100	47290473905	
21 서부1동	410106-	문	M	20071101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473945	

* 등록업무를 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을 제외 후 반드시 변형등록 선택하여 대체로 조회해주세요.

[화면열기] [일괄저장] [작업취소] [클립보드]

- 액설파일의 내용과 화면에서 조회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5. 국내거소신고자 등록 - 국내거소신고자 일괄등록4

민법 명장기관명	거소신고번호	성명	성별	신고일자	거소자주소	전화번호	집합표지	도로명코드
국민건강보험공단	110000000000000000	김상복	남	20000101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	4729011000	4729031304	
3 북부동	240604-	전	F	20120305	경상북도 경산시 청동	4729011500	4729031306	
4 전장읍	251115-	설	F	20060102	경상북도 경산시 전장	4729025324		
5 서부동	270304-	김	F	20040102	경상북도 경산시 월산 053-812-8992	4729011000		
6 서부1동	300215-	자	M	20020819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31304	
7 전장읍	300509-	이	M	20020319	경상북도 경산시 전장	4729025330		
8 중부동	300516-	양	M	20030108	경상북도 경산시 중동	4729012700	4729031304	
9 서부동	310311-	화	M	20000317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473945	
10 서부1동	310711-	김	F	20060426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11 남부동	330914-	이	M	20020123	경상북도 경산시 벽천	4729010900	47290473935	
12 서부동	360407-	김	M	20000915	경상북도 경산시 삼동	4729010900	47290473940	
13 외촌면	370218-	김	F	20000729	경상북도 경산시 외촌	4729010900		
14 서부동	370805-	박	M	20021128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	4729011100	47290473905	
15 서부동	380103-	김	F	20070827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	4729010900	47290473945	
16 서부동	390612-	김	M	20071101	경상북도 경산시 보일	4729010900	47290473945	

* 등록업무를 국내거소신고자외국인을 제외 후 반드시 변형등록 선택하여 대체로 조회해주세요.

[화면열기] [일괄저장] [작업취소] [클립보드]

- 화면의 마지막 팝업 작업결과를 확인한다.
- 처리결과가 “정상처리”가 아닌 재외국민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 별로 입력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기초사항 조회

선택-선거인파일작성[0006-0000W]

선 거 구 분	0006-해보설선거	선 거 일 자	2015-10-28	조회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일자	기준 생년월일	외국인
선 거명 선거구명		작성기준일자	선거시간 조건	오름 차림
2. 투표구사정		부표구명	시작등록번호	부표장소
3. 투표구간		등록번호	종료등록번호	부표장소번호

필자는(1000X0000)

② 등록된 선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선거기초사항을(를)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자료검색 전경우

1. 기초사항·처장 2. 수정 3. 삭제 4. 확보 5. 도움말

- 선거일자 "2015-04-29"로 자동 출력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등록된 선거가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예"를 선택한다.
- 본 명부 작성 때 이미 예비명부를 작성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 화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기초사항 입력

선택-선거인파일작성[0006-0000W]

선 거 구 분	0006-해보설선거	선 거 일 자	2015-10-28	조회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일자	기준 생년월일	외국인
선 거명 선거구명(직접구·선거구)		작성기준일자	선거시간 조건	오름 차림
2. 투표구사정		부표구명	시작등록번호	부표장소
3. 투표구간		등록번호	종료등록번호	부표장소번호

필자는(1000X0004)

③ 선거기초사항(을)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자료검색 전경우

1. 기초사항·처장 2. 수정 3. 삭제 4. 확보 5. 도움말

- 선거명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수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영장을 수정한다.
- 선거구명은 해당 읍면동의 선거구명을 입력(ex: 구룡포읍 선거구)한다.
- 작성기준일은 수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일자가 입력됨)
- 화면 하단의 "1.기초사항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선거기초사항이 저장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사항 입력

○ 선거기초사항을 입력하여 저장하고 나면 투표구사항에 “추가”버튼이 활성화된다.

○ 투표구사항란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투표구사항을 입력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사항 입력2

○ 투표구, 시작등재번호, 투표장소를 입력한다. (각 투표구별로 시작등재번호는 반드시 1을 입력한다.)

○ 주소입력방법 “통번”을 선택한다.

○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투표구가 저장된다.

○ 같은 방법으로 투표구를 전부 입력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1

선거/선거인파일작성(EQCL21000W)

선 거 구 분 [0006-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6-10-26] 기록 조회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명 [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6-10-26] 기록 청년불발 [1996-10-26] 외국인 [포함]
 선거구명 [의정부 관계구] 학설기준일자 [2016-10-01] 선거시간 오전 [시 부터] 오후 [시 끝자]

2. 투표구사항
 투표구명 [제1투표구] 시작점재번호 [1] 종료번호 [1] 주소입력방법 [주소번호(정원내부)] 투표장소주소 [제1투표구] 주소번호 [1]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투표구명 [제2투표구] 시작점재번호 [1] 종료번호 [1] 주소입력방법 [주소번호(정원내부)] 투표장소주소 [제2투표구] 주소번호 [1]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3. 투표구간
 투표구간 [일련번호] 범위 [] 범(부터) [] 범(까지) [] 범(부터) [] 범(까지) []
 투표구간 추가 [③] 투표구간 수정 투표구간 삭제

자료생성 전송등
 선거권없는자 등록 제도개선 보고 제도개선제작자 조회 투표구간선택자 조회 1.기초사항 조회 2.수정 3.삭제 투표구간 투표구간 ? 도움말

- 투표구 입력이 끝났으면 투표구간을 입력한다.
- 투표구사항에서 해당 투표구를 선택 한 후 투표구간의 “추가” 버튼을 누른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2

선거/선거인파일작성(EQCL21000W)

선 거 구 분 [0006-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6-10-26] 기록 조회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명 [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6-10-26] 기록 청년불발 [1996-10-26] 외국인 [포함]
 선거구명 [의정부 관계구] 학설기준일자 [2016-10-01] 선거시간 오전 [시 부터] 오후 [시 끝자]

2. 투표구사항
 투표구명 [제1투표구] 시작점재번호 [1] 종료번호 [1] 주소입력방법 [주소번호(정원내부)] 투표장소주소 [제1투표구] 주소번호 [1]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투표구명 [제2투표구] 시작점재번호 [1] 종료번호 [1] 주소입력방법 [주소번호(정원내부)] 투표장소주소 [제2투표구] 주소번호 [1]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품번 [1] 경감날도 [정원내부]

3. 투표구간
 투표구간 [일련번호] 범위 [] 범(부터) [] 범(까지) [] 범(부터) [] 범(까지) []
 투표구간 추가 [④] 투표구간 수정 투표구간 삭제

자료생성 전송등
 선거권없는자 등록 제도개선 보고 제도개선제작자 조회 투표구간선택자 조회 1.기초사항 조회 2.수정 3.삭제 투표구간 투표구간 ? 도움말

- 투표구에 해당하는 법정동을 선택한다. 선택한 법정동의 시작 품/반, 종료 품/반을 입력한다.
- 시작 품/반을 입력할 때, 반이 입력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을 입력하지 않는다.
-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사항을 저장하고, 다음 투표구간을 반복하여 입력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간 입력3

번호	설명	내용
1	투표구번호	1 2 3 4 5 6 7 8 9
2	투표구명	제1우표구 제2우표구
3	시작점정번호	1 2 3 4 5 6 7 8 9
4	투표장소	구동포로 123 구동포로 124 구동포로 125
5	주소설정번호	1 2 3 4 5 6 7 8 9
6	투표장소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3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4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5

※ 투표구간은 100% 표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설정 가능합니다.

○ 해당 투표구를 선택하면 선택한 투표구의 투표구간을 볼 수 있다.

○ 투표구간 입력 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한다.

1. 반이 지정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범위의 반(부터)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비워놓는다.
2. 둘이 없는 세대가 있는 경우는 시작 끝 범위에 0을 입력하면 둘이 없는 세대가 모두 포함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투표구사항 수정

번호	설명	내용
1	투표구번호	1 2 3
2	투표구명	제1우표구 제2우표구
3	시작점정번호	1 2 3 4 5 6 7 8 9
4	투표장소	구동포로 123 구동포로 124 구동포로 125
5	주소설정번호	1 2 3 4 5 6 7 8 9
6	투표장소주소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3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4 경기도 화성시 향사동 125

※ 투표장소 변경 시에는 투표구사항 관의 "수정" 버튼으로 해당 투표구의 투표장소를 수정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작성기준일 수정 방법

○ 예비명부를 "2015-10-01"에 작성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기준일자가 "2015-10-01"로 조회가 된다.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명	김보길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생년월일	1966-10-29	외국인	포함
선거구명	의정구 선거구	작성기준일자	2015-10-01	선거시간	오전 06 시 부터	오후 08 시 까지	

○ 작성기준일자를 본 일부작성일인 "2015-10-06"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1. 선거기초사항

선 거 명	김보길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생년월일	1966-10-29	외국인	포함
선거구명	의정구 선거구	작성기준일자	2015-10-06	선거시간	오전 06 시 부터	오후 08 시 까지	

○ 아래 그림에 있는 "1.수정"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내용을 수정한다.

1-2. 기초사항 제작

1. 선거권없는자 등록 2. 선거인 결집 3. 선거인등록자 조회 4. 1.기초사항 제작 *1.수정 5. 삭제 6. 종료 7. 도움말

○ 반드시 "예"를 눌러서 수정한다.

질문 [RSRX00003]

선거기초사항을(을) 수정 하시겠습니까?
예(Y) 아니오(N)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권없는자 선거인 선택

1. 선거기초사항

선 거 구조	0006-김보길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생년월일	1966-10-29	외국인	포함
선 거 명	김보길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생년월일	1966-10-29	외국인	포함
선거구명	의정구 선거구	작성기준일자	2015-10-01	선거시간	오전 06 시 부터	오후 08 시 까지	

2. 투표구선택

일련번호	후보구명	시작점번호	후표장소	후보입력방법	후표장소주소
1	제1투표구	1	구름초등학교 회관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7...
2	제2투표구	1	구룡포 우민초등 1동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7...
3	제3투표구	1	구룡포 초등학교 대강당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7...

3. 투표구검색

일련번호	별정률	월(부모)	만(부모)	월(401)	만(401)
1	구룡포초등 구룡포초등	0	99	99	99
2	구룡포초등 삼정간	0	99	99	99
3	구룡포초등 서면전	0	99	99	99

4. 선거인선택

국내인
 국내거소재외국인
 선거권없는자 등록

○ 선거권 없는 자 등록을 위해 선거인을 선택한다. (혹은, [9372]선거권없는자 등록업무에서 등록함)

○ 선거권 없는 자가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는 [9310]국내거소신고재외국인등록 업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행정자치부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없는자 등록

선거인회원등록(내국인)선거권없는자등록[REGOC121001W]

이름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시군구 [1~88185用 1회용 1호]

선거권없는 대상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시군구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등록일자
1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2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3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 각 대상자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창을 띠입니다.

○ 대상자를 죽 먼저 조회하여 사용률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 선거권 없는 대상자 관에 추가한다.

○ 삭제하고자 하면 대상자 리스트에서 대상자를 선택한 후 화면 하단에서 “삭제” 버튼을 누른다.

○ 선거권 없는 대상자를 출력하고자 하면 “출력”버튼을 눌러서 출력한다.

행정자치부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없는자 출력

선거인회원등록(내국인)선거권없는자등록[REGOC121001W]

이름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시군구

선거권없는 대상자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시군구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등록일자
1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2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3	김철수	12345678901234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69	구봉로 169	2015/10/28

* 각 대상자를 통,반 순으로 정렬하고자 할 경우, 조회 화면의 통반 타이틀을 클릭하여 재 정렬 한다.



행정자치부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없는자 명부 출력

선거권 없는자 명부(주민등록자)

항목명	구용포함			전래일자	2015-05-06	
선택구분	자보글인가			페이지	1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8	81 3	제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693-26 (3/)		

○ 주민등록자 선거권 없는 자 명부 출력의 미리보기 화면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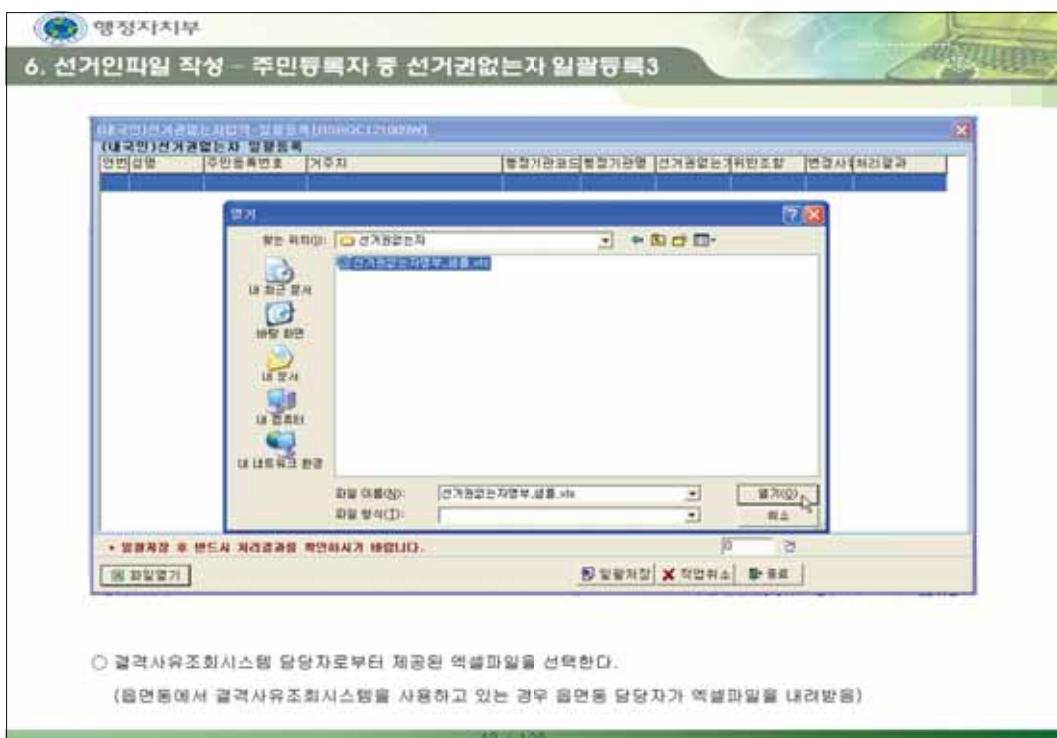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

선거인파일등록-내국인-선거권없는자별록 [HSRGCI271001W]

주민등록주소	국내거주신고자			선택일자	2015-10-08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선택]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우편주소	서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우편주소	서류																																																											
선거권없는 대상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번호</th> <th>주민등록번호</th> <th>성명</th> <th>도로명 주소</th> <th>지번 주소</th> </tr> </thead> <tbody> <tr> <td>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td> </tr> <tr> <td>이 동근 35</td> <td>제 18조제1항제1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방 철봉 41</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오 정순 46</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한 도현 41</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이 죄복 67</td> <td>제 18조제1항제3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허 철우 61</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정 현봉 64</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김 준현 69</td> <td>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이 금호 69</td> <td>제 18조제1항제1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권 도경 65</td> <td>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권 풍동 65</td> <td>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화 청도 65</td> <td>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안 송우 65</td> <td>제 18조제1항제2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이 호건 67</td> <td>제 18조제1항제1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이 전복 61</td> <td>제 18조제1항제1호</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r> <td>김 도현 65</td> <td>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d>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td> </tr> </tbody> </table>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	이 동근 35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방 철봉 4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오 정순 46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도현 4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죄복 67	제 18조제1항제3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허 철우 6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 현봉 64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김 준현 69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금호 69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권 도경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권 풍동 65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화 청도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안 송우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호건 67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전복 61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김 도현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																																																												
이 동근 35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방 철봉 4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오 정순 46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도현 4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죄복 67	제 18조제1항제3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허 철우 61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정 현봉 64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김 준현 69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금호 69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권 도경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권 풍동 65	제 18조제1항제4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화 청도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안 송우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호건 67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 전복 61	제 18조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김 도현 65	제 18조제1항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경로에 됩니다.

○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 시에는 기존자료를 모두 삭제 후에만 가능하므로, “전체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모두 삭제 후 수행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4

연번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발행기관과별등록기관별	선거권없는자위반조회	변경사항처리결과
1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천별리 1-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28 제1항제1호	추가	
2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리 2-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2-28 제1항제1호	추가	
3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6-17 제1항제2호	추가	
4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3-05 제1항제2호	추가	
5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3-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1-05 제1항제4호	추가	
6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리 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20 제1항제1호	추가	
7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리 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11-04 제1항제1호	추가	
8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리 12-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5-27 제1항제2호	변동업	
9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1-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9-18 제1항제2호	추가	
10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4-14 제1항제1호	추가	
11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88-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2-20 제1항제2호	추가	
12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1-03 제1항제2호	추가	
13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6-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10-08 제1항제2호	추가	
14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68-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2-12 제1항제2호	변동업	
15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6-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4-29 제1항제4호	변동업	
16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0-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4-06-23 제1항제1호	변동업	
17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0-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4-06 제1항제2호	변동업	
18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1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05 제1항제1호	변동업	
19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1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1-25 제1항제2호	변동업	
20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4-09-15 제1항제1호	추가	

* 등록자장 후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닫기] [등록자장] [작업취소] [종료]

○ 역설파일의 내용과 그리드의 내용이 같은지 확인한다.
 ○ “변경사유”가 “신규”, “추가”, “변동없음”만 등록되어 “삭제”는 처리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주민등록자 선거권없는자 일괄등록5

연번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발행기관과별등록기관별	선거권없는자위반조회	변경사항처리결과
1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천별리 1-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28 제1항제1호	추가	
2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리 2-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2-28 제1항제1호	변경자판	
3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6-17 제1항제2호	추가	
4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3-05 제1항제2호	추가	
5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청길리 3-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1-05 제1항제4호	추가	
6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리 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20 제1항제1호	추가	
7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갈리 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11-04 제1항제1호	변동업	
8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2-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5-27 제1항제2호	변동업	
9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5-27 제1항제2호	변동업	
10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4-14 제1항제1호	추가	
11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88-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2-20 제1항제2호	추가	
12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11-03 제1항제2호	변경자판	
13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6-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10-08 제1항제2호	추가	
14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68-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2-12 제1항제2호	변동업	
15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46-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3-04-29 제1항제1호	변경자판	
16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30-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4-06-23 제1항제1호	변동업	
17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0-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4-06 제1항제2호	변동업	
18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14-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2-07-05 제1항제1호	변동업	
19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15-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1-01-25 제1항제2호	변동업	
20	1234567890123456789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봉리 4711125000	포항시 남구 2014-09-15 제1항제1호	추가	

* 등록자장 후 반드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닫기] [등록자장] [작업취소] [종료]

○ 한 사람이 위반조형이 다르게 2건 이상 존재하는 경우, 처음 건으로 입력되고 다른 건들은 처리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 처리된 것이다.
 ○ 처리결과가 “타행정기관자료”, “입력오류”, “행정기관코드오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건별로 입력한다.



행정자치부

6. 선거인파일 작성 - 국내거소신고자 중 선거권없는자 등록

선거인등록본부-(재외국민)선거권법-자민부(HSROCI21000W)

이름[입력]	거소신고번호[입력]	[+] 조회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길 10번길 12-3 (77)]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길 10번길 12-3 (77)]		
사용 [1~제10회 제1항 제1호] [제10회 제1항 제1호]		
선거권없는 대상자 -> 18세 미만자 -> 2018년 1월 1일 기준 -> 이동 거소신고 4회 이상 10회 제1항 제1호		
이름	거소신고번호	도로명 주소
자번 주소		

* 각 태이틀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점들어집니다.

[+] 관계자계 | [+] 추가 | [+] 삭제 | [+] 출국 | [+] 출입

○ 대상자의 성명과 거소신고번호를 모두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이때, 등록하는 선거권 없는 자는 [9310]국내거소신고자등록 업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처리 방법은 주민등록자 중 선거권 없는 자와 동일하다.

17 / 125

행정자치부

6. 선거인파일 작성 - 국내거소신고자 중 선거권없는자 명부 출력

선거권 없는 자 명부 (국내거소신고자)

발장기관 : 구봉로동
선거구분 : 재보궐선거

등록일자 : 2014-09-16
등록자 : 1

이름	거소신고번호	시	읍	우	소
이	2	1	제10회 제1항 제1호	정부	동 2호

○ 국내거소신고자의 선거권 없는 자 명부 출력의 미리보기 화면

17 / 125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

번호	주민번호	시작등록번호	종료번호	등록자	등록일자
1	제1투표구	1	구용호, 마을 회관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2	제1투표구	1	구용호 주민센터 1층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3	제1투표구	1	구용호 소통학교 대강당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3. 투표구간

번호	방법	별(부)	반(부)	총(부지)	총(부지)
1	구용호-별도(기)	0	0	99	99
2	구용호-반동(기)	0	0	99	99
3	구용호-통대(기)	0	0	99	99

선거인명부-설정에서

- 법정동+통반**
- 선거인생성
- 통반
- 통계

자료변경 전송

□ 선거권없는자 등록 | □ 선거인 생보 | □ 선거인정부 등록 | □ 선거인정부 등보 | □ 기초사항 저정 | □ 수정 | □ 삭제 | □ 통보 | ? 도움말

(1) 125

- 화면 하단의 “선거인생성” 버튼을 클릭한다.
- “선거인생성”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활성화 된다.
- 선거인명부의 생성순서(법정동+통반 혹은 통반)를 선택한다.
- 법정동을 무시하고 통반 순으로 투표구별 등재번호를 생성할 경우 “통반”을 선택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2

번호	주민번호	시작등록번호	종료번호	등록자	등록일자
1	제1투표구	1	구용호, 마을 회관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2	제1투표구	1	구용호 주민센터 1층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3	제1투표구	1	구용호 소통학교 대강당	동반	경상북도 문경시 7-

3. 투표구간

번호	방법	별(부)	반(부)	총(부지)	총(부지)
1	구용호-별도(기)	0	0	99	99
2	구용호-반동(기)	0	0	99	99
3	구용호-통대(기)	0	0	99	99

선거인명부-설정에서

금일자 관내현황을 먼저 작성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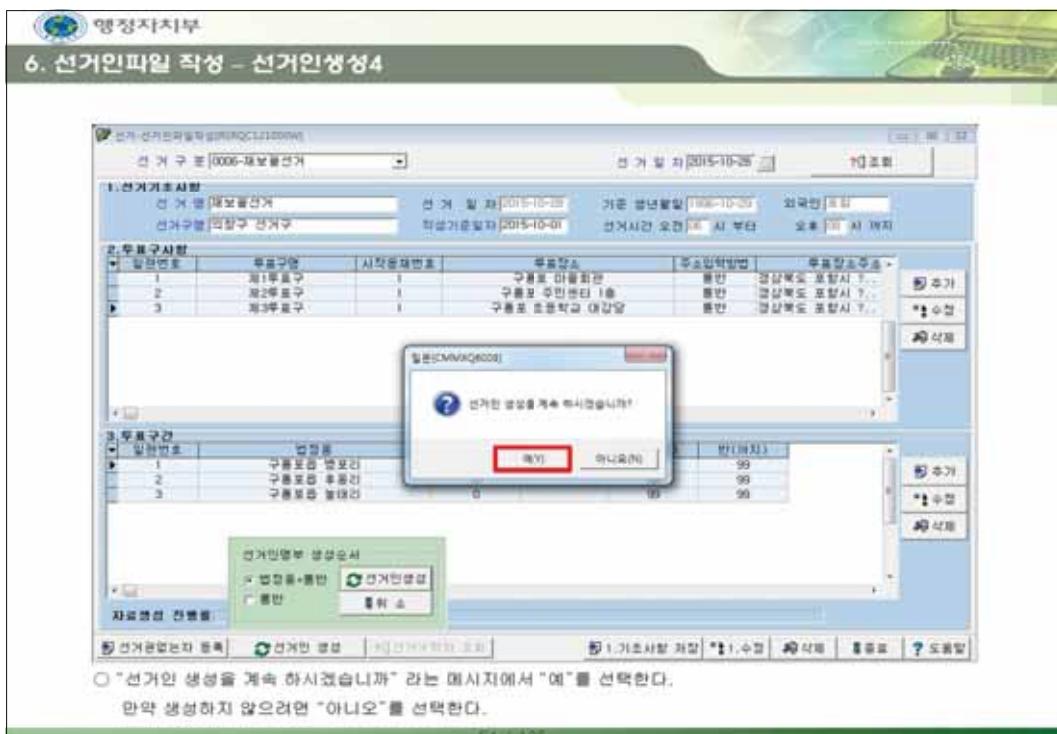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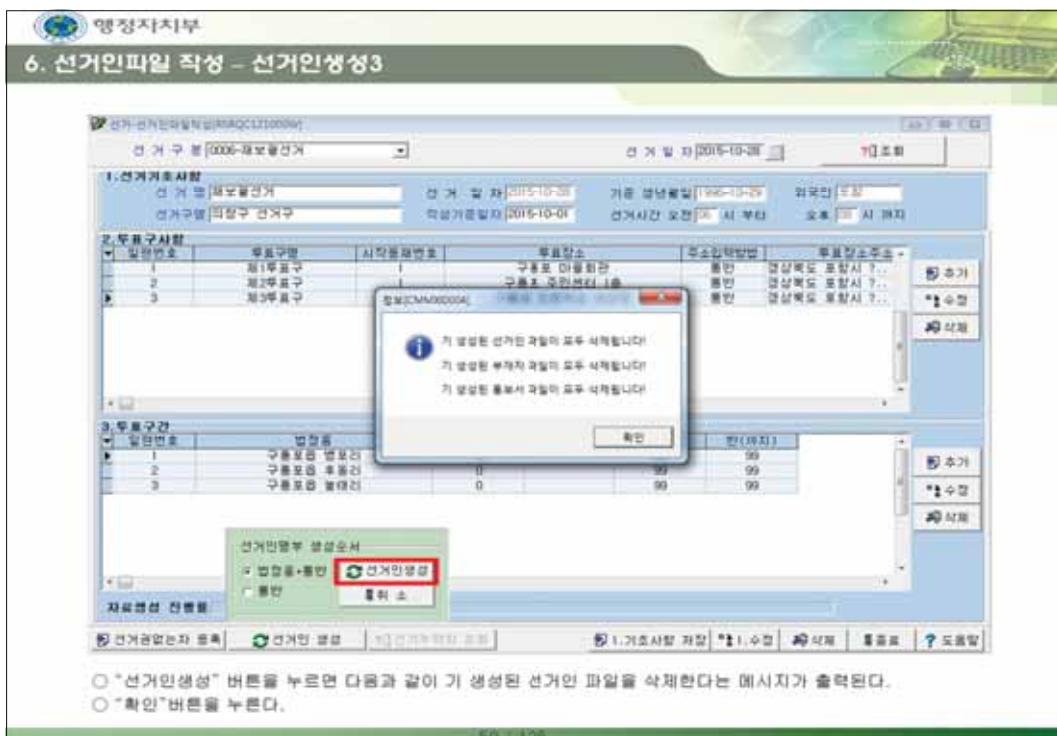
OK

자료변경 전송

□ 선거권없는자 등록 | □ 선거인 생보 | □ 선거인정부 등록 | □ 선거인정부 등보 | □ 기초사항 저정 | □ 수정 | □ 삭제 | □ 통보 | ? 도움말

(1) 125

- “선거인생성” 버튼을 누른다.
- 만약 당일 관내현황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관내현황을 먼저 작성하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 이럴 경우 [5410] 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성”버튼을 클릭한 후 선거인생성 작업을 다시 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이 멈춤

번호	주소번호	우편구역	시작점재번호	종점장소	주소입력방법	우편장소주소
1	제1우편구	1		구룡포 마을회관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2	제2우편구	1		구룡포 주민센터 1층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3	제3우편구	1		구룡포 초등학교 대강당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근동통신관리시스템
선거인명부작성하는 절차로 프로그램을 간단화하거나 PC를 최적화하지 마십시오.

2. 우편구간

번호	구간명	별점(%)	면수(%)	면수(%)	면수(%)
1	구룡포읍 대포리	0	99	99	99
2	구룡포읍 후동리	0	99	99	99
3	구룡포읍 봉내리	0	99	99	99

선거인명부: 생활온라인
• 법정동+통번
• 통번
■ 험수

■ 선거권없는자 등록 | ○ 선거인 정보 | ④ 선거부여여부 조회 | ■ 1.기초사항 처리 | ■ 1.수정 | ■ 삭제 | ■ 종료 | ? 도움말

- 선거인생성이 뒤와 같이 화면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군구 서버에서 작업중으로 화면상에서만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잠시 기다리면 다음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절대 PC를 자 부팅하거나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면 안 된다.
- 작업을 강제 종료하거나 작업PC의 전원을 고는 경우 해당 시군구 서버에 영향을 주어 작업시간이 더욱 느려질 수 있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누락자조치 메시지

번호	주소번호	우편구역	시작점재번호	종점장소	주소입력방법	우편장소주소
1	제1우편구	1		구룡포 마을회관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2	제2우편구	1		구룡포 주민센터 1층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3	제3우편구	1		구룡포 초등학교 대강당	통번	경상북도 포항시 7...

정보ID:MMR00004
선거인 명부에 누락자가 존재합니다!
최종으로 선거부여자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권없는자 등록 | ○ 선거인 정보 | ④ 선거부여여부 조회 | ■ 1.기초사항 처리 | ■ 1.수정 | ■ 삭제 | ■ 종료 | ? 도움말

- 반드시 누락자를 모두 조치한 후에 선거인생성을 버튼을 눌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누락자를 조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는 “[9312]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에 인구수가 맞지 않는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누락자 조회

| 선택구역 | 구별구역 |
|-------|------|------|------|------|------|------|------|
| 제1부표구 | 구별포함 |
| 제2부표구 | 구별포함 |
| 제3부표구 | 구별포함 |

3. 투표구간

선택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기초누락자 조회]

- 누락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거누락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어 대상자를 조회 후 조치한다.
- 누락자가 없이 완벽하게 선거인 명부가 생성된 경우에는 “선거누락자 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 누락자 조회

| 선택구역 | 구별구역 |
|-------|------|------|------|------|------|------|------|
| 제1부표구 | 구별포함 |
| 제2부표구 | 구별포함 |
| 제3부표구 | 구별포함 |

3. 투표구간

선택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구역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구별포함

[기초누락자 조회]

- 누락자유는 투표구간에서 누락되었거나 오류 품을 입력한 세대 등이 대부분이다.
-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여 투표구간 인력을 종료한다.
- 주민등록자인 경우 누락 세대의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관리->직권경리->[5312]세대현주소정리” 업무에서 통합 수정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는 [9310]국내거소신고자등록 업무에서 수정한다.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의 원료1

선거·선거인과정작업[0006-00000000]		선 거 구 분 [0006-제보율선거]	선 거 일 자 [2015-10-28]	7 [초회]			
1. 선거개조사항		선 거 명 [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경년별일 [100-10-28] 외국인 [X]			
		선거구역 [대전구 선거구]	학술기증일자 [2015-10-01]	선거시간 오전 [X] 시 부터 오후 [X] 시 끝내			
2. 투표구선택		일련번호	투표구명	시작점재번호	총표장소	주소입력방법	총표장소주소
		1	제1투표구	1	구동포로	동반	구동포로 구동포로
		2	제2투표구	1	자진마을 1동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T...
		3	제3투표구	1	구동포로 청학교 대강당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T...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정보[CMW000001] 선거인등록 차트 정보가 이미 첨부되었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3. 투표구검색		일련번호	법정동	면동	반 [883]	면 [883]	
		1	구동포로	법정동	99	99	
		2	구동포로 주동리	면동	99	99	
		3	구동포로 날내리	면동	99	99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자료변경 전체보기					
선거금없는자 목록 선거인 검색 [기초사항] 초기화 수정 삭제 종료 도움말		1. 기초사항 처리 2. 수정 3. 삭제 종료 도움말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선거인명부 생성이 완료된 것이다.

1. 누락자가 없을 것 ("선거누락자 조회" 버튼 활성화)
2. 자료생성 진행률 표시가 모두 끝까지 갈 것
3. 생성 중에 어떤 오류메시지도 표시되지 않을 것

6. 선거인파일 작성 - 선거인생성의 원료2

선거·선거인과정작업[0006-00000000]		선 거 구 분 [0006-제보율선거]	선 거 일 자 [2015-10-28]	7 [초회]			
1. 선거개조사항		선 거 명 [제보율선거]	선 거 일자 [2015-10-28]	기준 경년별일 [100-10-28] 외국인 [X]			
		선거구역 [대전구 선거구]	학술기증일자 [2015-10-01]	선거시간 오전 [X] 시 부터 오후 [X] 시 끝내			
2. 투표구선택		일련번호	투표구명	시작점재번호	총표장소	주소입력방법	총표장소주소
		1	제1투표구	1	구동포로 마을회관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T...
		2	제2투표구	1	구동포로 주민센터 1층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T...
		3	제3투표구	1	구동포로 청학교 대강당	동반	경상북도 포항시 T...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주간총동록관리시스템 선거인등록 차트 정보가 이미 첨부되었습니다. <input type="button" value="OK"/>					
3. 투표구검색		일련번호	법정동	면동	반 [883]	면 [883]	
		1	구동포로 법정동	면동	99	99	
		2	구동포로 주동리	면동	99	99	
		3	구동포로 날내리	면동	99	99	
		<input type="button" value="추가"/> <input type="button" value="수정"/>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선거금없는자 목록 선거인 검색 [기초사항] 초기화 수정 삭제 종료 도움말		1. 기초사항 처리 2. 수정 3. 삭제 종료 도움말					

○ 선거인명부 생성 완료 후에는 [9312]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은 읍면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 당당자가 RIUS(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업무에서 명부작성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7.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조회

선거구별 [0000-재보궐선거]		선거일자 [2015-10-28]		작성	
선거개최사항		선거구별 [기초의회선거]			
선거명 [재보궐선거]		선거구별 [기초의회선거]			
부록구별통계내역					
부록구별	내/외국인	인구수 전체	정부별 총재원	선거인수 제	인구수별대체 선거인비율
남	여	세대수			
* 경남회계청은 출입구 등을 감찰석체로 분석하는 출입구수기 활용이 됩니다.					
누락자여부 [] 인구수동일여부 []					
[총괄통계내역] [총인구수] [구] [기초생활권] [선거구별주민등록번호]					
[제작] [수정] [화면] [도움말]					

- 선거구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표시되고 “작성” 버튼을 누른다.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기준의 기타통보서(선거인연령별현황)도 함께 일괄 작성된다.

7.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작성

선거구별 [0000-재보궐선거]		선거일자 [2015-10-28]		작성	
선거개최사항		선거구별 [기초의회선거]			
선거명 [재보궐선거]		선거구별 [기초의회선거]			
부록구별통계내역					
부록구별	내/외국인	인구수 전체	정부별 총재원	선거인수 제	인구수별대체 선거인비율
남	여	세대수			
제 1 부표구	주민등록자 5,670	2,669	2,760	5,329	97.22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제 2 부표구	주민등록자 6,670	3,900	2,771	6,235	92.51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제 3 부표구	주민등록자 8,199	0	945	1,909	90.53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제 4 부표구	주민등록자 2,427	1,184	1,289	2,279	93.74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제 5 부표구	주민등록자 2,423	1,184	1,091	2,279	90.74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제 6 부표구	주민등록자 10,226	4,843	4,700	9,439	97.22
국내거소신고자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소계 10,226	4,843	4,700	9,439	97.22	96.12%
* 경남회계청은 출입구 등을 감찰석체로 분석하는 출입구수기 활용이 됩니다.					
누락자여부 [] 인구수동일여부 []					
[총괄통계내역] [총인구수] [구] [기초생활권] [선거구별주민등록번호]					
[제작] [수정] [화면] [도움말]					

- “누락자여부”와 “인구수동일여부”를 확인한다.(관내현황의 세대수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비교할 필요없음)
 - 누락자가 존재할 경우 : 선거인생성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누락자 조치 후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한다.
 - 인구수동일여부가 “불일치”일 경우 : ① 또는 ②로 조치
 - ① [5410]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성”버튼을 눌러 관내현황을 재작성 한후 선거인생성을 재작성한다.
 - ② [9355]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의 법정동별통번 현황을 확인한 후 투표구간을 확인하여 선거인생성을 재 작성한다.
- 시,군,구 당당자는 “전체읍면동선거인명부작성상황조회” 버튼을 이용하여 관할 읍,면,동의 명부작성상황을 일괄 점검 한다. 또한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_외국인포함에서 작성상황집계가 가능하다.



행정자치부

7.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관내현황 인구수비교

관내현황 자료는 관내현황 계획집(KRBC912000000)

작성기준일: 2015-06-30

관내현황		인구수비교	
행정동(리)	32 개동(리)	반 수	70 개반
법정동(리)	10 개동(리)	면적	km
총 남자인구수	5,266 명	총 세대수	5,225 세대
총 여자인구수	4,963 명	총 인구수	10,239 명
거주자			
총 남자인구수	4,710 명	총 세대수	4,592 세대
총 여자인구수	4,441 명	총 인구수	9,151 명
거주불연자			
총 남자인구수	52 명	총 세대수	91 세대
총 여자인구수	46 명	총 인구수	98 명
재외국민 거주불연자			
총 남자인구수	421 명	총 세대수	433 세대
총 여자인구수	401 명	총 인구수	822 명
재외국민 거주불연자			
총 남자인구수	23 명	총 세대수	35 세대
총 여자인구수	29 명	총 인구수	52 명
재외국민 출국자			
총 남자인구수	60 명	총 세대수	74 세대
총 여자인구수	52 명	총 인구수	112 명

▶ 목록 | 도움말

- 총인구수 : 거주자 + 거주불연자 + 재외국민거주자 + 재외국민거주불연자 + 재외국민출국자
- 선거의 각종 통보서에서 주민등록자의 인구수는 관내현황 상단의 총 인구수와 같다.

행정자치부

7.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출력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선거구명 : 구룡포 선거구
별경기관 : 남구 구룡포읍

페이지 : 1

투표구명	인구수 (2014년 06월 16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따른 선거인수비율 (%)	세대수	배고
		남	여	계			
제 1 투표구	8,018 (0 / 0)	2,776 (0 / 0)	2,708 (0 / 0)	5,484 (0 / 0)	91.18 (0 / 0)	2,906 (0 / 0)	
제 2 투표구	2,166 (0 / 0)	1,025 (0 / 0)	1,009 (0 / 0)	2,034 (0 / 0)	93.95 (0 / 0)	1,124 (0 / 0)	
제 3 투표구	2,074 (0 / 0)	994 (0 / 0)	895 (0 / 0)	1,889 (0 / 0)	91.08 (0 / 0)	1,033 (0 / 0)	
합 계	10,255 (0 / 0)	4,795 (0 / 0)	4,612 (0 / 0)	9,407 (0 / 0)	91.73 (0 / 0)	5,063 (0 / 0)	

○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를 출력한다.

○ 뒷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국내거소선거수 / 외국인수)로 표기됨



8.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 조회1

선거구분 [0006-재보궐선거] | 선거일자 [2015-10-28] | 조회번호 [정체] | 조회 [조회]

선거인명부									
[] 투표구별	[] 투표구명	[] 투표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조회건수	[] 투표
<input type="checkbox"/> 투표로 폐이자증리하여 출력하기 <input type="checkbox"/> 출선훈동-기타증보서 출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거구분을 "0006-재보궐선거"로 선택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선행위에 시작투표구, 종료투표구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선거인명부가 조회된다.									

8. 선거인명부 출력 - 선거인명부 조회2

선거구분 [0006-재보궐선거] | 선거일자 [2015-10-28] | 조회번호 [정체] | 조회 [조회]

선거인명부									
[] 투표구별	[] 투표구명	[] 투표번호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세대주	[]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 조회건수	[] 투표
<input type="checkbox"/> 투표로 폐이자증리하여 출력하기 <input type="checkbox"/> 출선훈동-기타증보서 출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명부 자료가 화면에 조회되고 "연속증지 출력" 버튼과 "A4용지 출력" 버튼이 활성화 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 별로 페이지를 나누어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별로 폐이자증리하여 출력하기" 체크박스를 체크한다.									



행정자치부

8. 선거인명부 출력 - A4용지 출력

100% Page 1 of 478

등록번호	주 소	성 별	생 년 월 일	성 명	부모등록수정여부 (가) (나)		부 고
					(가)	(나)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88-09-25	김아름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7-08-15	김민정			
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7-05-15	김도진			
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86-09-01	김수진			
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88-12-24	김희정			
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86-09-01	나경원			
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1-01-15	김민수			
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5-01-25	김민서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3-09-05	김민숙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리 111	여	1993-08-15	김민정			

100% Page 1 of 478

-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으로 도로명 주소만 표기된다.(단 도로명 주소가 없을 시 지번주소 표기)
- 상단의 프린터(출력) 아이콘을 이용하여 출력한다.(한 페이지에 10명씩 인쇄)
- 하단의 %와 Page 1 of 478 는 출력할 페이지를 의미한다. 화면 맨 하단 표측의 %가 100%까지 진행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행정자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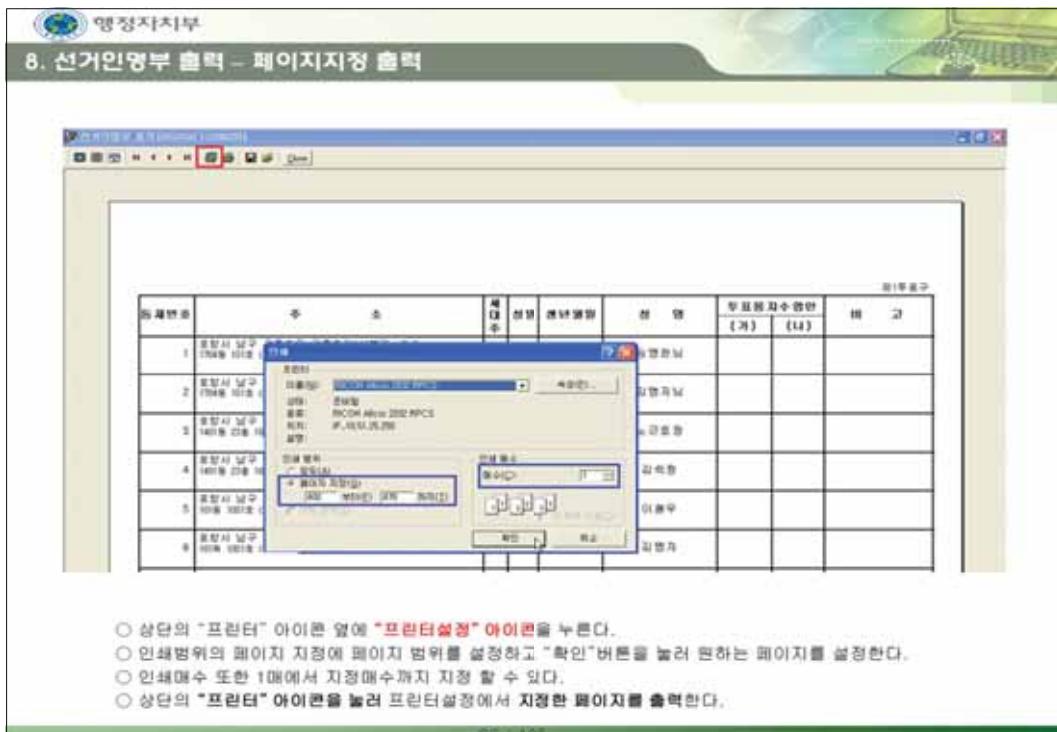
8. 선거인명부 출력 - A4용지 출력

100% Page 1 of 478

등록번호	주 소	성 별	생 년 월 일	성 명	부모등록수정여부 (가) (나)		부 고
					(가)	(나)	
1,029	포항시 남구 수봉로 100-1	여	1	박민수			김민정
1,030	포항시 남구 수봉로 100-1	여	1	김현정			김민정, 김민수
1,031	포항시 남구 수봉로 100-1	여	1	M LEE			김민정, 김민수, 김민희
1,032	포항시 남구 수봉로 100-1	여	1	김민희			김민정, 김민수, 김민희
1,033	포항시 남구 수봉로 100-1	여	1	김민정			김민정, 김민수, 김민희(부모부자)
1,034		여	1	김경수			김민정(부모부자)

100% Page 1 of 478

- 주민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순으로 출력된다.





9. 참조 – RIUS.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작성상을 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아니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 선관위제출용 파일생성 기능 추가

-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에서 집계 및 출력 가능하다.
- 미전송기관과 재전송기관이 조회되지 않아야 한다.
- [보고서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작성상황통보서를 작성한다.
- 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또는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엑셀파일 생성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엑셀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

9. 참조 – RIUS.선거인명부 작성상황통보서

○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40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에서 선거구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 선구구분코드는 해당 선거명을 선택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이지만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회의원' 경우 '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의원' 경우 '광역의회의원선거'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 선거구코드는 해당 시군구에 해당되는 선거구를 선택한다.



9. 참조 – RIUS_기타통보서 출력 (작성상황)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응답증이 작성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작성상황을 선택한다.

○ 외국인 포함 또는 미포함 출력 가능하다. 외국인 포함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 RIUS -> 통계 -> 300 선거관련보고 -> 370 선거인명부기타통보서에서 기타통보서 접속, 출력 가능하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지 않아야 한다.

○ [실행]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또는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엑셀파일 생성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엑셀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지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6자리)+성별(1자리)*'000000'로 입력하여 접수처리 하며 신고요건구비여부는 미구비로 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

선거구분 [0006-제보율선거] 선거일자 [2015-10-26] 주민등록번호 [300-***-****] 거주불합기원본 조회

선거인상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종별 []
세대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포항시 남구 구봉로길 107] 주민등록번호 []
지번주소 [] 주민등록번호 []
복수주소 [] 주민등록번호 [] 거주주소 []
선거구명 [기초의정구] 부적구 음재면 1001AS

거소투표사함
접수일자 [2014-06-13]
※ 도로명주소변경도로명을 입력한 후 경계점에서 행정동변경을 선택하여 조회한
거소도로명주소[포항시 남구 구봉로길 107] 주민등록번호 []
거소지번주소 [] 주민등록번호 []
복수주소 [] 주민등록번호 [] 거주주소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거소투표신고서류 [] 거소투표여부 [] 미구비자료 []

선택 []

- 대상자를 조회하면 투표인 사항이 조회되고 거소투표사함을 입력한다.
- 거소투표여부는 “1.예”로 자동 출력된다.
- 거소주소가 현주소와 같을 경우 현주소를 거소주소에 자동으로 입력시킬 수 있다. 거소주소가 다를 경우 직접 입력한다.
- 우편번호는 접수된 내역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접수내역에 없을 경우는 도로명주소에서 검색해서 입력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도로명주소)

선거구분 [0006-제보율선거] 선거일자 [2015-10-26] 주민등록번호 [300-***-****] 거주불합기원본 조회

행정기관명 [감서구]
도로명주소 []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도로 []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도로명도로 []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행정동주소검색-행정동주소 조회(E000000000000000)
구 분 [] 행정동코드 [] 시도명 [] 시군구명 [] 읍면동명 []

행정동주소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115005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증산동
1150051000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1150051000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2동
1150051000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11500510004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4동
115005100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5동
1150051000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150051000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7동
1150051000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150051000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9동
115005100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0동

도로명주소 [] (구분 : F21) 확인 취소(E00)

- 거소투표신고자의 도로명주소를 입력 시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 입력을 하면 도로명 주소를 조회하는 화면이 나온다.
-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엔터키 입력을 하면 행정동주소 검색 화면창이 나오고 해당 행정기관을 선택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입력2(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시군구	법정동	우편번호
115004146176	광주시	내발산동	59170
115004146177	광주시	내발산동	59170
115004146178	광주시	내발산동	59170
115004146184	광주시	내발산동	59170

○ 행정기관명을 입력 후 도로명으로 검색으로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입력한 도로명으로 검색 한다.
○ 도로명주소 선택 후 지하구분/번번/부번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 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거소주소 입력

법정동주소-법정동주소 코드	법정동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번역
115004146176	115004146176	전라남도	광주시	내발산동	내발산동
115004146177	115004146177	전라남도	광주시	내발산동	내발산동
115004146178	115004146178	전라남도	광주시	내발산동	내발산동
115004146184	115004146184	전라남도	광주시	내발산동	내발산동

○ 거소주소를 직접 입력 시 거소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반드시 법정동 주소 입력창에서 선택하여 입력한다.
(입력란에서 영문 일부만 입력하거나 마우스 클릭 후 엔터키를 누르면 별도창이 활성화되어 선택할 수 있다)
○ 전화번호, 거소투표신고자유, 산고요건구비여부 사항을 입력한다.
○ 신고요건구비여부가 “아니오”일 경우에는 미구비사유를 입력한다.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등록

등록번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0000Q0000000]

국민등록번호	선거구분 [0006-광복을선거]	선거일자 [2015-10-26]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	거주행정기관명 조회	
세대주성별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	세대주성별	[여]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광복시 남구 구봉로 150]	우편번호	우편번호 [110-111]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지번주소	지번주소 [광복시 남구 구봉로 150]	선택번호	선택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선거구별	선거구별 [광복]	등록번호	등록번호 [0000Q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거소투표신청일자	접수일자 [2014-06-13]	거소투표 신청을(를) 등록 하시겠습니까?	예(으)	아니오(으)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거소주소	거소주소 [광복시 남구 구봉로 150]	우편번호	우편번호 [110-111]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거소도로명주소	거소도로명주소 [광복시 남구 구봉로 150]	선택번호	선택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거소지번주소	거소지번주소 [49111285314]	우편번호	우편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거소주소	거소주소 [광복시 남구 구봉로 150]	선택번호	선택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우편번호	우편번호 [00000]	선택번호	선택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우편번호	우편번호 [00000]	선택번호	선택번호 [00000]	기본주소	기본주소 [00000]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비거주등재자"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p>본명부 작성일(10월 6일)에 명부생성 시 명부에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을 참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9세 미만(생년월일이 1996년 10월 29일 이후)인자 2) 선거권없는자 3) 본 명부 작성일 (10월 6일) 이후 전입자 <p>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거소투표접수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우편물을 반송한 경우 제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에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 등록해야 한다. (유효한 거소투표로 처리되지 않음)</p>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1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비거주등재자"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본명부 작성일(10월 6일)에 명부생성 시 명부에서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을 참조한다.

- 1) 만19세 미만(생년월일이 1996년 10월 29일 이후)인자
- 2) 선거권없는자
- 3) 본 명부 작성일 (10월 6일) 이후 전입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라도 거소투표접수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우편물을 반송한 경우 제외),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에서 신고서 내용 그대로 등록해야 한다.
(유효한 거소투표로 처리되지 않음)



10.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 주의사항2

☞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시 선거인명부에 미 등재된 자 입력하는 방법

선거인파일 작성기준일 이전에 말소된 대상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가 안된 상태에서 거소투표 신고접수를 하였을 경우 (단,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말소자인 경우로 가정하여)

- 1) 작성기준일자의 주소지에서 재등록 하도록 한다.
- 2) [9341.선거인명부 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 작업을 선택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 시킨다.
이때, 거소투표신고서를 이미 접수했으면 선거인명부 등재 전 입력한 거소투표신고서 내역을 먼저 삭제한다.
- 3) 본 명부 작성시 출력한 선거인 명부에 수기로 등재 시킨다.
- 4) [9321.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업무에서 거소투표 신고내역을 입력한다.
- 5) 거소투표 입력 마감 후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업무에서 “작성” 버튼을 이용하여 통보서를 재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만 작성토록 한다.**
재 작성하지 않으면 각종 통보서(거소투표명부확정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통보서)에 선거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1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조회

선택-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040011300004]

선거구분	0006-재보궐선거	시작접수일자	2015-02-01	종료접수일자	2015-02-08	조회
선거일자	2015-10-28					
1. 조회시 투표구+등재번호+검명과 2. 조회한 후 검명방법: 검명과자하는 항목의 태이틀 글자						
거소투표접수부						
접수번호	접수일자	투표구	등재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도로명주소
1	2015-02-27	2 투표구	000144	301	9746 C	조합시 남
2	2015-02-27	2 투표구	000145	301	9756 C	조합시 남
3	2015-02-27	2 투표구	000147	881	9721 S	조합시 남
4	2015-02-27	2 투표구	000148	881	9721 S	조합시 남

○ 선거구분을 선택한다.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시작접수일자는 해당월의 1일이고 종료접수일자는 해당월의 마지막 일자가 기본으로 표시된다.
 접수일자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해당일자를 변경한다.
 ○ “조회”버튼을 눌러 해당 접수 내역을 조회한다.



행정자치부

1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출력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부

행정기관 : 구룡포읍				페이지 : 1
접수번호	성 명	주 소	거 소	거소투표신고 사 유 (배 고)
9322-00000000 00000000	성년불발, 성별 (우편번호) 00000-00000 00000000	포항시 구룡포읍 150-1104 (우편) 포항시 구룡포읍 150-1104 (우편) (790-804)	포항시 구룡포읍 150-1104 (우편) (010-11112345)	제작 거소투표신고

80 / 125

도로명 주소 전연시행으로 도로명 주소만 표기된다.(단 도로명 주소가 없을 시 지번주소 표기)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난다.
 A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8명씩 출력된다.

행정자치부

11.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 참고사항

☞ 부동재 거소투표 특정대상자 접수내역 확인방법

부동재거소투표자란 ?

관할동 선거인(주민등록자,국내거소신고자)이 아닌데 거소투표신고서가 접수되어 접수를 한 대상자

추후 특정 대상자 확인을 할 때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명만 알고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주로 생년월일+성별+000000)를 모르는 경우

- 1) [9322.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 업무에서 조회 후 조회결과 표의 "투표구" 타이틀을 클릭하여 투표구별로 정렬한다.
- 2) 상단에 조회되는 대상자들로 투표구와 등재번호가 공란으로 조회되는 대상자들이 "부동재거소투표자" 이므로, 특정대상자 성명이 해당자를 중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성명 앞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둔다.
- 3)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2번에서 확인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조회조건에 입력 후 조회 한다.

81 / 125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조회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록번호	이름	주민번호	현도포함주소	현지번호	현주소주소
1	000143	김	30	포항시	구봉포로	1 (14/)
2	000144	이	30	포항시	구봉포로	1 (14/)
3	000145	김	30	포항시	구봉포로	1 (14/)
4	000147	이	69	포항시	구봉포로	1 (14/)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일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출석여부, 투표구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등록된다.
*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시 마구비사유가 입력된 대상자는 접수부에는 출력되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는 출력되지 않는다.
* 또한 선거인명부 미 등재 거소투표자도 접수부에는 출력이 되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는 출력되지 않는다.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출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증명기관 : 구봉포로 투표구원 : 제2투표구		출력일자 : 2014-06-13 페이지 : 1	
등록번호	선거인명부등록번호	성명	주소
번호	거소투표신고번호	생년월일, 성별	거 소 (우편번호)
1	77	이	포항시 남구, 104 (104)
	22	196 남	포항시 남구, 104 (104) 104 (104)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A4 용지 출력만 가능하고 한 페이지에 9명씩 출력된다.



행정자치부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조회1

선거 0000-거소투표신고인명부(55AQG12800000)

선거별	정보별	선택일자	제1 투표구	제2 투표구	조회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록번호	2016-10-08			
등록번호	이름	주민번호	현도로명주소	현지법주소	현체수주소
000077	이	8	구름포읍 길동리 1104 (13/)		

* (거소투표접수내역과 송금수령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접수가 다른 경우
거소투표접수내역과 송금수령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접수내역을 조합하여 조회하십시오.)

접수내역 조회 신상거소투표접수내역 조회 거소투표접수 접수내역 조회 관할 종료 오동일

○ 화면좌측 하단의 “접수내역 조회” 버튼을 눌러서 거소투표신고사유별 접수내역을 조회한다.

행정자치부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조회2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페이지 : 1

일련번호	거소투표신고사유	건수
1	01-사전투표권 및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이나 명예를 위하여 영내 또는 해외에서 국적을 갖거나 국적을 가진 자	1
2	합계	1

○ 출력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보기 화면이 출력이 된다.



1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 접수내역건수 오류 확인

투표구명	구분	인구수 2015.07.31 현황	투표접수(투표인명부작성기간별접수현황)						작성일 거소투표신고인수	인구수별 대상인구비율 단위(%)
			남	여	제	남	여	제		
제 1 투표구	주민등록자	5,630	2,669	2,560	5,229	0	0	0	0	0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제 2 투표구	소계	5,670	2,669	2,560	5,229	0	0	0	0	0
	주민등록자	2,138	990	945	1,995	0	0	0	4	.19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제 3 투표구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소계	2,138	990	945	1,995	0	0	0	4	.19
	주민등록자	2,427	1,184	1,091	2,275	0	0	0	0	0
합 계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소계	7,827	3,164	2,990	5,275	0	0	0	4	.187
주민등록자	10,236	4,849	4,596	9,429	0	0	0	4	.039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총	10,236	4,849	4,596	9,429	0	0	0	4	.039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건수와 “거소투표신고서접수부”의 건수가 같지 않을 경우 화면 하단의 “거소투표접수점검 필요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 동일한 투표구에 대해 거소투표접수내역을 여러 번 입력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한 내역의 신고요건구분이 부기 “예”가 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으로 인정되므로 [9321]거소투표신고서접수 업무에서 최종신고내역을 선택하여 “예”로 수정한다.

1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조회

투표구명	구분	인구수 2015.07.31 현황	투표접수(투표인명부작성기간별접수현황)						작성일 거소투표신고인수	인구수별 대상인구비율 단위(%)
			남	여	제	남	여	제		
제 1 투표구	주민등록자	5,630	2,669	2,560	5,229	0	0	0	0	0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제 2 투표구	소계	5,670	2,669	2,560	5,229	0	0	0	0	0
	주민등록자	2,138	990	945	1,995	0	0	0	4	.19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제 3 투표구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소계	2,138	990	945	1,995	0	0	0	4	.19
	주민등록자	2,427	1,184	1,091	2,275	0	0	0	0	0
합 계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소계	7,827	3,164	2,990	5,275	0	0	0	4	.187
주민등록자	10,236	4,849	4,596	9,429	0	0	0	4	.039	
재외국민신고자	0	0	0	0	0	0	0	0	0	
외국인	0	0	0	0	0	0	0	0	0	
총	10,236	4,849	4,596	9,429	0	0	0	4	.039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작성”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통보서가 작성되어 조회된다.

○ 작성 기준일 인구수는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의 인구수와 무조건 동일하다.



행정자치부

13.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출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우 투 구 명	현구호 (091405 090105 등록번호)	선거연수 (선거연도부작성 기간한글표본판)			작정한 거소투표 신고연수			총구체내용 거소투표신고 연수(%)	총거명수 대비 거소투표 신고연수 비율 (%)	비 고
		남	여	제	남	여	제			
제 1 투표구	6,096 (5,915) 등록	2,776 (2,655) 등록	3,320 (3,260) 등록	5,494 (5,354)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제 2 투표구	2,185 (2,095) 등록	1,025 (945) 등록	1,160 (1,150) 등록	2,034 (1,934)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제 3 투표구	2,074 (1,984) 등록	994 (924) 등록	980 (950) 등록	1,989 (1,899)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합 계	10,355 (10,094) 등록	4,795 (4,674) 등록	5,512 (5,334) 등록	9,427 (9,182)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0 (0) 등록	

페이지 : 1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미리 보기 화면이 표시되고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된다.
 ○ 원 둘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국내거소신고자수/외국인수)로 표기됨

행정자치부

13. 참조 – RIUS_거소투표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평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시군구에서 보고서집계 우편물을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 선관위제출용 파일생성 기능 추가

○ RIUS → 통계 → 300 선거관련보고 → 360 거소투표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에서 접속 및 출력 가능하다.

○ 미전송기관과 재전송기관이 조회되지 않아야 한다.

○ [보고서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작성한다.

○ 접속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또는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엑셀파일 생성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 엑셀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





13. 참조 – RIUS_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

- 선거구본, 선거구코드, 선거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거소투표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시군구에서 보고서접계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접계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 RIUS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80 거소투표신고서접수내역에서 접계 및 출력 가능하다.

○ 미전송기관과 재전송기관이 조회되지 않아야 한다.

○ [보고서 접계]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내역을 작성한다.

○ 접계 수행 후 [보고서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또는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엑셀파일 생성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 때까지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엑셀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

14. 참조 – 인터넷 열람용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 (10월 10일)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열람용 명부 파일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한다.

1. irais 계정으로 시군구 1단계 서버 로그인
2. 실행파일 디렉토리 이동 : cd /irais/a_rsr/bin
3. 전산파일 생성 : RSRCC119000Z 선거인파일생성디렉토리 선거일자8자리
 - 선거인파일 생성 디렉토리는 irais계정으로 파일생성권한이 있는 디렉토리여야 함.
 - 선거인파일 생성 디렉토리와 선거일자8자리는 한 칸 띄워야 함.
 - 생성되는 파일명: VOTEMAN_선거일자_작성일자.dat
- 예) [irais@jumin:/irais/a_rsr/bin] RSRCC119000Z /irais/a_rsr/data1/ 20151028
 => /irais/a_rsr/data1/VOTEMAN_20151028_20151010.dat 파일이 생성됨
 (작업일은 2015년 10월 10일로 가정했을 경우임)
4. 로그위치: /irais/a_rsr/log/RSRCC119000Z.log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용 전산파일작성 지침은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학습방(<http://10.51.21.13>)->선거업무->자료실 게시번호 '32714'에 공지함

※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용 전산파일 샘플은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학습방(<http://10.51.21.13>)->선거업무->자료실 게시번호 '29478'에 공지함



15. 선관위용파일작성 - 조회

선거구분		선거일자	등록번호	부표구	부표구	조회
선거구분	0006-재보궐선거	2016-10-26	등록번호	부표구	부표구	조회
별기기	47112500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등록일자	2016-02-27			
선거인명부		거소투표명부				
부표구	등록번호	선거일자(연)	성명	세대주	거동주소	지번주소
01	4465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69	15	1800	(선택)	구룡포읍	
01	4470	15	150f	(선택)	구룡포읍	
01	4471	15	2001	(선택)	구룡포읍	
01	4472	15	020f	(선택)	구룡포읍	
01	4473	15	1000	(선택)	구룡포읍	
01	4474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75	15	100f	(선택)	구룡포읍	
01	4476	15	2301	(선택)	구룡포읍	
01	4477	15	000a	(선택)	구룡포읍	
01	4478	15	210f	(선택)	구룡포읍	
01	4479	15	170f	(선택)	구룡포읍	
01	4480	15	1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1	15	1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2	15	220f	(선택)	구룡포읍	
01	4483	15	2800	(선택)	구룡포읍	
01	4484	15	1701	(선택)	구룡포읍	
01	4485	15	2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6	15	2001	(선택)	구룡포읍	
01	4487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88	15	300f	(선택)	구룡포읍	
01	4489	15	000b	(선택)	구룡포읍	
01	4490	15	0101	(선택)	구룡포읍	

파일작성 종료 도움말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양부구분은 “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명부”를 선택한다.
- 구·시·군 당당자도 작성이 가능하며, 행정기관별로 조회하여 파일을 작성한다.
- 조회버튼을 눌러 조회된 내용을 확인하고 “파일작성” 버튼을 눌러 TXT 형태의 명부 파일을 작성한다.

15. 선관위용파일작성 - 파일작성

선거구분		선거일자	등록번호	부표구	부표구	조회
선거구분	0006-재보궐선거	2016-10-26	등록번호	부표구	부표구	조회
별기기	47112500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등록일자	2016-02-27			
선거인명부		거소투표명부				
부표구	등록번호	선거일자(연)	성명	세대주	거동주소	지번주소
01	4465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69	15	1800	(선택)	구룡포읍	
01	4470	15	150f	(선택)	구룡포읍	
01	4471	15	2001	(선택)	구룡포읍	
01	4472	15	020f	(선택)	구룡포읍	
01	4473	15	1000	(선택)	구룡포읍	
01	4474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75	15	100f	(선택)	구룡포읍	
01	4476	15	2301	(선택)	구룡포읍	
01	4477	15	000a	(선택)	구룡포읍	
01	4478	15	210f	(선택)	구룡포읍	
01	4479	15	170f	(선택)	구룡포읍	
01	4480	15	1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1	15	1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2	15	220f	(선택)	구룡포읍	
01	4483	15	2800	(선택)	구룡포읍	
01	4484	15	1701	(선택)	구룡포읍	
01	4485	15	250a	(선택)	구룡포읍	
01	4486	15	2001	(선택)	구룡포읍	
01	4487	15	200f	(선택)	구룡포읍	
01	4488	15	300f	(선택)	구룡포읍	
01	4489	15	000b	(선택)	구룡포읍	
01	4490	15	0101	(선택)	구룡포읍	

파일작성 종료 도움말

- 저장위치와 파일이름 확인 후 저장한다. 이때, 선거인 명부 파일명은 명부작성 구분을 위해 “(작성)”으로 표기된다.
- 8000 여명 선거인 단위로 여러 개의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된다.
 - 두 번째 생성된 파일부터 확장자 앞에 1,2,3 등과 같이 숫자가 부여되어 파일이 생성됨 (예: 0006-구룡포읍-선거인(작성)1.txt)
- **열기기간 이후에는 작성할 수 없다.**



16. 후보자용파일작성 - 조회

선거일자 [2015-10-28] | 투표구 [1. 선거인명부] | 투표구 [1. 후보구] | 투표구 [1. 후보구]

선거인명부	거소투표명부	주민등록번호	성별	세대주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제1투표구	00000001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6-1
제1투표구	00000002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230-3
제1투표구	00000003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4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5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6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7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8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09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0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1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2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3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4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5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6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7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제1투표구	00000018	0000000000000000	여	세	구름정 1-1	구름정 1-1 107

* 3.5센치디스크를 적용한 파일은 본선판과 부록판에 부록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스크(3.5센치디스크)에 먼저 작성하신 후, 적용디스크에 복사하여세요.
* CD-ROM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할경우, PC의 CD Writer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조회] [전체수정] [종료] [파일작성] [파일보기] [도움말]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암호(숫자 7자리까지 가능)를 지정하고 명부구분의 명부를 선택한다. 작성투표구에는 해당 투표구를 지정하고, 신청경장명과 신청자성명을 입력한다.
- “조회” 버튼을 눌러 해당 명부의 내용을 조회하고 “파일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단말기의 작성하고자 하는 특정 디렉토리를 파일을 저장한다.
- 신청자가 출력물을 요청했을 경우 선거인명부를 직접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16. 후보자용파일작성 - 파일작성

선거일자 [2015-10-28] | 투표구 [1. 선거인명부] | 투표구 [1. 후보구] | 투표구 [1. 후보구]

선거인명부 | 거소투표명부 |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작성 위치[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1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2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3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4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5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6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7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89]: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0]: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1]: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2]: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3]: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4]: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5]: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6]: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7]: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8]: 후보자용파일작성

작성 위치[99]: 후보자용파일작성

* 3.5센치디스크를 적용한 파일은 본선판과 부록판에 부록될 수 있으므로
이미지스크(3.5센치디스크)에 먼저 작성하신 후, 적용디스크에 복사하여세요.
* CD-ROM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할경우, PC의 CD Writer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조회] [전체수정] [종료] [파일작성] [파일보기] [도움말]

- “파일작성” 버튼을 누르면 파일저장을 위한 창이 나타난다.
- 작성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이동 후 파일명을 수정하지 않고 “저장” 버튼을 누른다.
- 전체 투표구간으로 조회하여 작성하여, 선거인/거소투표신고인 명부 파일이 투표구단위로 각각 생성된다.
- 생성된 파일은 암호화된 파일로 지정은 프로그램으로만 출력할 수 있다.

PC의 C:\Windows\Temp\후보자용파일작성.exe 파일 또는 주민등록, 민감 온라인 공동학습방(<http://10.91.21.13/>)
→ 선거업무 → 자료실 → 게시판 '40336'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함께 제공



행정자치부

참고. 선거인 명부의 수정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10/6 ~ 10/10)	선거인명부 확정 이전 (10/11 ~ 10/16)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10/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 수정 불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 단,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누락된 자가 거소투표신고를 하였을 경우 등재 위해 명부 수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추가 등재 ▶ 명부 등재 즉시 혹은 10/10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재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불복신청에 의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이의신청' 혹은 '불복신청'으로 수정 ◆ 명부누락자의 구제에 의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등재로 하여 수정 ◆ 오기, 선거권없는자, 사망자가 있는 경우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정정'으로 결정사항을 삭제로 하여 수정 ▶ 명부 확정 후 혹은 10/16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51.선거인명부확정통보서] 작성 ☞ 「선거인명부수정상황통보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므로 전산처리는 하지 않음 ◆ 사망자, 선거권없는자, 오기된 자 등은 제7호 서식 (나)에 의하여 통보 ◆ 사전투표소 투표기간 종료 후 선관위시스템에서 사전투표정보를 반영한 선거인명부 출력(10/24) 후의 수정사항은 명부 비고란에 기재

96 / 125

행정자치부

17. 이중등재자 조회

※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B38QC17800W)
거주자나 거주별연자에면서 국내거소신고자명부에 등재되어
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 두개의 신분으로 번갈아가며 거주하는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이중등재되었다면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대상자를 삭제해주세요.
(선택 기준은 구시군선관위별 문의 혹은 금지선거 범무현장 참조)

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	거소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주주소	거소별경기장
1	98	84	고	2000.01.01/1994	민상복	민상복	민상복
2	9	84	고	2004.01.03/1990	314 고	경기	경기도 안포사 간판

○ 선거인명부에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로 이중등재 될 가능성 있는 대상자를 조회한다.
○ 자료 확인 후 이중등재된 대상자가 있다면 9341.선거인명부열람 업무에서 직권경정으로 삭제한다.

97 / 125



18. 선거인명부열람 – 업무선택

○ 선거일을 선택하면 선거일자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대상자의 성명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업무구분 선택창이 나타난다.

○ 이의신청, 불복신청, 직권경정, 일정 업무 등 해당업무를 선택한다.

○ 미 등재자를 직권경정으로 추가 등재할 수 있는 기간은 명부작성기간 또는 이의신청기간 이후부터 명부확정 전까지이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수정

○ 변동(신청)사유와 직권(심사/재심)결정 상태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 새로운 선거인을 등재할 경우는 “추가” 버튼으로. 등재된 선거인을 수정하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한다.

○ 이의신청기간에 작업자 오류로 이의신청으로 등재된 선거인(해당 투표구의 가장 마지막 등재번호인 선거인)에 대해서만 “삭제” 버튼으로 선거인을 삭제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간에 직권경정으로 선거인을 등재했을 경우 [9312]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를 반드시 재 작성해야 한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투표구변경1

주민번호	성	이	별명	세대주구분	등록번호	선관등록번호
70	김	수		세	000023	000942
73	박	수			000024	000943

주의사항

-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동안은 투표구 변경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기간에 처리하시면 이의신청에 의한 표제/서명도 처리됩니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처리하시면 적관경정에 의한 표제/서명도 처리됩니다.

작동

세대원 명 변경할투표구 투표구수정 등재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작동

변경설명 주민번호 주소 경계사례는 변동사항과 적관경정 항목을 입력하자 마십시오.

작동

1. 지번주소 투표구
2. 투표구수정
3. 등재번호수정
4. 차장
5. 투표소

- 업무구분을 “열람”으로 선택하면 “투표구변경” 버튼이 활성화 된다.
- 영부작성기간에는 투표구변경을 할 수 없다.
- 투표구변경 화면에서 변경될 투표구에 해당하는 주소로 수정한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투표구변경2

주민번호	성	이	별명	세대주구분	등록번호	선관등록번호
70	김	수		세	000023	000942
73	박	수			000024	000943

주의사항

- 선거인명부작성 기간동안은 투표구 변경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기간에 처리하시면 이의신청에 의한 표제/서명도 처리됩니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처리하시면 적관경정에 의한 표제/서명도 처리됩니다.

작동

세대원 명 변경할투표구 투표구수정 등재번호수정 등록번호 등록일

작동

변경설명 주민번호 주소 경계사례는 변동사항과 적관경정 항목을 입력하자 마십시오.

작동

1. 지번주소 투표구
2. 투표구수정
3. 등재번호수정
4. 차장
5. 투표소

- “투표구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주소에 해당하는 변경될 투표구가 추출된다.
- “등재번호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될 투표구의 새로운 등재번호가 부여되고 “차장”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다.
- 이의신청기간에 투표구변경 시 [이의신청에 의한 증/감]으로 반영된다.
- 이의신청기간 이후부터 영부확정 전까지 투표구 변경 시 [이의신청에 의한 증/적권수정에 의한 감]으로 반영된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최종상태별 선거인 조회

○ “최종상태별선거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상태별선거인조회 화면이 실행된다.
 ○ 조회하고자 하는 최종선거인상태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01-초기등재자는 조회되지 않는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1

○ 주민등록 자료에 미리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4120] 개인별주민등록열람에서 확인한다.
 ○ 업무구분은 직권정정을 선택한다.
 ○ 성명이나 주민번호 정정의 경우 변경 전의 성명 또는 변경 전 주민번호로 대상자를 조회한다.
 ○ 주민번호 경정 시 성별이 바뀌는 경정은 불가능하며, 직권삭제 후 직권등재로 처리해야 한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주민등록자: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대한민국국적)

선거 일자: 2015-10-28
수정 일자: 2015-10-28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내선 번호: 100000
제작자: 제작자

선거인 사항

본인설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선거인명부상태: 초기화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세대주여부: 0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
지번주소: 경포동
별록주소: 주택형상: 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비단)
선거구명: 구포로 1
기초주체 선고 사항
접수일: 접수번호: 부재사유:
이의신청 사항
신청일: 신청서류: 접사결정:
불복신청 사항
신청일자: 신청서류: 재심결정:
학관 청결 사항
변종일: 변종사유: 직권결정:
※ 본인성명/주민번호/주소, 학관 청결 사항은 변동사유와 직권결정 항목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수정 버튼 (Red Box)

○ 변동사유나 직권결정은 입력하지 않는다.
 ○ 선거인 사항에서 본인 성명(또는 주민등록번호/주소)을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성명정정의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면 “Yes”를 클릭한다.

18. 선거인명부열람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정정3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주민등록자: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대한민국국적)

선거 일자: 2015-10-28
수정 일자: 2015-10-28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내선 번호: 100000
제작자: 제작자

선거인 사항

본인설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선거인명부상태: 초기화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1011-1111-1111
세대주여부: 0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봉로 1
지번주소: 경포동
별록주소: 주택형상: 주택(다가구주택인 경우비단)
선거구명: 구포로 1
기초주체 선고 사항
접수일: 접수번호: 부재사유:
이의신청 사항
신청일: 신청서류: 접사결정:
불복신청 사항
신청일자: 신청서류: 재심결정:
학관 청결 사항
변종일: 변종사유: 직권결정:
※ 본인성명/주민번호/주소, 학관 청결 사항은 변동사유와 직권결정 항목을 입력하지 마십시오.

수정 버튼 (Red Box)

○ 다시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되면, “OK” 버튼을 클릭한 후, 수정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한다.
 ○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면 변경 후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로 대상자를 조회하여 선거인명부의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영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을 통제나 삭제하여 선거인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 OK 버튼을 눌러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화면으로 이동한다.



- 'OK'버튼을 눌러서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 화면으로 이동되면 선거인명부작성통보서가 자동으로 다시 작성된다.



19.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조회/작성

구분	구별	구별구별	구별구별	선거구별		직접	의뢰통보	제출한	기준별	인구대비	비례수		
				구별	구별							구별	구별
제 1 투표구	국민등록자	남	2,932	2,889	0	0	0	2,669	0	91.9%	2,1		
	여	2,769	2,560	0	0	0	2,560	0	92.4%				
	계	5,670	5,229	0	0	0	5,229	0	92.2%				
	제외국민신고자	남	0	0	0	0	0	0	0	0	0		
		여	0	0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0	0		
		외국인	남	0	0	0	0	0	0	0	0	0	
			여	0	0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0	0		
	제 2 투표구	주민등록자	남	2,930	2,889	0	0	0	2,669	0	91.9%	2,1	
여		2,766	2,560	0	0	0	2,560	0	92.4%				
계		5,670	5,229	0	0	0	5,229	0	92.2%				
제외국민신고자		남	1,100	990	0	0	0	990	2	90	1,6		
		여	1,030	945	0	0	0	945	2	91.04			
		계	2,130	1,935	0	0	0	1,935	4	90.54			
		외국인	남	0	0	0	0	0	0	0	0	0	
			여	0	0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0	0		

[

- “작성” 버튼을 누르면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가 작성되고 자동으로 중앙센터로 전송되어 통보서가 접게된다.
-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의 기타통보서(선거인연령별현황)도 함께 일괄 작성된다.
-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양부를 수정(등재 혹은 삭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 버튼을 놓려 재 작성하여야 한다.
- 확정된 투표구별/연령대별 선거인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기타통보서 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19.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 출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구분	구별	구별구별	구별구별	선거구별		직접	의뢰통보	제출한	기준별	인구대비	비교	
				구별	구별							구별
제 1 투표구	국민등록자	남	3,044	2,776	0	0	0	2,776	0	91.8%	2,106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088	4,520	0	0	0	4,520	0	91.32			
	제외국민신고자	남	2,382	2,200	0	0	0	2,200	0	91.74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3,664	3,200	0	0	0	3,200	0	91.76		
		외국인	남	1,021	(0/0)	(0/0)	(0/0)	(0/0)	(0/0)	(0/0)	(0/0)	(0/0)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21	(0/0)	(0/0)	(0/0)	(0/0)	(0/0)	(0/0)	(0/0)	(0/0)	
	제 2 투표구	주민등록자	남	1,008	994	0	0	0	994	0	91.03	1,034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2,016	1,994	0	0	0	1,994	0	94.3			
제외국민신고자		남	2,004	(0/0)	(0/0)	(0/0)	(0/0)	(0/0)	(0/0)	(0/0)	(0/0)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2,004	(0/0)	(0/0)	(0/0)	(0/0)	(0/0)	(0/0)	(0/0)	(0/0)	
		외국인	남	992	994	0	0	0	994	0	91.14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992	994	0	0	0	994	0	91.14		
제 3 투표구		주민등록자	남	2,014	1,989	0	0	0	1,989	0	91.08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2,014	1,989	0	0	0	1,989	0	91.08			
합 계	주민등록자	남	5,221	4,795	0	0	0	4,795	0	91.67	5,063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224	4,795	0	0	0	4,795	0	91.6			
	제외국민신고자	남	5,224	(0/0)	(0/0)	(0/0)	(0/0)	(0/0)	(0/0)	(0/0)	(0/0)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5,224	(0/0)	(0/0)	(0/0)	(0/0)	(0/0)	(0/0)	(0/0)	(0/0)	
	외국인	남	10,256	9,407	0	0	0	9,407	0	91.75		
		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0,256	9,407	0	0	0	9,407	0	91.75		

-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를 출력한다.
- 첫 줄의 선거인수는 전체 선거인수이고 ()안의 숫자는 《국내거소신고자수/외국인수》로 표기됨
- 주민등록자의 세대수는 확정상황통보서의 세대수와 동일함
-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의 세대수는 확정된 선거인수의 1인 1세대로 변경되어 접게됨



19. 참조 – RIUS.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

The screenshot shows the '선거(투표)연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Voter List Reporting Form for Election Status) window. It includes fields for voter ID, voter code, election date, and reporting agency. A red box highlights the '제한승기관 조회' (Checklist Agency Inquiry) section, which contains a dropdown menu for '현관' (Main Office).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제한승기관' (List of Checklist Agencies) section, showing a list of agencies. Red arrows point from these highlighted areas to the following explanatory text: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기준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기준일자는 확정상황 통보서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시군구에서 보고서 접수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접수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 선관위제출용 파일생성 기능 추가

Below the window, a note states: RIUS ->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50 선거인명부 확정상황통보서에서 접수 및 출력 가능하다.

Red arrows also point from the '제한승기관' dropdown and the '제한승기관' list to the explanatory text.

19. 참조 – RIUS.기타통보서 출력 (확정상황)

The screenshot shows the '선거(투표)연명부 기타 통보서' (Other Voter List Reporting Form for Election Status) window. It includes fields for voter ID, voter code, election date, and reporting agency. A red box highlights the '제한승기관' (List of Checklist Agencies) section, showing a list of agencies.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국적선택' (Nationality Selection) section, which contains options for '국적선택' (Select Nationality), '외교관' (Diplomatic Staff), and '포환' (Non-resident Alien). Red arrows point from these highlighted areas to the following explanatory text: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 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확정상황을 선택한다.
- 외국인 포함 또는 미포함 출력 가능하다. 외국인 포함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Below the window, a note states: RIUS ->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70 선거인명부 기타통보서에서 기타통보서 접수, 출력 가능하다.

Red arrows also point from the '제한승기관' list and the '국적선택' section to the explanatory text.



19. 참조 - RIUS.선거인명부 확정내역

- 선거구분, 선거구코드, 선거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한다.
- 동시선거가 있을 경우만 목록이 자동 조회된다.
- 미전송기관이 조회되면 해당 읍면동이 확정상황통보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시군구에서 보고서 접수 후 자료를 재전송한 읍면동이 조회된다. 재전송기관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서 접수를 다시 하고 다시 출력해야 한다.

○ RIUS -> 통계->300 선거관련보고->3A0 선거인명부확정내역에서 접수 및 출력 가능하다.
 ○ 미전송기관과 재전송기관이 조회되지 않아야 한다.
 ○ [보고서 접수]를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확정내역을 작성한다.
 ○ 접수 수행 후 [보고서 출력]을 선택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또는 [파일생성]버튼을 눌러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엑셀파일 생성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마우스를 건드리지 않아야 엑셀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된다.

20.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작성

- 선거구분을 선택하면 선거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 요청일자는 기본으로 현재일자가 지정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 파일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 서버의 서버 작업디렉토리(/irais/a_rrr/log) 폴더에 선거인명부 파일을 생성한다.
- 구,시,군 업무담당자가 선거인명부 확정일(4/17)부터 작업이 가능하다. (읍,면,동 업무담당자 작업 불가)



행정자치부

20.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처리상황 조회

1. 파일작성

선거구분 [0006-대보울강개] | 접수구분 [1. 선거인명부] | 접수일자 [2015-10-26] | 접수기관 [011110000-경주시 남구 구통동] | 표정일자 [2015-05-27] | 서버작업디렉토리 [/racls/4sun/109]

2. 처리상황조회

처리상태 [처리중] | ? [도움말]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0만명 당 대략 2분~4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파일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처리상태가 "해제"인 경우는 주민연무업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파일가져오기(서버접속)

사용자계정 [racls] | 비밀번호 []
(서버 접속 계정을 찾는 경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전송 전송

[3. 파일가져오기] | [도움말] | [도움말]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 서버에 선거인명부 파일이 작성되는 처리상태를 조회한다.
○ 선거인 수 20만명 당 대략 2분 정도 소요되며, 여러 번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조회되면 정상적으로 선거인명부 파일이 생성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20. 선관위용파일작성(시군구용) – 파일 가져오기

1. 파일작성

선거구분 [0006-대보울강개] | 접수구분 [1. 선거인명부] | 접수일자 [2015-10-26] | 접수기관 [011110000-경주시 남구 구통동] | 표정일자 [2015-05-27] | 서버작업디렉토리 [/racls/4sun/109]

2. 처리상황조회

처리상태 [처리완료] | ? [도움말]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상태를 확인하십시오. (20만명 당 대략 2분~4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파일 작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처리상태가 "해제"인 경우는 주민연무업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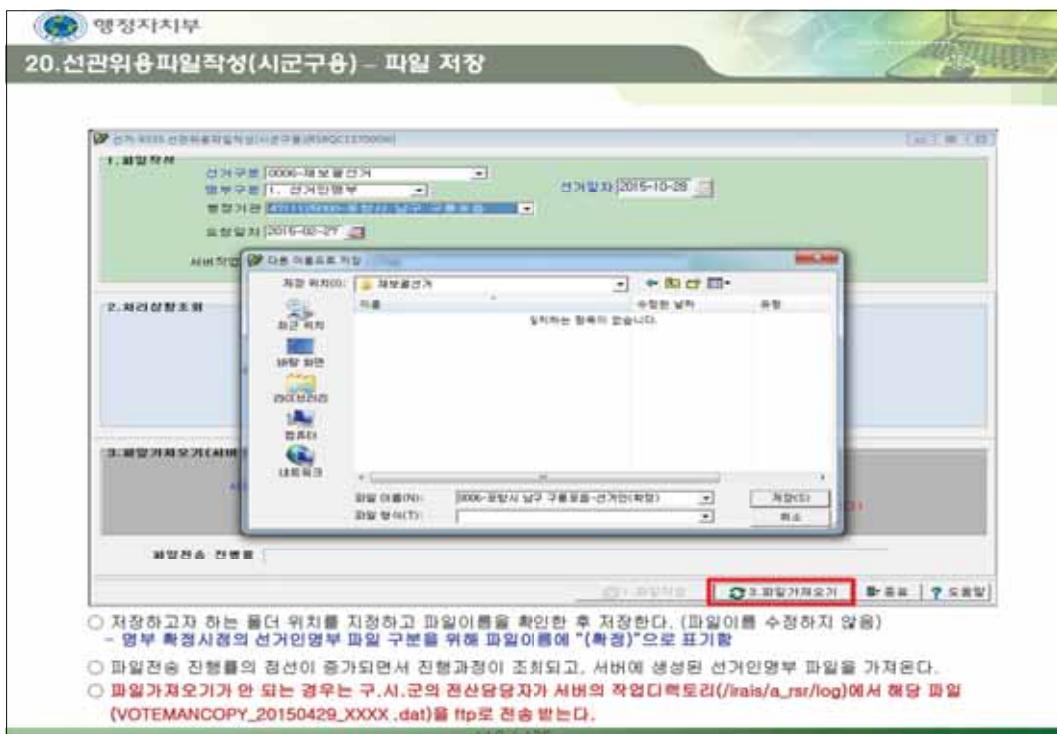
3. 파일가져오기(서버접속)

사용자계정 [racls] | 비밀번호 []
(서버 접속 계정을 찾는 경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전송 전송

[3. 파일가져오기] | [도움말] | [도움말]

○ 파일 작성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조회되면 하단의 파일 가져오기 버튼이 활성화된다.
○ 시·군·구 서버의 'RACLS'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21.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 세대주가 거소투표신고인이 되거나 명부에서 직권삭제 될 경우 투표권이 있는 세대원 중 등재번호가 같은 자를 자동으로 일시 세대주로 치환 한다. 이 경우 오동작이 발생하면 투표안내문이 전혀 다른 세대에 포함되어 출력될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를 하도록 한다.

○ 거소투표신고인을 제외한 투표권이 있는 세대의 세대수가 조회된다.

21.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정상

○ 세대주구분 정합성 체크가 정상일 경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된다.

○ 출력하고자 하는 투표구, 등재번호 범위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21.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주구분정합성체크 오류

2014 선거-우편발송물주소조회(PQC131000W)
우편발송물주소조회-선거인주소사항 | 우편발송물주소조회-법정동별세대수현황 |

선거구분 [0006-제보율선거] 선거일자 [2015-10-26] 구분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조회

제보구 분류번호 [부터] 제 [까지] 구분구 분류번호 [부터] 제 [까지] 구분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조회

선거인주소사항
[총화면도] [세대주명] [세대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세대주구분오류자료 (IRSHQPC131002W)

• 아래의 대상자를 주민등록簿에 통보해주시오.

세대주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철운	1

조회건수 (최대수) 1

우편번호관리 | 자동선택 [0] ** 강제선택 [0] ** | 총페이지 | 1 | 도움말

- 세대주구분에 문제가 있는 선거인이 있을 경우 오류대상자가 위와 같은 화면에 조회된다.
- 오류대상자가 있을 경우 주민업무팀에 문의하여 조치도록 한다.

21. 우편발송물주소조회 – 세대수현황

2014 선거-우편발송물주소조회(PQC131000W)
우편발송물주소조회-선거인주소사항 | 우편발송물주소조회-법정동별세대수현황 |

선거구분 [0006-제보율선거] 선거일자 [2015-10-26] 구분 [전체] 거주불명등록자 조회

법정동별 세대수현황

법정동	세대	세대수
구월동	1	10
구월동	2	92
구월동	3	87
구월동	4	91
구월동	5	2
구월동	6	12
구월동	7	1
구월동	8	7
구월동	9	11
구월동	10	4
구월동	11	1
구월동	12	88
구월동	13	220
구월동	14	18
구월동	15	3
구월동	16	6
구월동	17	4
구월동	18	2
구월동	19	2
구월동	20	29
구월동	21	29
구월동	22	1
구월동	23	11
구월동	24	1

총페이지 | 1 | 총조회건수 | 1 | 도움말

- 법정동별세대수현황 템을 클릭한다.
- 선거구분을 선택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한다.
- 법정동별 통계 선거권이 있는 세대수가 조회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Electronic Ballot Box' software interface. The main window title is 'Electronic Ballot Box (EBOCLE30000W)'. The top menu bar includes 'File', 'Edit', 'View', 'Report', 'Help', and 'Exit'. The left sidebar has sections for 'Reporting', 'Reporting List', 'Reporting Details', 'Reporting Statistics', and 'Reporting Analysis'. The 'Reporting' section contains fields for 'Reporting Number' (0006-대보동간거), 'Reporting Date' (2015-10-26), and buttons for 'Search' (검색) and 'Print' (인쇄). Below these are search fields for 'Reporting District' (부제구) and 'Reporting Type' (등재번호).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reporting details for various districts, with columns for 'Reporting District' (부제구), 'Reporting Number' (등재번호), 'Reporting Date' (신기일자), 'Reporting Type' (신기구분), 'Reporting Status' (신기상태), and 'Reporting Address' (신기주소). The table lists 20 entries from 2006-01-01 to 2015-10-26.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Print' (인쇄), 'Exit' (종료), and 'Print All' (전체인쇄). A status bar at the bottom indicates 'Printed (Page 10 / 10)'.



행정자치부

23. 주의사항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자에는 반드시 모든 읍,면,동에서 선거인명부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 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예비명부 작성 전 [9355. 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에서 조회된 오류자료를 모두 보정해야 한다.
- 주택명칭, 총, 호수(기타주소)가 투표안내문 주소에 추가되므로 선거인명부작성(10/6) 전까지 기타주소 내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미리 정비해야 한다. (**[교재 내 기타주소정비 참고]**)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일과 선거인본명부 작성일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1. [9355. 주민오류자료조회] 업무에서 오류 자료 조회 및 자료 보정
 2. [5410. 관내현황작성] 업무에서 작업일자의 관내현황을 작성하여 총 인구수 확인
 3. [9301. 외국인선거인등록] / [9310. 국내거소신고자등록] 업무에서 등록여부 확인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등록했을 경우, 선거인 본 명부 작성시에는 변동된 자료만 보정
 4. [9311. 선거인파일작성] 업무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5. [9312.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업무에서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작성
 6. 관내현황 총 인구수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의 총 인구수가 같고 누락자가 없는지 확인
 7. [9313. 선거인명부출력] 업무에서 기타통보서와 선거인명부 출력
- *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시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대사원료 후 파기하여 본 명부 작성 후의 선거인명부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 2015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법시행
- 1.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선거메뉴의 표기가 내국인 →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자
- 2. 등록구분이 재외국인거주자, 재외국민거주불명자, 재외국민출국자도 선거권이 있다.

행정자치부

24. 참고사항(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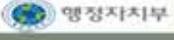
제3회 국면거소신고자명단조회

(화면) 정보조회 > 재외국민 거소신고 관리 > 재외국민거소신고 명단

제3회 외국인등록자명단조회

(화면) 정보조회 > 등록외국인관리 > 등록외국인명주관자명단



 행정자치부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인감 온라인 민원방
(<http://10.51.21.13>)->선거업무->Q&A, 자료실**

FAX : 02)2100-3728



III

결격사유조회시스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선거권 없는 자 관련 설명**

2015. 09

행정자치부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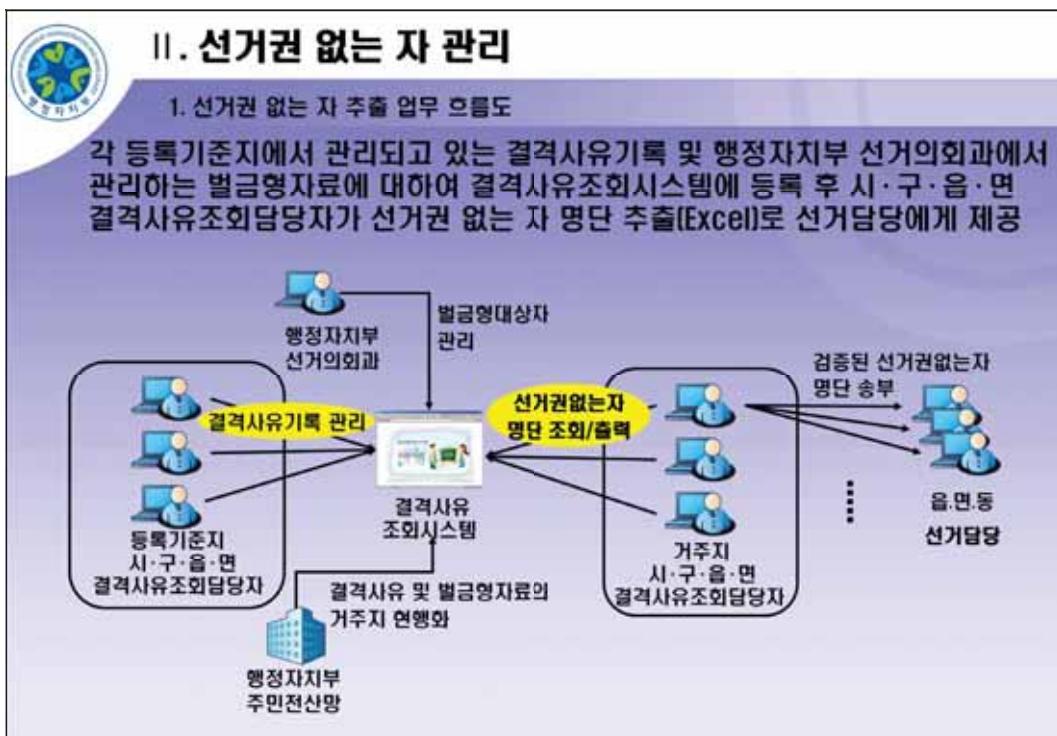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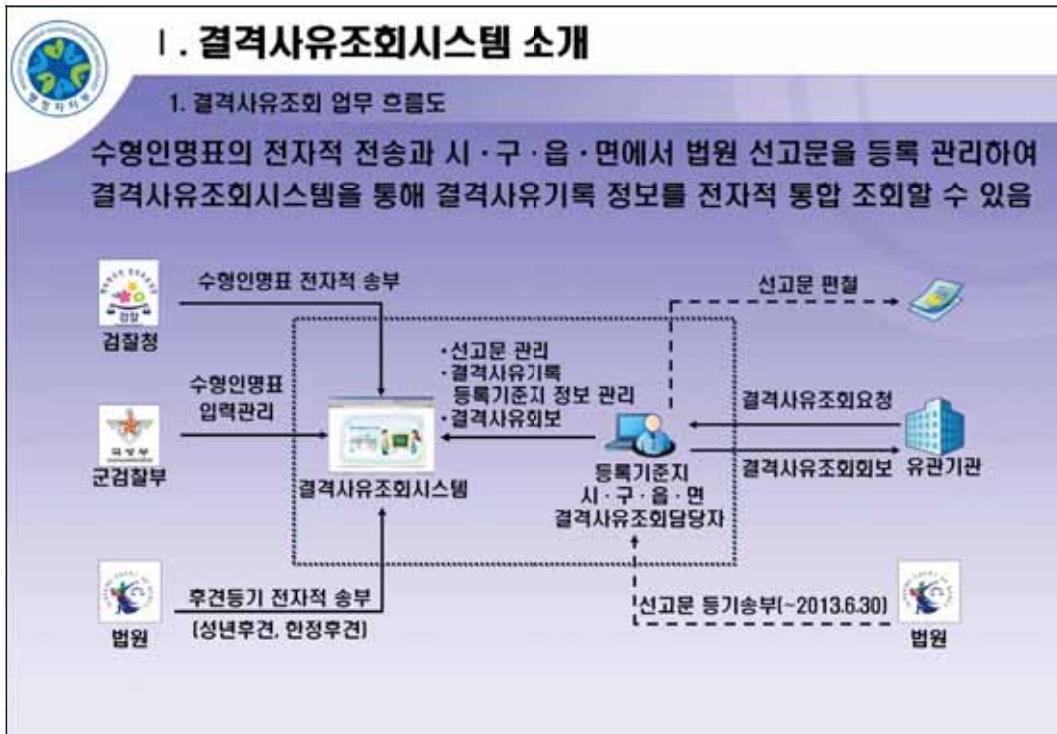
I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소개

- ▣ 결격사유조회 업무 흐름도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 ▣ 선거권 없는 자 주출 업무 흐름도
- ▣ 선거권 없는 자 관리 개념도
- ▣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 ▣ 선거권 없는 자 정보 조회
- ▣ 주의사항

III 주요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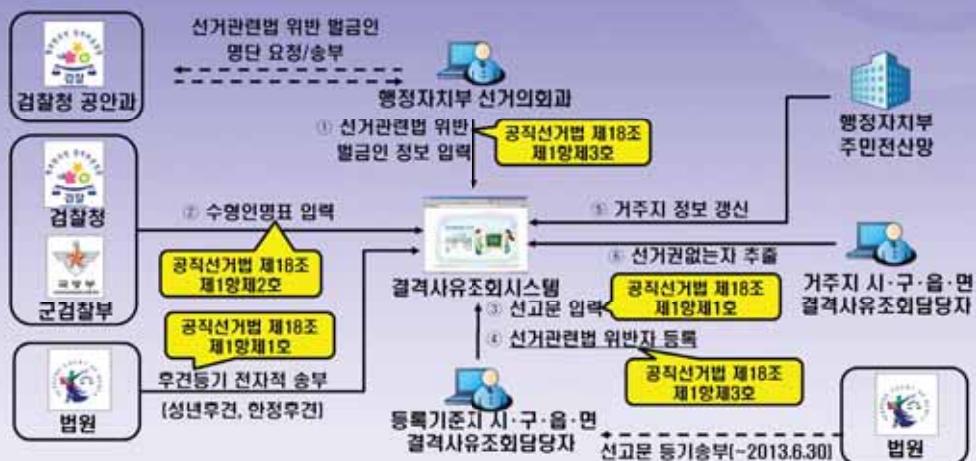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2. 선거권 없는 자 관리 개념도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벌금형 입력,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수형/선고 자료를 접수·입력하고 거주지
시·구·읍·면에서는 선거권 없는 자를 추출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① 벌금형대상자 등록(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접근메뉴 : 벌금형대상자관리 > 벌금형대상자등록

① 벌금형대상자 등록	
성별	
주민등록번호	
집별주소	
출생일자	2000-05-17
세자세정일자	2012-05-17
재민여부	
학령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A 징역일자를 입력하면 제기예장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됨 <input type="checkbox"/> 최종을 표기하시려면 강박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제크하면 등록하고 있 는 표명이 유지	
정체번호	
비고	

- ① 벌금형대상자의 내용(A)을 각각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 벌금형대상자는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지 않고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에서 입력 관리하며 거주지는 주민전산망과의 현행화를 통하여 거주지의 선거권 없는 자로 조회된다.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접근메뉴 : 신규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2) 수령인명표 접수 화면

A.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B. [송부유형]이 [신규]인 신규결격사유기록의 등록기준지와 좌명 등의 정보를 확인 후 결격사유기록상세조회 및 접수 화면으로 이동한다. [송부유형]이 [변경]인 변경결격사유기록의 정보를 선택하면 결격사유기록상세조회 및 확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 ◆ 현재 화면에서 조회되는 데이터 중 신규 데이터는 아직 어디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는 미 활용 자료임.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부분 위헌판결로 인하여 길행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관리함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접근메뉴 : 신규결격사유기록관리 > 신규결격사유기록조회 > 목록에서 조회된 수령인명표 클릭

(2) 수령인명표 접수 화면-계속

A. 등록된 수령인명표의 인적사항과 수령정보를 조회한다.

B.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제3호에 의거 선거관련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련법 위반자로 등록하고 선거권 없는 기간을 설정한다.

C. 수령인명표의 등록기준지정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정보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정보를 입력한다.

D. 수령인명표의 인적사항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적사항정보, 주민전산망 인적사항정보와 다른 경우 각각의 정보를 입력한다. 비교에는 어떠한 사유로 언제, 무엇을 변경하였는지 입력하여 성명,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이력으로 관리한다.

E. E화면의 주민등록 성명과 주민번호 양쪽은 거주지 연행화를 기준정보로 활용한다.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접근메뉴 : 선고문관리 > 신규선고문등록

(3) 선고문 등록 화면

① 문서상의 선고문을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의 신규선고문등록 화면에 각 번호에 맞도록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어 관내 선고문으로 관리된다.

◆ 2013.7.1 민법 개정에 따라 금지신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신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15.4.2부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데이터를 대법원과 연계하여 제공받고 있음.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접근메뉴 :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관련법위반자관리

(4) 선거관련법 위반자 관리 화면

A. 검색조건 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항목에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한다.

B. 친명을 확인하여 선거관련법 위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수령인명표를 클릭하여 선거관련법 위반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선거관련법 위반자의 경우 선거관련법위반여부가 '해당없음'이 아닌 '위반자' 이어야 한다.

◆ 검색조건 [선거관련법 위반여부]를 사용하여 현재 선거관련법위반자로 관리 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선거관련법위반자는 공직선거법제18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제외한 수형자를 지정]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3. 선거권 없는 자 관리 방법

접근메뉴 :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관련법위반자관리 > 수령인명표 선택

④ 선거관련법 위반자 관리 화면-계속

A. 수령인명표 중 죄명이 공직선거법제 18조제1항제3호(선거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고법원, 형명/명기, 확정일자와 명의 실효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행정증표예정일, 징행유예기간경과예정일, 자격정지기간경과예정일을 확인한다.

B. 선거관련법 위반 여부를 선택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의거 선거권 없는 기간을 설정한다.

C. 선거관련법 위반 사항 설정을 완료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선거관련법 위반자 등록을 완료한다.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4. 선거권 없는 자 정보 조회

접근메뉴 :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권없는자조회(거주지)

① 선거권 없는 자 조회 화면(거주지)

※ 선거일자 : 2015-10-28
선거자 연령 : 만 19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자 명단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선택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10-28	성명		만 19	내외상	주민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10-28	성명		만 19	내외상	주민번호						

A. 선거일자, 선거자연령, 영구분[전체/별금형/금치산/수영], 성명, 주민번호 항목에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한다(단, 선거일과 선거연령은 필수입력 항목).

B. 검색조건에 의한 당해 거주지의 선거권 없는 자 목록이 조회된다.

◆ 거주지 담당자가 현재상태의 선거권 없는 자 목록을 확인하는 회면임. 선거인 명부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선거권없는자 비교명부라는 메뉴가 따로 존재함.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4. 선거권 없는 자 정보 조회
② 선거권 없는 자 주출 이력과 비교(거주지용)

접근메뉴 :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Home : 선거권없는자관리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 검색조건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2015-10-28
선거자연령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2015-10-05 ~ 2015-10-07

[검색]

예) 선거일자 : 2015-10-28, 선거자연령 :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 2015-10-05 과 2015-10-07 비교																		
순번	성명	주민번호	표출거론지	거주지	거주자본등록번호	거주자행정관서	거주상태	거주지변경일자(전입일자)	확정일자	좌명	발행/발급기 (확인일, 확정일)	발행증명에 정한	선거권료 는기간	집행기관	공직선거법 제18조 위 반조항	변경 사유	변경상 세내역	변경 유무
1	김**340***** *****	서울특별 시 종로 구 **번 지	서울특별 시 종로 구 **로 **번 지	서울특별 시 종로 구 00	11110600	서울특별시 종로 구 거제동	거주	2006031200512	특정범죄가 실적 10년 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 반 [조례]	20151230	집행종료 예정 일 2015- 12-30	서울종로 지방법찰 원	제1항 제 2호	변동 로움		우		

◆ 선거담당에게 제공되는 선거권 없는 자 명단을 Excel로 다운로드 한다.
◆ Excel의 항목설명
- 공직선거법제 18조위반조항 : 제1항제1호<-금지신자, 제1항제2호<-일반(군)수영자, 제1항제3호 <- 선거사범(선거관련법위반자)
- 변동사유(비교일자간의 차이) : 변동없음, 추가, 삭제 (추가,삭제된 원인을 변경상세내역을 통하여 확인가능)
- 변경상세내역 : 신규, 전입/전출, 종로예정일변경,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 선거권없는기간변경, 상소권회복 등의 사유가
비교일자 사이에 발생하였을 경우 표현됨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5. 주의사항

- 각 시.구.읍.면 선거담당자는 엑셀 컬럼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 조항]으로 끝나는
자료는 잘못 제공된 자료이므로 [변경상세내역] 또는 [변경유무]로 끝나는 엑셀 자료를
결격사유조회담당자에게 다시 요청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 작성프로그램에 선거권 없는 자 입력할 때 [사유]는 제공받은 엑셀 컬럼의
[공직선거법 제18조 위반조항]의 내용을 입력한다.
- [거주지행정관서]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는 [거주지] 컬럼을 참고
- 엑셀 문서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제공한 결격사유조회 담당자에게
암호화 해제 후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문서보안 솔루션 적용에 따른 문서암호화)
- 벌금형의 경우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명
검증이 필요함.



II. 선거권 없는 자 관리

5. 주의사항-계속

6.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시 처벌 등의 강화로 인한 엑셀자료 보관 및 활용 시 주의
 - 엑셀자료 유통은 암호화 후 보안 USB를 활용하여 제공
 - 담당자 PC에 있는 자료는 전산 처리 후 삭제 조치
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중 일부 위헌판결로 인하여 집행유예자가 '선거권 없는 자'로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증

III 주요 확인사항

- ① 참고사항
- ②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구하는 방법
- ③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 해석방법
- ④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 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III. 주요 확인사항

1. 참고사항

◆ Excel에 표현되는 변경사유 중 추가/삭제 원인 설명

- 신규 : 등록기준지에서 신규 수령/선고 자료를 접수
- 전입/전출 : 신규 수령/선고 자료의 경우 거주지가 최초로 현행화, 대상자의 거주지가 실제로 변경
- 종료예정일변경 : 집행종료예정일 등의 변경
- 선거관련법위반여부변경 : 당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여부의 체크를 선택/해지 한 경우
- 선거권없는기간변경 : 당당자가 선거관련법위반자의 선거권 없는 기간을 변경하였을 경우
[예]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복권이 발생하여 선거권 없는 기간에 복권일자를 입력한 경우

◆ 다운받은 Excel 자료의 변경상세내역에는 위와 같은 사유와 자료의 변동 일자가 조회

[예1] 전입/전출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1-12-20][2015-10-06]

[예2] 전입/전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변경일자:2015-10-05][2015-10-06]



III. 주요 확인사항

1. 참고사항

◆ 일자에 대한 정의 (선거권없는기간 / 폐기예정일자)

- 2999-12-12 : 검찰청에서 결격사유조회시스템으로 폐기예정일자를 주지 않았을 경우
=>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검찰청 시스템의 실효일자를 수정 요청
- 8888-12-31 : 검찰청에서 사형/무기징역/도망 등으로 인해 형 집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집행기간이 무기한인 경우
- 2099-12-31 : 97년 이전수령등록에서 형명을 사형/무기징역으로 입력하였을 경우
- 7777-12-31 : 상소권회복으로 인해 선거권이 복권되었을 경우
- 1900-01-01 : 검찰청에서 무죄판결로 복권되었을 경우
- 1111-11-11 : 검찰청에서 수명인명표를 삭제하였을 경우
[즉, 검찰청에 존재하지 않는 명표]



III. 주요 확인사항

2.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구하는 방법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Home : 선거권없는자전적 :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 김재호건

거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2015-10-28 (1) ■
선거자연령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자료없음 (2) → 2014-01-01 (3) 비교

※ 비교일자와 선거일자는 비교일이 선거일보다는 반드시 조기로 설정되어야 제작되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교일자는 **가장 최근에 선거권없는자집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 Excel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단, 뒤로해 어려운 글자인 경우 예상되는 글자를 선택하여 선택합니다.
※ 비교일의 경우 등록기준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날짜를 선택합니다.
※ 비교일자는 선거일자와 선거연령을 선택합니다.
※ 비교하는 Excel파일은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감소에서는 시, 구, 읍,면에서 드립니다.

(5) 적용

1. 입력양식 ①에는 결격사유기록당수가 해당 화면을 통하여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던 일자가 입력된다. 단, 오늘 날짜는 제외된다.
②에서 "자료없음"이 표시될 경우는 Excel버튼을 누르지 않아 한번도 Excel파일이 다운로드된 적이 없는 경우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처음으로 비교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함으로 Excel의 모든 변경내역은 "추가"로 표시되어진다.

2. ④ 항목에는 항상 오늘날짜가 조회된다. 단 변경은 불가능하다 (③에는 금일을 제외한 이전에 Excel을 다운로드 한 일자를이 보임)

3. ⑤의 Excel버튼을 누르면 ②과 ④의 날짜의 기간 동안의 선거권 없는 자가 비교되어 변경내역과 변경내역에 관한 변경상세내역(변경사유)이 조회되어 Excel파일로 저장된다.

4. ⑥의 Excel버튼을 눌러 비교 명단을 저장 받은 경우 그 해당 날짜가 표시된다.

III. 주요 확인사항

3.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 해석 방법

① 변경상세내역 설명

정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자	거주자	거주자행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종학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정길동	*****	한관남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 종학	(2) 낙관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 2015-10-05] [2015-10-06]
정길동	*****	한관남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종학	추가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 2015-10-05] [2015-10-06]
정길동		한관복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4) 종학	추가	전입(신동)-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변경일자 2015-10-05] [2015-10-06]
정길동		한관남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촌3가동	(5) 종학	선택	전입(전출)-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동→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촌3가동[변경일자 2015-10-05] [2015-10-06]

거주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 2015-10-28
선거연령 :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 2015-10-05 과 2015-10-07 비교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메뉴의 조회조건

1. 거주지행정관서의 이동(관내 이동) : 대상자 정길동은 2015-10-05일과 2015-10-07일 사이에 거주지가 (교복동 → 계동)변경
거주지 행정관서(가회동 → 교남동)가 변경됨.
2. 비교명부 Excel파일은 거주지행정관서별로 정렬되므로 [거주지행정관서 - 가회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
삭제로 나타나고 [거주지행정관서 - 교남동]에서는 대상자 정길동의 변경사유가 추가로 보여진다.
3. 변경상세내역은 변경사유에 대한 내역으로 "전입/전출 - 구거주지행정관서 ->
신거주지행정관서[변경일자(주민센터에 등록된 전입일자)][결격사유조회시스템에 거주지가 적용된 날짜(즉 거주지연행화일)]"
를 나타내게 된다.
4. 대상자 공길동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 [성북구 → 종로구]로 "추가" 될
5. 대상자 유길동은 "전입/전출"의 사유에 의해 [종로구 → 종로구]로 "삭제" 될



III. 주요 확인사항

3.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 해석 방법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거주지	거주지별 정동코드	거주지행정관서	생략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김철	천안남도 ** 근 **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생략 ①	추가	신규-[2015-10-07]
이영	천안남도 ** 근 **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동3가동	생략 ②	변동없음	
김철	천안남도 ** 근 **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생략 ③	추가	선거권한부위반여부변경-[2015-10-06]
김철	천안남도 ** 근 ** 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		111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묘동	생략 ④	삭제	선거권 없는 기간변경-[2015-10-07]

거주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일자 : 2015-10-28
선거연령 : 만 19세 이상
비교일자 : 2015-10-05 과 2015-10-07 비교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메뉴의 조회조건**

1. 대검찰청/군검찰부에 의해 신규 수령안명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유는 “추가”이며 변경상세내역은 “신규”로 정의.
 2. 변동없음 : 대상자 나라면은 2015-10-05일과 2015-10-07일 사이에 변경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
 3. 시·구·읍·면 등록기준지 담당자가 선거권현법위반여부 체크의 내역을 변경하였을 경우 “추가” 또는 “삭제”로 나타나게 되며 “선거권현법위반여부변경”으로 정의
 [예 : 대상자 나길동에 대해 접수 시에는 선거사범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후에 선거권현법위반자로 판정되어 등록기준지에서 선거권현법위반여부를 체크하여 수정하였을 경우]
 4. 시·구·읍·면 등록기준지 담당자가 선거권현법위반여부 체크는 그대로 두고 선거권 없는 기간만을 변경하여 수정하였을 경우 “추가” 또는 “삭제”로 나타나게 되며 “선거권 없는 기간변경”으로 정의
 [예 : 선거사범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라길동이 사면/복권으로 인해 선거권 없는 기간이 2015-12-28일 이었다가 2015-01-29일로 변경될 경우 삭제 - 선거권 없는 기간변경으로 나타난다]

III. 주요 확인사항

4.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 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① Excel2003이하 버전

Microsoft Excel - 선거권이없는자명단_200802251956.xls

설명	주민번호	생략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변경유무
1 생략	**	생략	변동없음		■
2 합서일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
3 강제집행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
4 입학증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

참고
 변경유무가 “유”인 대상자는 초기/삭제가 된 대상자 이므로 거주지 행정관서에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할 경우 이를 이용하면 된다.

.. 방법

1.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Excel을 받는다.
2. “변경유무”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한다.
3. 메뉴에서 [데이터-필터-자동필터]를 선택한다.

Microsoft Excel - 선거권이없는자명단_200802251956.xls

설명	주민번호	생략	변경사유	변경상세내역
1 생략	**	생략	변동없음	
2 합서일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3 강제집행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4 입학증	**	생략	추가	신규-[2008-02-21]

데이터(D) | 험(H) | 도움말(W)
 필터(F)...

필터(F) 자동 필터(E)
 자동 필터(E)
 표주석 표시기
 고급 필터(A)...

선택(S)...
 표주석 표시기...
 고급 필터(A)...

파일(F) | 편집(E) | 보기(V) | 삽입(I) | 서식(Q) | 도구(T) | 데이터(D) | 험(H) | 도움말(W)



III. 주요 확인사항

4.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 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1) Excel2003이하 버전-계속

Microsoft Excel - 선거권미없는자부여_200802251956.xls

Microsoft Excel - 선거권미있는자부여_200802251956.xls

H11

A	B	C	D	E	F
1	선택	주민번호	생년	변경신세내역	변경유무
2	할선일	''	생력	변경유무	
3	구별명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4	입학증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A	B	C	D	E	F
1	선택	주민번호	생년	변경신세내역	변경유무
2	할선일	''	생력	변경유무	
3	구별명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4	입학증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A	B	C	D	E	F
1	선택	주민번호	생년	변경신세내역	변경유무
3	구별명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4	입학증	''	생력	추가	신규-[2008-02-21]

1. 자동필터가 선택되면 화살표가 생기게 된다.
 2. “변경유무”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하면 원쪽과 같은 상자가 보이게 된다.

3. 변경된 대상자만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를 변경되지 않은 대상자만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를 선택한다.

4. [유]를 선택하였다면 변경시유기 [추기] 또는 [삭제]의 대상자만 행정관서별로 보여지게 된다.

5.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면 [모두]를 선택 한다.

III. 주요 확인사항

4. 선거권 없는 자 비교명부 - 변경된 대상 확인 방법

(2) Excel2007 버전

Q2

I	J	K	L	M	N	O	P
1	희망	비활성화	변경유무	변경되었거나	선택	변경신세내역	변경유무
2	원본불일치	신종유권자번호	2009-09-20	2010-01-01	2011-01-01	추가	신규
3	제법적기부여	신종유권자번호	2010-06-09	2011-01-01	2011-01-01	추가	신규

.. 방법

1. 선거권없는자비교명부 Excel을 받는다.
2. “변경유무”라고 표현된 항목을 클릭한다.
3. 메뉴에서 [데이터-필터]를 선택한다.
4. 필터가 선택되면 화살표가 생기게 된다.
5. 변경유무 확인은 2003버전과 동일함.



질의 응답

IV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1. '14.1.17 주요 개정사항

□ 재외국민의 선거권 확대(법 §15①제2호 및 ②제2호)

-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
- (개정)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과 확정일 변경(법 §37① 및 §44①)

- (현행) 선거일 전 19일(명부작성 기준일), 선거일 전 9일(명부 확정일)
- (개정) 선거일 전 22일(명부작성 기준일), 선거일 전 12일(명부 확정일)
 - ☞ 각각 3일씩 앞당겨 짐

□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 관리 철저(법 §44의2④⑤)

- (신설)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해당 읍 · 면 · 동선관위위원장이 봉함 ·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 · 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함.
 - ☞ 선거인명부를 열람 · 사용 또는 유출한 자: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256②)

□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제도 신설(법 §65⑤)

- (취지) 사전투표 실시에 따라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거나 인터넷으로 후보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인 등에 대하여 후보자정보를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신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운영(법 §149③)

○ (현행)

-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용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신고(관할선관위)→공고(관할선관위)
- 30명 이상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용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기표소 설치 의무→신고(관할선관위)→공고(관할선관위)→투표상황 참관

○ (개정)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장(대상 확대), 10명 이상(기준 확대)
☞ 기관·시설의 장: ①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② 장애인 거주시설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및 교부방법(법 §151⑥ 및 §158③ 신설)

○ (현행) 선거일 일반투표소 투표와 동일하게 일련번호지 떼서 교부

○ (개정) 사전투표 편의 제고를 위해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 선거인에게는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

□ 사전투표에 관내·관외선거인 개념 도입(법 §158⑤ 및 ⑥ 신설)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인은 관내선거인, 그 밖의 선거인은 관외선거인으로 구분
-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음
-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투표함은 각각 별도 설치되며,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만,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음

2. '14.2.13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법 §6의2 및 §261③)

○ (신설)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
-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법 §8의8)

- (신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 피선거권의 제한 강화(법 §19⑤)

- (신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의회 의원정수 조정범위 확대(법 § 22①)

- (현행)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1의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
- (개정) 조정범위를 11/100에서 14/100으로 확대

□ 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 강화(법 §47의2①후단)

- (신설) 후보자 등이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후보추천 관련 금품 제공시 처벌

□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법 §49④⑫, 개정)

- 후보 등록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실효된 형을 포함)
 -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등 일부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
- 후보자정보 공개자료에서 후보자의 공직입후보경력(연도, 선거명, 선거구, 소속 정당, 당락여부)을 반드시 기재

□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신설)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법 §85①)



- 공무원 중립의무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55③⑤)
-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범죄의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법 §268③)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법 §108③⑦)

- (개정) 일명 ‘사이비언론’의 정당지지도나 당선인 예상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등록된 여론조사만 공표·보도

□ 사전투표소 관련(법 § 146의2③, § 147⑩, § 174③, § 261④ 신설 등)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 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 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
- 투표소 등 장소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 사전투표시간 연장(법 §155②)

- (개정) 사전투표의 종료시간 : 오후 4시까지→오후 6시까지

□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개정)

- 선거브로커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한 경우 벌금 강화(법 §231①, 벌금 상한액 2천만원→5천만원)
- 금품 등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 벌금 강화(법 §231②, 벌금 상한액 3천만원→7천만원)
 - 선거브로커가 금품 등 요구에 그치는 경우 과태료(법 §261①, 5천만원 이하)
- 선거브로커 아닌 경우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벌금 강화(법 §230)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 강화(법 §256②)

-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개정)

-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함(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표를 조정함(별표3)

3. '14.5.14 주요 개정사항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 금지(신설)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법§58의2 및 법 §256③)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230①)

4. '15.8.13 주요 개정사항

□ 재·보궐선거 연1회 실시(법 §35② 및 §203③④)

- (현행)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임기만료 지방선거 시에는 별도 실시
- (개정) 재보궐선거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 임기만료 선거와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상반기에 재보궐선거 실시

※ 개정법률 시행 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부여(법 §18조①)

- (현행)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제한
- (개정) 집행유예자 선거권 부여, 1년 이상 징역·금고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 제한 ※ 2016.1.1.부터 시행



□ 승선 예정 선원 선상투표신고 허용(법 §38조②)

- (현행) 승선 예정 선원 선상투표신고 불가
- (개정)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아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선상투표 신고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시 당적 조회(법 §60의2⑨)

- (현행) 예비후보자 당적 조회 근거 없음
- (신설) 관할선거구선관위의 당적 조회 근거 마련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법 §60의2⑩)

- (현행)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미공개
- (개정)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는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만 공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관련사항(법 §65④ 단서 및 §261③)

- (현행)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은 임의사항
- (개정)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의무 작성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2차원 바코드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사전투표대상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법 §65조⑤ 후단)

- (현행) 부대장·경찰관서장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의무 없음
- (신설)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안내 의무 신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대한 내용규제 완화(법 §79⑩ 및 §256③)

- (현행)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음·녹화기 방송 내용 제한, 대수 제한 불명확
- (개정) 선거운동용 음악 및 내용 방송 허용, 대수 1대로 명확화 및 대수 초과 시 처벌, 녹음·녹화기에 표지 부착 의무 신설 및 미부착시 처벌



□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법 §151⑦ 및 §179①)

- (현행)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구체적 방법 규칙 위임, 2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 무효로 함

□ 사전투표 여부 확인 가능 절차 신설(법 §158②)

- (현행) 사전투표 여부 확인 방법 미규정
- (신설)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

□ 선상투표신고자 및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보장(법 §158의3③, 법 §218의16①③④)

- (현행) 선상투표자 및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불가
- (개정)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 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선관위 신고 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 허용

□ 사전투표 교대참관 허용(법 §162④)

- (현행) 사전투표 교대참관 규정 불비
- (신설) 교대참관 허용

□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법 §162④)

- (현행)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만 허용, 후보자·배우자 개표참관 불가
- (개정) 선관위 선정 개표참관인(정당·후보자 개표참관인의 20%) 허용, 후보자·배우자 개표참관 가능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법 §4, §15①, §37①)

- (현행) 인구기준에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등재 기간에 따라 선거권·피선거권 부여, 국내거소신고자 선거인명부 등재 등



-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정비

※ 2016.6.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재외선거인 등 신고 · 신청 편의 확대(법 §218의5)

- (현행) 전자우편 재외선거인등 신고 · 신청 가능, 우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불가
- (개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이용 신고 · 신청 가능, 우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허용

□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원칙(법 §218의18)

- (현행) 구시군선관위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 발송, 자서식 투표
- (개정) 재외투표소에서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기표의 방법으로 투표

□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기간 연장(법 §274①)

- (현행) 선거기간 중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
- (개정)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행하는 신고 등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

V

주요 선거사무 일정





•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 사무 일정 •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일전 10일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6. 30.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국회의원·사·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7.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사·도의원·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3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라·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60②
8. 16.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8. 29.부터 10. 28.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	법§86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②
10. 6.부터 10. 10.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10. 8.부터 10. 9.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0. 14.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0. 15.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10. 16.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10. 16이후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10. 18.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10. 23.부터 10. 24.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10. 28.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8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11. 9.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11. 27.까지	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12. 27.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실시대상선거는 2015. 4. 1.부터 2015. 8. 12.까지의 사이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임.



… 2015. 10. 28.(수) 실시 재·보궐선거 세부 일정 …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은 “공병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법§112 내지§117
	인구수 등의 통보<구·군위원회에>	구·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89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90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법§93①
'15. 5. 18(월)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 전 1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60의3, §122 규§26의2③ §51①②
6. 30(화)까지	입후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직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 전 120일까지	법§53⑤
6. 30(화)부터 10. 28(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칙§2의3
6. 30(화)부터 11. 27(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사도당의 대 표 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자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규§27의2①
8. 16(일)부터 11. 27(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지방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관할위원회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자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③ 규§60②
6. 30(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7. 17(수)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8. 16(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법§60의2②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규§24②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사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 · 보고 <상급위원회> · 통지<하급위원회>	예비후보자(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 없이	법§61①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 없이	법§62③④ §63①④ 규§28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명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⑪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 발송하는 경우 최초 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 발송한 경우 최종 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까지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즉시	법§60의4①③
7. 30(목)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리·반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일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7. 30(목)부터 10. 28(수)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7. 30(목)부터	당원집회 개최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8. 29(토)부터 10. 14(수)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8. 29(토)부터 10. 28(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8. 29(토)부터 11. 9(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 위원회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시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시유가 확정된 때(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은 확정된 후 5일)]	법§10의2② 규§2의2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3① 규§2의3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8. 29(토)부터 11. 27(금)까지	선거방송통신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십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8. 30(일)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지방선거에 한함]	입후보예정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자	법§16③
9. 25(금)까지	시각장애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법§65⑦ 규§30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9. 26(토)까지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법§38③ 규§11②
9. 28(월)까지	선거사무대행 읍·면·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10. 3(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법§60의3④
10. 3(토)부터 10. 9(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규§19
10. 5(월)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⑫ §66⑧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 <중앙위원회 등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 대등을 통보하는 때	법§73① 규§38①⑥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 까지	법§31③ 규§7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자체 없이	법§39② 규§12①
10. 6(화)부터 10. 10(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법§37④ 규§10⑥
	거소투표신고<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법§38, §201⑦ 규§11①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③④⑤⑥ 규§11③④⑤⑦ ⑧⑨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⑬ 규§30④
10. 7(수)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시에)	법§71⑥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당해 기관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0. 8(목)부터 10. 9(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준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56① 규§24①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규§24②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 선거연락소<구사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후보자		법§63①④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 없이	법§63①④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변경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사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49⑧⑩ 규§20③
	후보자의 투표용지 제작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150③④⑤ 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사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제작순위를 정한 후 지체 없이	법§150 규§71①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 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 <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없이	법§188②③⑤ 법§190②③ 법§191③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규§23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55 규§23의2① §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법§52④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규§61③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판매할 당부	발간즉시	법§138의2③ 규§61③
	정당기판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즉시	법§139③ 규§61③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구·군위원회에>	후보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법§67 규§32②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사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규§37②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사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화성장치·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화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법§91④ 규§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첨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군위원회 계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해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10. 8(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방법과 명부화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사군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0③, §44② ③ 규§13③, §16⑤
10. 9(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법§73⑤ 규§38②
10. 10(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사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 지	법§46⑤ 규§18④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10. 11(일)~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사군의 장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규§14④
10. 11(일)부터 10. 13(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 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군위원회에>	구사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군의 장에게>	구·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10. 12(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법§60의3①⑥ 규§26의2⑥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10. 12(월)까지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지역구구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10. 13(화)까지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자체 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규§39②
10. 13(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관· 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법§149① 규§70①
10. 14(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사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자체없이	규§70③
10. 14(수)부터 10. 15(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구사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인일 전일까지	법§43① 규§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구·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10. 14(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10. 15(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10. 15(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구·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46②③⑤ 규§18③
10. 15(목)부터 10. 27(화)까지	선거방송토론회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지역구구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방송 토론회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③
10. 15(목)부터 10. 28(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⑪ 규§20⑤
10. 16(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첨부	구·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설 및 산간오자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⑪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첨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법§64⑥⑦, §65⑫ 규§29⑧, §30⑪
10. 16(금)에	선거인명부 확정	구사군의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구·사·군위원회에>	구사군의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사·군위원회에>	구사군의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10. 17(토)부터 10. 27(화)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사·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면·동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구사군의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사·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규§16의2⑤
10. 17(토)부터 10. 28(수)까지	구·사·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사군의장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10. 18(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사·군위원회		법§188②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등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사·군위원회		법§65⑥, §154①⑤ 규§77③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구·사·군위원회		법§65 규칙§30④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등봉)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우편투표함 비치	구·사·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구·사·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법§154② 규§78②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신고를 받은 구사군위원회	신고를 받은 때	법§149⑤
10. 19(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사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10. 21(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 §88①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사군위원회		법§152① 규§75
10. 22(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10. 23(금)부터 10. 24(토)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사전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10. 23(금)까지	개표소 공고	구사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10. 25(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구사군위원회		법§174①②
10. 25(일)에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의2④
10. 26(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10. 27(화)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구사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구사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법§151①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내지 ⑥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사군위원회		법§173③ 규§95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구·시·군위원회		법§181③ 규§102③
선거일 [10. 28(수)]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③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 시 입회	정당추천위원회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법§151⑤
	투 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제10장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155⑤ 규§96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8시후에	법§176③ 규§97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170①② 규§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제11장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법§185② 규§106①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법§188, §190, §191 규§108
10. 28(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법§60②
11. 7(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좌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11. 9(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규§51의3① 민법§161
11. 11(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선거]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②③ 규§141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223 ②
11. 12(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법§57② 규§25③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③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법§49⑨
11. 17(화)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11. 27(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후보자 추천정당,후보자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중앙위원회)의 징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 하는 때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후보자 추천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규§6
12. 4(금)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 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 (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②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당해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 [선거비용은 열람 기간중]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첨부 ※전자수입인지 가능	정금법§42③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 없이	정금법§42⑧
12. 27(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당해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 수입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당해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당해 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보전비용 납부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6. 4. 28(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법§60②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0.28) 공직선거 업무편람

발행일 2015년 9월

인쇄일 2015년 9월

발행처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3856

팩스 : 02)2100-4298

홈페이지 | www.mogaha.go.kr